

2019년 통권 제8호

경기북부법조



경기북부법조

2019년
통권 제 8 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2019년 통권 제8호

경기북부법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제8대 회장 유 준 용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저는 2017년 정기총회 회장 선거에서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이 회지의 발간과 함께 2년의 임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해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경기북부법조는 2005년 ‘한북법조’라는 명칭으로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경기북부법조로 명칭을 바꾸어 8번째 간행물을 내게 되었고, 이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기북부법조 제8호의 발간과 함께 저는 지난 2년을 되돌아보았고, 임기 동안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드렸던 부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분들이 의무연수에 필요한 인터넷 강의 지원, 2018. 5. 대규모로 치러진 회원 가족캠프 등에 많은 칭찬과 응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회는 신입회원 환영회, 회원 친목 등산대회, 타국 변호사회와의 교류회 등 회원 여러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경기북부, 서울 등 여러 곳의 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호텔 및 리조트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회원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요와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반면, 법조 유사직역과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급기야 1년 전 변호사의 세

prologue

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전반적으로 법조 시장의 어려움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장 임기를 포함해서 저는 10년 가까이 다양한 직무의 이사로 일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회 회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회 소속 회원들이 이제 300명을 훌쩍 넘는 것을 보면서 저희 회의 성장에 기쁨도 느끼지만, 변호사들의 수입 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니다. 우리 회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으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결국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 느낍니다. 제 임기를 마치면서 회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변호사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회원님들과 집행부 이사님들 모두에게 이 글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법조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최미라 홍보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주옥같은 글을 기고해주신 회원 작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2019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1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Contents

▶ 간행사

2 | 유준용 회장

▶ 사진으로 보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5 | 2017. ~ 2018. details of activity

▶ 동호회

28 | '사월회'를 소개합니다

• 조행란 변호사

30 | 송백회의 2018년 활동을 돌아보며

• 김리라 변호사

33 | 늘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늘 · 산 · 愛를 소개합니다!

• 윤수연 변호사

35 | KBSG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 송기영 변호사

▶ 여행 및 국제교류회 참가 소감문

40 | 삿포로에서 방콕까지

• 노승민 변호사

57 | 가족캠프 기행문

• 장원선 변호사

68 | 같은 듯 다른 나라 오사카 여행기

• 김보금 변호사

▶ 에세이

77 | 허리디스크 관리기

• 김성연 변호사

82 | 나의 다이어트 도전기

• 이진성 변호사

91 | 클래식 수업

- 다채로운 음악세계로의 여행

• 임세진 변호사

95 | 호야 하카나나이어는 집으로 가야 한다

• 최미현 변호사

100 | 바이올린 한번 배워 보실래요

• 임현일 변호사

▶ 칼럼 및 서평

109 | 『마스터스 오브 로마』를 읽고

• 오수진 변호사

117 | 『완벽하지 않은 타인』

• 김호정 변호사

▶ 나의 변론이야기

123 | 나의 첫 국민참여재판-17시간의 기록

• 양원석 변호사

131 |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사건 넷

• 법학박사 변호사 휘은 권종철

151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함혜란 변호사

154 | 무죄추정의 원칙을 나부터

• 장소현 변호사

▶ 논문

159 | 피체포자의 휴대전화기 압수와
그 내용확인의 적법성

• 대진대학교 최대호 교수

182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

▶ 판례연구 및 소개

210 |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 의정부지방법원 박기쁨 판사

230 |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처벌

• 이임성 변호사

240 |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

• 신미화 변호사

▶ 법조단상

251 | 성폭력피해보상과 아동성폭력 소멸
시효의 법적쟁점

• 김재희 변호사

▶ 나도 한마디

270 | 구성진 외 37명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277 | 기구조직, 현황, 사무국 안내

▶ 편집후기

283 | 최미라 공보이사

2017~2018 details of activity

2017년 정기총회 & 제8대 집행부 선출 및 출범 (2017. 1. 23. 의정부 프라임마리스)



사무 인수인계
및
전임 집행부
공로패 수여

(2017. 2. 13. 본회 회의실)



제8대 제1차
이사회 개최

(2017. 3. 6. 본회 회의실)

2017년 상반기 회원 친목 등산

(2017. 4. 22. 북한산 진달래 능선)



제8차 『삿포르변호사회 교류회』 개최

(2017. 7. 21. ~ 2017. 7. 25. 일본 삿포르변호사회관)

◆ 교류회 세미나 주제 및 발표(2017. 7. 24.)

△ 한국 :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및 그 범위 - 노승민 변호사

△ 일본 : '공모죄(共謀罪)를 둘러싼 정세와 변호사회의 활동에 대해서'

- 요시카와 카에 변호사



제12차 『몽골변호사협회 교류회』 개최

(2017. 10. 23. 본회 회의실)

◆ 교류회 세미나 주제 및 발표

- △ 한국 : 한국의 이혼제도 개관 - 조은진 변호사
- △ 일본 : 몽골의 이혼제도 - 직지드수렌 오랑치멕 변호사



2017년 신입회원
환영회

(2017. 11. 29.
송추가마골 의정부점)



2017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2017. 12. 18. 본회 회의실)



- ❶ 의정부지방법원 간담회(2017.07.12.)
- ❷ 마을변호사 간담회(2017.03.31.)
- ❸ 송백회와의 간담회(2017.09.18.)
- ❹ 공동치안 원년 추진위원회 발족식(2017.07.08.)
- ❺ 서울고등법원과의 간담회(2017.07.14.)
- ❻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집행부 및 대의원 간담회(2017.07.19.)
- ❼ 법무사회와의 간담회(2017.08.11.)
- ❽ 청년변호사 간담회(2017.04.18.)

2017년 법률·법무 사무원 양성 교육

(2017. 04. 06. ~ 2017. 07. 04. 경기도일자리재단)

◆ 교육 주제 및 강사

민사소송실무(정지웅 · 장윤선 변호사) / 형사소송실무(박현근 변호사)
보전처분실무(김미진 변호사) / 강제집행실무(윤석진 변호사)
부동산등기실무(김효경 변호사) / 개인회생 및 파산실무(신태호 변호사)
가사소송실무(김세은 변호사) / 전자소송실무(박성민 변호사)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및 무료법률상담



- ❶ 남양주시 조안면(2017.02.16.) – 정이수 변호사
- ❷ 가평군 청평면(2017.02.17.) – 김창일 변호사
- ❸ 양주시 백석읍(2017.04.03.) – 류승언 변호사
- ❹ 남양주시 화도읍(2017.03.23.) – 신재민 변호사
- ❺ 남양주시 진건읍(2017.03.09.) – 양려원 변호사
- ❻ 남양주시 진접읍(2017.04.11.) – 조경원 변호사

의정부준법지원센터와 공동 법률강의 등



1. 시민법교육(홈플러스 진접점 문화센터) – 임세진 변호사
2. 시민법교육(홈플러스 진접점 문화센터) – 조은진 변호사
3. 법조인 진로체험(의정부서중학교) – 이임성 변호사
4. 아동학대예방교육(의정부중학교) – 이기형 변호사
5. 시민법교육(의정부시 여자청소년상담센터) – 류한호 변호사

2018년
경기북부 법조인
신년교례회
(2018. 1. 3. 본회 &
경기북부법무사회 주관
_의정부지방법원
중회의실)



제8대
제2차 이사회 개최
(2018. 1. 15. 본회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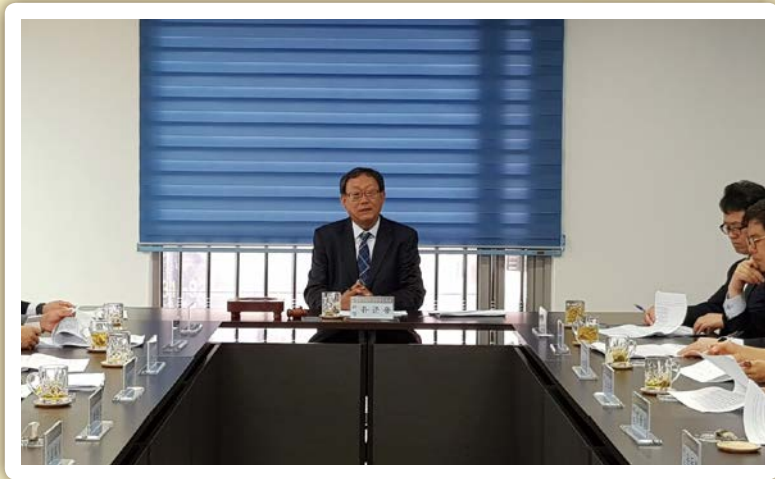
2018년 정기총회

(2018. 1. 29. 경민컨벤션웨딩홀)



제8대 제3차 이사회 개최

(2018. 4. 2. 본회 회의실)



2018년 가족캠핑(트래킹)

(2018. 5. 26. ~ 2018. 5. 27. 태백산 금대봉)



2018년 가족캠프(만찬 & 레크레이션)

(2018. 5. 26. ~ 2018. 5. 27. 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



2018년 가족캠프(경품 추천)

(2018. 5. 26. ~ 2018. 5. 27. 하이원리조트)



변호사 및 사무직원 소가·인지 계산 특강

(2018. 6. 19. 의정부지방법원 중회의실)

◆ 강사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권혁민



2018년 법률·법무 공무원 양성 교육

(2018. 05. 29. ~ 2018. 07. 17. 경기도일자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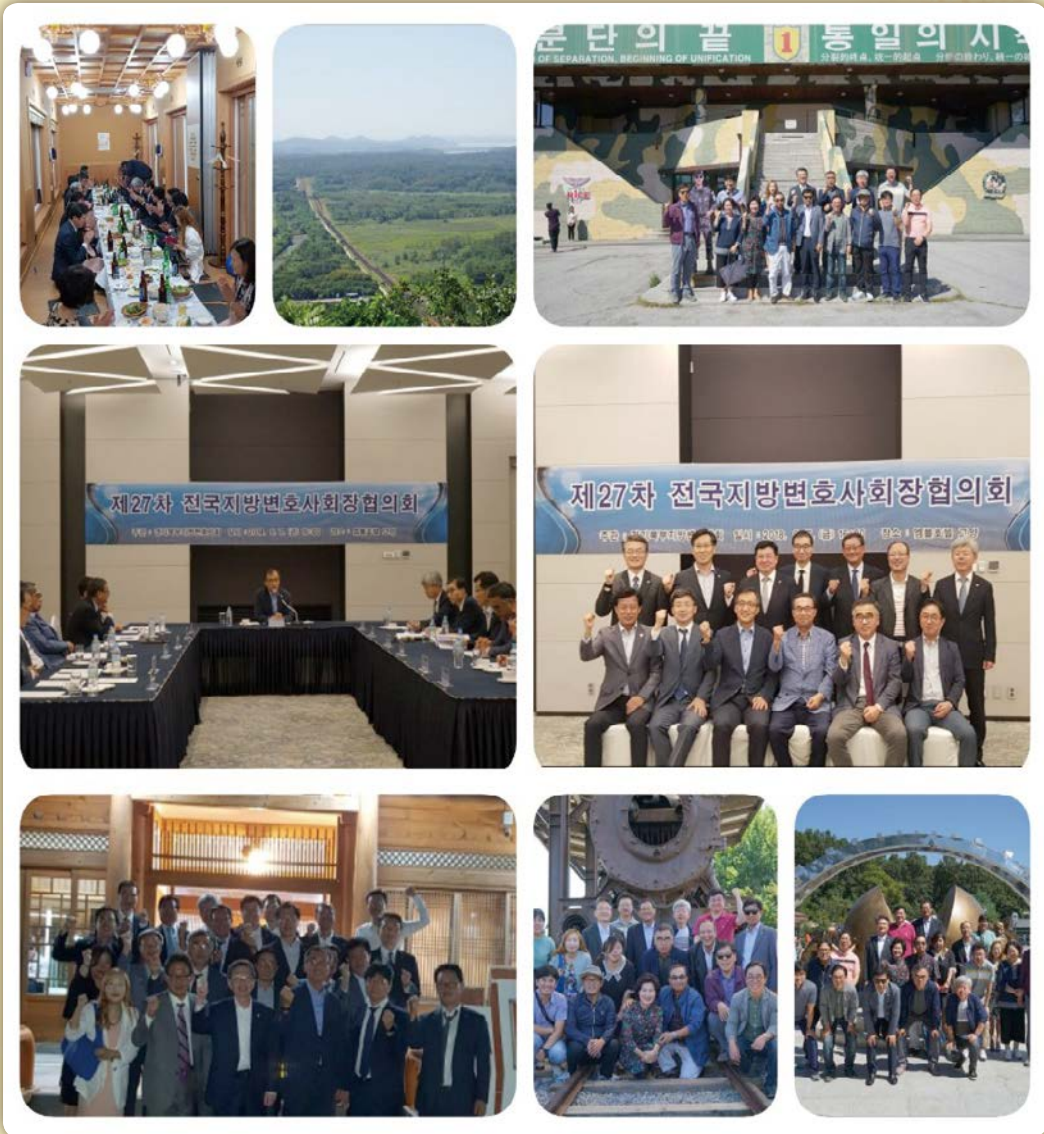
◆ 교육 주제 및 강사

민사소송실무(송기영 변호사) /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효주 변호사)
보전처분실무(정충일 변호사) / 부동산등기실무·가사소송실무(장윤선 변호사)
채권집행실무(한갑수 변호사) / 부동산경매실무(윤석진 변호사)
인사노무법률실무(이규채 변호사) / 형사소송실무(박현근 변호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실무(김원일 변호사) / 전자소송(정충일 변호사)
성희롱예방교육 등(이기형 변호사)



제27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2018. 09. 07. ~ 2018. 09. 08. 엠블호텔 고양 & DMZ투어)



2018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2018. 10. 15, 포천 필로스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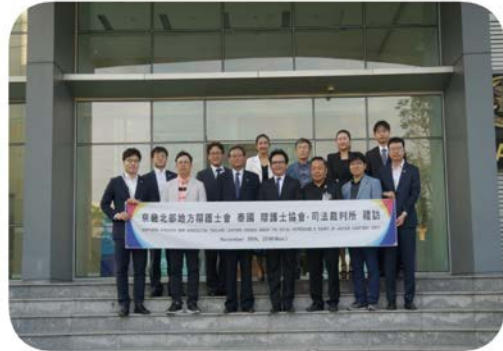
태국변호사협회 & 법원 등 예방

(2018. 11. 23. ~ 2018. 11. 27. 태국 방콕 등)

◆ 공식예방일자 : 2018. 11. 26.

△ 논타부리 지방법원 : 태국의 사법제도, 법조인 교육 과정, 판사의 사회적인 지위 등에 대하여 환담

△ 태국법률가협회(방콕) : 태국법률가협회 조직 및 교류회 협약 등 환담



2018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2018. 12. 17. 본회 회의실)



2019

경기북부법조
통권 제8호

동 호 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사월회 총무
변호사 조 행 란

‘사월회’를 소개합니다



‘사월회’는 경기북부변호사회의 골프동아리입니다. 2004. 2. 1.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가 창립되기 이전부터 의정부지방변호사회와 고양지회 변호사 회원들을 구성으로 골프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해 왔는데, 과거 ‘삼토회’(셋째주 토요일 모임)에서 ‘사월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토요일도 공휴일로 되면서 많은 회원들의 참석과 친선도모를 꾀하고자 평일인 넷째 주 월요일에 한 달에 한번 운동을 하게 되었고, 우리 회원들의 머리를 지끈 지끈 아프게 하는 기록을 잠시 잊어버리고 재판과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월요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월회’는 매달 넷째 주 월요일에 친목 골프 모임을 갖고 운동이 끝나면 동반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선배 변호사님들의 조언과 회원들의 소식도 접할 수 있어 몸과 마음이 힐링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골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월과 10월, 봄·가을의 정취를 운동하면서 만끽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 법률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함께 모여 운동하는 기회란 쉽지 않은데 ‘사월회’ 참여를 통해 회원들과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송백회 총무
변호사 김 리 라

‘송백회’ 2018년 활동을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2018년 송백회 총무 김리라 변호사입니다. 송백회는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2009. 2.경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산하 동호회로 정식 등록된 후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친목단체입니다.

송백회가 처음 시작된 2008년경에는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여성 변호사님들의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송백회에는 약 30명의 여성 변호사님들이 소속되어 있고(단체 채팅방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48명의 변호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 약 20여 명의 변호사님들이 정기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7명의 여성 변호사님들이 새롭게 송백회에 가입하였습니다.

2018년 송백회는 장석주 작가의 『내 몫의 사랑을 탕진하고 당신을 만나』라는 제목의 산문집을 단체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책은 태양이 이글거리기 시작한 초여름 아내와 함께 남반구로 떠난 작가가 보낸 35편의 편지들을 담고 있었는데요. 짧은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나 바쁜 업무 와중에 틈틈이 읽기에 좋은 책이었습니다. 또한 책을 통하여 아름다운 남반구의 풍경 사진들과 함께 인생의 작은 기쁨들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접하면서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월 여름 날 저녁에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정경미의 ‘해피토크 콘서트’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엄마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개그우먼 정경미 님이 강연 하었는데요. 그 내용도 감동적이었지만 강연 이후에 있었던 피아노, 오보에, 첼로로 구성된 제이리트리

오의 공연은 여름 밤 정취에 맞는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송백회 회원 중 대다수가 학부모인 관계로 평일 저녁에 있었던 해피토크 콘서트 공연에는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참석한 분, 참석하지 못한 분 모두 아쉬움이 있어 다음 모임은 가족을 동반하여 주말에 갖는 것으로 추진하였고, 7월 셋째 주 주말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가족 동반 모임으로 ‘백조의 호수’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당시 여러 변호사님께서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오시거나 친정 엄마와 함께 오셔서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가족과 함께여서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송백회에서는 하반기에 『실 비치에서』라는 책을 공동으로 구입하였고, 약 3년 만에 단체로 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비록 명품가방은 아니지만 가볍고 작은 기록이 들어가는 크기여서 재판에 들고 갈 수도 있기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님들은 추가로 가방을 구입해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여직원분들이나 친구, 가족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는데, 서로 색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디자인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송백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백회 회원들 모두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공식적으로 만나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같이 하며 교제를 나누었고, 9월에는 예향재에서 있었던 점심모임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함께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에는 서울 야경이 펼쳐진 멋진 곳에서 송백회 송년회가 있었는데, 약 20여 분의 변호사님들이 참석하여 서로 덕담을 나누고 내년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송백회 모든 회원들은 지난 10년간 크



나큰 애정을 가지고 송백회를 아끼며 이끌어주신 김덕현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송백회는 식사만 같이 하는 단순한 친목모임은 아닙니다. 함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생활정보를 나누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활동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가방 등 소소하지만 여성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구매하여 나누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책을 구매하여 읽었으며, 좋은 공연을 선별하여 같이 관람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딱딱하고 긴장된 공간 속에서도 송백회를 통해 읽었던 책 구절이나 함께 보았던 뮤지컬의 선율이 떠오를 때면 왠지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하였습니다.

오늘도 송백회 단체 채팅방은 바쁘게 활동 중입니다. 새로운 변호사님들이 가입할 때마다 여러 변호사님들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환영과 인사의 글들, 임신이나 출산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변호사님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 서로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해주는 글들, 회장님 이신 김덕현 변호사님께서 계절에 따라 올려주시는 벚꽃 사진들, 단풍 사진들,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들, 그 외 업무적인 질문이나 답변들까지... 올라오는 글의 수 만큼이나 송백회는 의정부지역에서 일하시는 여성 변호사님들에게 선후배로서, 동료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늘 · 산 · 愛’를
소개합니다!



늘 · 산 · 愛 총무
변호사 윤수연



안녕하세요! 늘 · 산 · 愛는 등산을 통하여 경기북부 변호사님들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는 등산동호회입니다. 2007년에 결성되어 벌써 1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 산 · 愛는 한 달에 한번,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법원 앞에서 모여 함께 가까운 인근의 산을 위주로 산행하는 것을 기본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다녀온 산만 보더라도 감악산, 파주 살레길, 북한산 둘레길, 심학산 둘레길, 황룡산 오솔길 등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산행코스 선정을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두 번은 기획 산행으로 계절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명산을 찾고 있습니다. 기획 산행은 특히 평소에는 자주 찾을 수 없는 큰 산과 절경을 찾아 떠나는 것이 본 취지이지만, 회원들의 요청에 맞춰 난이도를 조절하되 엄선한 식사와 사은품으로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강화 석모도 해명산행을 기획 산행으로 하면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산행 후에는 강화도 안에서 가 볼만한 유적지를 둘러보는 작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바로 옆 사무실의 변호사들끼리도 이야기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협의 월례회만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시간도 많이 모자라기에 조금이나마 회원들이 함께 하고 그 안에서 건강과 친목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늘 · 산 · 애가 만들고 싶습니다.

산행에서 필요한 모든 준비는 늘 · 산 · 애에서 제공하오니, 그저 빈 몸과 열린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늘 · 산 · 애는 언제나 매월 첫 주 토요일, 변호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G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KBSG 총무
변호사 송기영

“굿샷! (박수 짹짹)”, “나이스 버디! (박수 짹짹)”, “OB! (머리를 쥐어 뜯으며, 오 마이 갓)”, “더블 판이니까 4천 원, 8천 원”, “자, 한 잔 쪽 마시고 긴장 풀고 해, 건배”...

매번 스크린골프 라운딩을 할 때, 바로 옆방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정겨운 회원들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사법시험 제49회, 사법연수원 제39기 송기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회 소속 스크린골프 동호회인 ‘KBSG’를 다른 회원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회 소속 유준용 변호사님, 김민규 변호사님, 신태호 변호사님, 그리고 저 송기영... 이렇게 4인이 2016. 6. 어느 장마철에 스크린골프를 한 게임 치고,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한 잔 하면서 신태호 변호사님의 갑작스런 돌출발언 -“우리가 평상시는 많이 바쁘니까 필드 라운딩을 가기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으니, 스크린골프 동호회를 하

1) 동호회 활동을 추진한 초창기 멤버들이 동호회 이름을 지을 당시, 별 생각 없이 ‘경기(K)북부(B)지방변호사회 스크린(S)골프(G) 동호회’를 영어 약자로 짓게 된 것입니다. 원래 경기는 ‘GyeongGi’로 시작하여야 하지만 정말 별 생각 없이 술 한잔을 하다가 ‘KBS’가 나온 것이며, 이것이 다시 방송국 이름과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뒤에 그냥 golf에서의 ‘G’를 붙여 지금의 ‘KBSG’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나 만들어서 저녁에 퇴근 후 간단히 스크린골프 한 게임 치고, 지금처럼 맥주 한 잔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회원들끼리 취미생활 겸 친목도모의 자리가 될 것이고, 법정에서 사건 상대방으로 서로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살짝 양보(?)도 해줄 수 있고 좋지 않을까요?”- 으로 인하여, 지금의 KBSG가 갑작스럽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제일 막내였던 제가 앞장서서 우리 회 소속 약 40여 분의 동호회 창설 동의를 받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그분들의 동의서를 첨부한 뒤, 정식으로 우리 회에서 인정하는 공식 동호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KBSG는 2016. 7. 7. 네이버 밴드를 최초로 만들었고, 2016. 7. 21. 대망의 첫 스크린골프 모임을 가졌으며, 당시 참석하신 회원분들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창립총회에 오신 KBSG 회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동하 변호사님을 회장으로, 그리고 저를 총무로 하는 내용의 반강제적인(?) 추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모임 일정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도토리 스크린골프장’이라는 곳에서 우선 전원이 간단한 식사를 함과 동시에 원하는 회원에 한하여 맥주를 마시면서 스크린골프 한 게임을 칩니다. 게임 종료 이후 시간이 되시는 회원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인근 호프집에서 간단히 맥주를 한 잔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귀가합니다. 보통 회원들끼리 나누는 담소의 내용은, 법조 경력이 상당한 회원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사건 관련 조언도 구하고, 신변잡기적인 대화도 나누는 등 어떠한 목적도 없이 오로지 우리 동호회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향상과 관련된 대화들입니다.



또한 매월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스크린골프 게임만을 진행하니 답답하다는 의견이 도중에 나와서, 이에 1년에 봄-가을 두 번 정도 평소 연습한 기량을 뽐내기 위하여 서로의 일정을 조율한 뒤 날씨 좋은 날을 선택하여 실제 필드로 나가 필드라운딩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필드라운딩 이후에는 당일 스코어 등을 참고로 하여 골프용품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KBSG 동호회에 빠짐없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약 15명 정도입니다. 소수정예의 회원들로 구성된 우리 KBSG 동호회는 우리 회 소속 그 어떤 동호회보다 끈끈한 우애를 다지며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정보를 교류하면서 좋아하는 취미생활인 골프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신년을 맞아 추가 회원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가입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총무 변호사 송기영 H.P. 010-3488-7979

2019

경기북부법조
통권 제8호

여행 및 국제교류회 참가 소감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변호사 노 승 민

삿포로에서 방콕까지

1



짜오프라야강에 물결치는 아시아티크의 불빛

짜오프라야강 유람선에서 바라본 태국 방콕의 아시아티크

유람선이 움직이자 짜오프라야강에 아시아티크의 불빛이 물결쳤다. 멀리 보이는 대 관람차의 은색 불빛, 강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술집의 황색 불빛, 부두의 나무 지지 대에 나란히 앉아있는 녹색 불빛이 한데 모여 검은 강물을 휘저었다. 라이브카페에서

들려오는 통기타 반주에 스며든 팝송 멜로디가 점점 희미해져가고, 유람선에서 시작된 발라드 메들리가 귓가에 감기기 시작했다. 아시아티크가 저만치 멀어져가면서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에 부딪혔다. 사람들은 저마다 유람선 가장자리에 술잔을 들고 앉았다. 난 유람선 왼쪽 앞 가장자리 끝에 자리 잡았다. 옆에 앉은 누님들의 끊임없는 수다가 짜오프라야강의 물살만큼이나 휘몰이 장단을 쳤다.

그 때였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영맨 떼창을 하게 만드는 Village People의 YMCA가 흘러나왔다.

Young man, there's no need to feel down, I said, young man

헤이, 우울해하지 말아요

Pick yourself off the ground, I said, young man

이봐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cause you're in a new town, there's no need to be unhappy

행복만 가득한 곳에 있으니까요

“와이, 엠, 씨, 에이!”

후렴구가 흘러나오자 누구랄 것도 없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중앙 무대로 스텝을 밟으며 들어왔다. 여행 내내 사모님 손을 꼭 잡고 즐거워하시던 중년 변호사님, 법정에서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낭랑한 목소리로 변론하시던 중년 여성 변호사님, 연세가 있으신대도 패러세일링 같은 액티비티도 전혀 마다않고 즐기셨던 중년 남성 변호사님, 그 밖에 젊은 변호사님들도 여기저기를 찢러가면서 흔들리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유준용 회장님도 그 사이로 두뚝뚝 두뚝뚝 흰칠한 기력지를 뽐내고 있었다. 양증맞은 소녀는 람보 같은 아빠 변호사의 팔을 조그만 손으로 꼭 잡고 몸을 흔들면서 반달미소를 짓고 있었다.

2

2017년 초여름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 앞. 한 무리의 까마귀 떼들이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건물 앞을 서성대고 있었다. 앞 재판은 밀릴 대로 밀려있었고 마침 비공개 재판이 시작되었다. 밖에서 감금된 변호사들은 두꺼운 기록 봉투를 들고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거다. 재판이 제 시간에 시작되는 건 변호사한테 최고의 정의실현이다. 그렇지만 법정에선 정의가 항상 제 시간에 맞춰 실현되지 않는다. 아, 형사도 재판 시간되면 변호인 출석처리하고 속행됐으면 좋겠다.’ 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맘속으로 늘어놓고 있었다.

초점을 잃은 까마귀 떼엔 김민규 변호사님도 계셨다. 그 분을 처음 뵈 건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에 있는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이었다. 호쾌한 드라이버 스윙과 강한 임팩트가 인상적이었다. 느려터진 앞 조 라운딩 탓에 그의 얼굴엔 답답함이 가득했다. 내가 최근에 배추김치를 담갔는데 맛이 끝내준다고 하자, 그는 마약 비빔밥을 만든 이야기를 한참 하셨다. 남정네 둘은 법정 앞에서 요리 무용담을 끝없이 주고받고 있었다.



아사히카와 눈 미술관 앞에서 샤토로 교류회 둘째 날 다들 생기발랄한 표정이다.
첫째 줄 앉은 사람 왼쪽부터 나, 이기형 회원이사, 유준용 회장, 정희영 변호사, 윤석진 부회장, 임현일 변호사

“노변, 그러면 이번에 샤토로 교류회 가서 발표해 보는 게 어때요?”

내가 대한법률신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다고 하자, 변호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 발표를 하면 원고료도 준다. 저렴한 비용으로 샤토로 여행도 하고, 일본 변호사들과 토론도 하고, 글은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라며 좋은 기회라고 하셨다. 난 예전부터 학구적인 면이 있었다. 그냥 노는 것보단 연구하고 의미를 찾는 게 흥미로웠다. 기왕 발표할 거면 그럴듯한 논문 형식으로 써 보자. 지연된 정의에 대해 투덜대다가, 요리 무용담을 주고받다가, 지루한 일상의 돌파구가 생겼다.

이번 샤토로 교류회는 여덟 번째였다. 예전에 샤토로에 다녀온 분들에게 물어보니

일본 변호사들은 토론을 즐긴다. 저번 교류회에선 어찌나 질문을 열심히 해대던지 창밖에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학구적인 일본 변호사들이라니 이번엔 반도의 뜨거운 학구열을 보여줄 때였다. 문제는 주제였다. 양국 변호사들이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하면서도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옥돌을 찾아야했다.



비에이 청(靑)의 연못

날씨에 따라 코발트블루에서 에메랄드 색으로 변하는 신비한 호수

논문은 주제 선정이 팔 할이다.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주말에 친구와 초여름 도봉산에 올랐다. 친구는 개구진 미소를 머금고 호기심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반짝이는 녀석이다. 칼날 같은 햇살이 뒷목덜미를 찌르고 저 멀리 정상은 아련했다. 포대정상에서 Y 계곡까지.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려 단단한 화강암을 밟아 올랐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다. 자운봉 기슭에서 창동 종로김밥 이모님이 싸주신 소고기김밥을 앙 물고 내가 물었다.

“난 참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예쁜 애가 결혼하자는데 냉큼 해야 하는 거 아냐.”

여자 친구가 결혼하자는데 친구는 무언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다.

“결혼하면 구속받는 게 많잖아. 아직 잘 모르겠어.” 그가 말했다.

“그럼 그냥 살면 되잖아.” 내가 다시 묻자, 친구는 말없이 웃었다.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친구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남녀가 항상 결혼이라는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실혼으로 살 순 없을까. 그렇다면 사실혼은 역사적, 경제적인 관점에



센터는 나야 나, 청(靑)의 연못 앞에서

왼쪽부터 최미라 공보이사, 신문석 변호사, 장동규 변호사, 윤석진 부회장, 나

서 왜 보호해야 하는지, 사실혼 인정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지, 사실혼 관계 부부에게 세제상 어떤 혜택을 주고 동시에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하는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다른 사람을 좀 더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질푸른 녹색 불길 사이로 내려오면서 난 머릿속에 화두를 던져보았다.

3

“오하요 고자이마스, 반갑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광버스에 올라타자, 중년의 여성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다. 큼지막한 미소가 매력적이었던 그녀는 여행 내내 그 상큼한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전날 떠난 그 전 팀은 4일 내내 빗속에서 이상한 사진만 찍다 갔는데, 5일 내내 맑은 날씨일 것 같다면서 운이 좋단다. 후라노의 라벤더 꽃밭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할 생각을 하면서, 버스는 대설산 구로다케를 향해 햇살을 가르며 달렸다.

홋카이도는 땅덩어리가 넓다. 버스로 2시간을 달려도 아무 것도 나오는데 없을 때도 있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남한 면적의 85%라고 한다. 남한만큼 큰 섬이지만 500만 인구의



후라노의 라벤더 꽃밭 7월 홋카이도 여행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
저 멀리 대설산 아래 다양한 빛깔의 꽃들이 가지런히 모여 있다.

대부분은 삿포로와 그 인근 도시인 치토세, 오타루 등지에 모여 살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예전에는 홋카이도를 북쪽의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후반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제국주의 팽창 시기 일본은 러시아와 군사적 갈등을 대비하기 위해 홋카이도에 군을 주둔시키기 시작했고, 삿포로, 하코다테 같은 도시들을 개발했다. 이후 삿포로 인근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사적 요충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홋카이도는 이제 삿포로 세계 맥주·눈 축제, 비에이 청(靑)의 연못, 후라노 라벤더 꽃밭, 노보리베츠 온천 등으로 알려진 관광명소가 되었다.

우리는 대설산 구로다케, 아사히카와 눈 박물관, 아사히야마 동물원, 비에이 청(靑)의 연못, 후라노 라벤더 꽃밭, 노보리베츠 온천을 지나면서 홋카이도의 대자연을 만끽했다. 시계 방향으로 남한만한 섬을 한 바퀴 돌았다. 일본사람들은 아담하게 잘 꾸며진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일본 여행에선 웅장하고 광활한 풍광을 보기가 쉽지 않다. 오밀조밀한 공간에 동물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장난치던 아사히야마 동물원을 구경하고 나와서 짓궂은 사람들이 장난을 쳤다.

“에게 이게 다예요?” 용인 에버랜드 사파리만 못하다는 것이었다.

가이드는 눈웃음을 지어보이며 아담하고 소박한 일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라고 했다. 그나마 홋카이도가 일본 중에서 풍광이 가장 웅장한 편이라고. 그러면서 후라노 라벤더 꽃밭에 가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했다. 과연 그랬다. 후라노의 토미타 농장에 도착하니 저 멀리 대설산 아래 알록달록 울긋불긋 수만 송이의 꽃들이 줄

지어서 우리를 맞이했다. 난 하또 코히(따뜻한 아메리카노의 일본식 영어 발음)를 한 잔 들고 카페 2층 난간에 기대섰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여름바람에 실린 보랏빛 꽃내음이 커피원두의 진한 풍미를 더해 주었다.



노보리베츠의 가이세키 유행온천을 즐기며 삼시세끼만큼 맛있는 가이세키

4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첫 번째 발표 전 준비시간에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및
그 범위' ppt 자료가 띄어져 있고,
나(맨 오른쪽)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했다.

넷째 날 오후에 샛포로변호사회 회관에서 교류회가 열렸다. 샛포로변호사회에서는 오카와 테츠야 회장님과 임원진, 국제실 소속 젊은 변호사들, 몇몇 원로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유준용 회장님과 임원진, 발표를 맡은 나, 통역을 담당한 황성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준용 회장님은 샛포로변호사회 회관으로 가는 길에 한 가지 주의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에선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예의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처럼 명함을 대충 받고 집어넣으면 안 된단다. 항상 상대방 방향으로 자신의 명함을 두 손으로 주면서 자신의 성과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소개해야 되고, 주는 명함도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오카와 회장님은 아담한 키에 눈매가 부드러운 중견 법조인상이었다. 난 그가 주는 명함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고개를 연신 숙이면서 회장님 말씀대로 일본식 예법을 따라보았다.

먼저 내가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대해 발표했다. 초여름 도봉산에서 단진 화두를 한국과 일본의 법제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풀어갔다. 나는 ▷ 모호한 중혼적 사실혼 성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 사실혼 부부에게 세법상 부여할 혜택과 부과할 의무 범위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 일방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특별연고자 부여 방식으로 다른 일방을 보호하는 방안 등



법률상담 완전무료

샛포로변호사회 회관의 광고문구. 의뢰인이 찾는 변호사를 소개해서 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에 대해 발표했다.

젊은 일본 변호사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오갔다. 한 일본 변호사는 “유언과 유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별도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가요.” 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난 유언과 유증은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고 그 요건도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호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발표는 깔끔하게 잘 마무리됐다. 최소한 내 기준으로는. 샤프로 여행 내내 짊어진 작은 짐을 던 기분이었다.

두 번째로 일본의 요시카와 카에 변호사가 ‘공모죄(共謀罪)를 둘러싼 정세와 변호사회의 활동에 대해서’를 발표했다. 요시카와 변호사는 국제실 소속의 젊은 여성 변호사였다. 그녀는 검은 재킷 차림에 머리를 야무지게 묶은 채 당당한 어조로 공모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살인, 강도 등 일정한 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종래 폭발물 관련 범죄, 내란죄 등 몇몇 범죄의 공모 내지 음모를 처벌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시행된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에 의하면 대부분의 형사범죄가 망라된 277개 범죄의 공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요시카와 변호사는 극단적으로 일본 경찰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이나 공원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시민들을 체포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 부당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본의 공모죄 논란은 법조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오카와 회장에 의하면 그 동안 샤프로변호사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공모죄 법안의 일본 의회 통과를 막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고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항의서면을 보내고, 샤프로 시내 곳곳에서 팸플릿을 나눠주며 가두행진도 했다고.

엔화를 마구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기치로 하는 아베 노믹스. 일본 사람들은 잠재적인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아베 노믹스를 발판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무사히 개최해서 일본 경제가 다시 번영하기를 더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수적인 일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샤프로 변호사들 덕분에 일본 사회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닐는지.

“특히, 한·일 양국의 사실혼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해 준 노센세에게 감사드립니다.”

샤프로변호사회 부회장님이 일어나 교류회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교류회의 경과, 오늘 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 교류회를 통해 느낀 소



귀엽게 앙증맞게 교류회 뒤풀이에서
앞은 사람 왼쪽부터 오카와 삿포로변호사회 회장,
윤석진 부회장, 황성연 변호사, 서 있는 사람
왼쪽부터 나, 삿포로변호사회 부회장, 최미라 공보이사,
박현근 섭외이사

감 등을 깨알같이 언급했다. 일본예법 특유의 다테마에(겉마음)인지 그의 혼네(진심) 인지는 모르겠지만, 센세가 된 난 무언가 흐뭇했다.

5

삿포로에 다녀온 후로 거의 1년 반이 흘렀다. 안경 선배는 평창에서 “영미! 영미!”를 외쳤고, 리틀 로켓맨과 미치광이 늑다리라고 서로를 비난하던 두 사내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보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국선사무실에서는 오랜 기간 검사들을 괴롭혔던 베테랑 변호사님들이 새로운 동지를 틀어 나갔고, 두꺼운 기록이 무성한 사무실 한 쪽에 강아지와 사슴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범죄의 부가가치 때문이랄까. 계속된 사건·사고 덕분에 삼시세끼 챙겨가며 별 탈 없이 지냈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다.



멈추면 정지선 위반 통과하면 신호위반
1초 뒤에 녹색 불로 바뀌는 방콕의 신호등.
우리는 제한속도로 달리다가 멈추면 정지선
위반 통과하면 신호위반이다.

2018년 방콕 교류회는 참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참석을 독려하는 경기북부회 메일에 흔들리다가 누님들도 간다고 해서 영겁결에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출발할 때 인천공항은 영하에 가까운 추운날씨였는데, 방콕은 살짝 더운 날씨였다. 역시 추운 겨울엔 따뜻한 나라로 오는 게 좋다. 샛포로 교류회 팬 버스 1대면 충분했는데, 이번엔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회원 가족들은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방콕 왕궁, 파타야 트랜스젠더 알카자쇼, 산호섬, 패러디아트 뮤지엄, 능눅빌리지 등을 둘러봤다.



예쁜 누님들, 방콕 왕궁 앞에서

왼쪽부터 최미라 공보이사, 박은경 변호사, 김덕현 변호사,
정영미 변호사, 안정은 변호사, 신미화 변호사



방콕 왕궁 앞에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방콕 왕궁 앞에서 회원 가족들



파타야 트랜스젠더 알카자쇼
아름다운 그녀들이 공연을 마치고 인사하는 장면



고흐의 나쁜 손

파타야 패러디아트 뮤지엄 타이타닉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고흐와 모나리자

둘째 날 저녁에 파타야에서 트랜스젠더가 꾸미는 알카자쇼를 관람했다.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이 되고픈 그녀들의 이야기. 우리나라에선 퀴어축제를 하면 찬반집회가 치열한데, 태국에선 국가적으로 트랜스젠더 쇼를 관광 상품화하고 있었다.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미 여성인 사람과 마음만 여성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부채춤, 태국전통춤, 현대무용을 선 보였다.

여러 무대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반은 남자로 반은 여자로 분장한 한 여성의 공연이었다. 그녀는 왼쪽은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남성으로, 오른쪽은 핑크빛 슬립 원피스를 입은 여성으로 분장한 채, 60~70년대에 많은 히트곡을 낸 캐나다 출신 남성 가수 Paul Anka와 흑인 여성 가수 Odia Coates의 One Man Woman, One Woman Man에 맞춰 춤을 췄다. 폴 앵카가 노래 부를 땐 커튼 뒤로 오른쪽을 가리고, 오디야 코츠가 노래 부를 땐 커튼 뒤로 왼쪽을 가리면서 헤어졌지만 미련이 남은 남녀의 마음을 그렸다.

Yes, you're a one man woman(폴 앵카)

그래요, 당신은 한 남자의 여자예요

You're a one woman man(오디야 코츠)

당신은 한 여자의 남자예요

공연이 끝나고 one man woman과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보이지가 않았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여자사람이 되길 기원해 보았다.

6

넷째 날 오후에는 방콕 인근에 있는 논타부리 지방법원을 방문했다. 논타부리시는 논타부리 주의 주도이고, 태국에서 방콕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논타부리 지방법원 측에서는 짜뚜롱 법원장님과 여러 판사장님들,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고, 우리는 유준용 회장님과 임원진들, 나와 몇몇 변호사들이 함께 했다. 우리는 기다란 직사각형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아서 태국의 사법제도, 법조인 교육 과정, 판사의 사회적 지위 등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

짜뚜롱 법원장님은 넓은 이마에 눈매가 매서웠는데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에 나오는 포청천을 닮았다. 그 바로 옆으로 여성 판사장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재킷에 커다란 은색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통역은 맑은 녹(한국명 은지) 씨의 판사장이라고 통역을 했는데, 우리로 치면 수석부장판사나 선임 부장판사쯤 돼 보였다. 태국의 두 번째 도시인 논타부리에서 선임 판사장을 맡고 있는 걸 보면, 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처럼 태국 법원도 사건은 많고 판사 수는 부족해서 미제 사건이 많다고 한다. 태국의 판사 정년은 70세인데, 판사들은 보통 정년까지 일하고 다시 변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가 참 궁금했는데, 현직에 있을 때도 연봉이 상당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도 드시고 준비한 다과도 드세요.”

간담회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포청천 법원장님이 미소 띤 얼굴로 분위기를 바꿔본다. 간담회를 마치고 짜뚜롱 법원장님은 자신이 직접 진행하는 재판을 보여주겠다면서 우리를 법정으로 안내했다. 짜뚜롱 법원장님은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사건의 경과나 재판 상황을 손수 설명해주셨다. 한 번 보고 태국의 사법제도를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민사 조정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독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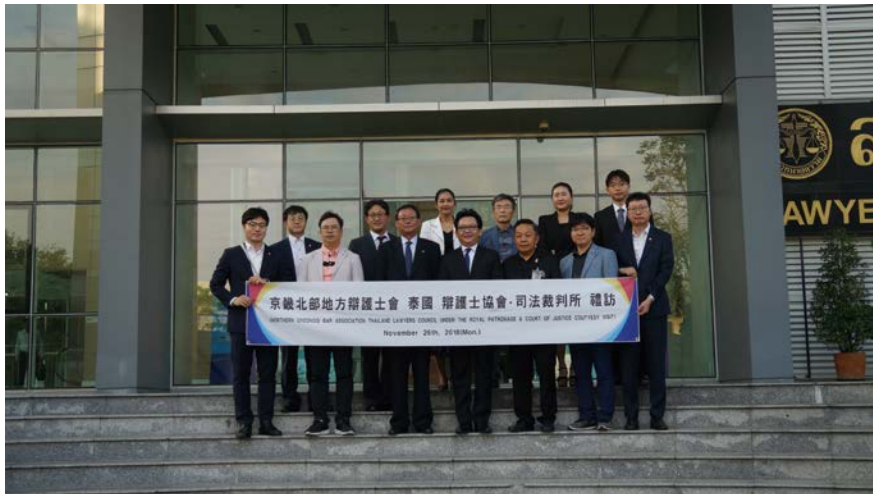
논타부리 지방법원에서 왼쪽부터 김종만 사무국장, 류한호 변호사, 이광복 전 회장, 김동하 변호사, 유준용 회장, 논타부리 지방법원 판사장(남, 여), 짜뚜롱 법원장, 윤석진 부회장, 송기영 재무이사, 김민규 총무이사, 박현근 섭외이사, 나, 논타부리 지방법원 판사장

이어서 우리는 방콕에 있는 태국변호사협회를 방문했다. 태국변호사협회는 큰 통유리가 시원시원한 지상 6층 규모의 회색 건물을 모두 쓰고 있었다. 스피커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 좌석 화면에 자기 얼굴이 뜨는 대형 국제회의실 같은 곳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태국변호사협회 측에서는 탯사나이 부회장님과 국제실 소속 변호사님들이 함께 했다. 탯사나이 부회장님은 넓은 이마와 두툼한 볼살에 여유가 느껴지는 호남형이었다. 그는 투머치토키였다. 낮게 깔린 중저음으로 조심스레 운을 떼더니,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법조 교류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경기북부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 MOU 체결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하셨다.

경기북부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태국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상당수는 임금체불이나 비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많은 태국 진정인들, 피고인들을 만나봤는데,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걸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태국변호사협회와 교류가 활발해지면 경기북부회 안에 태국인 법률지원센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다. 이번에 통역을 담당할 녹 씨는 우리나라와 태국 로타리 모임 전문 통역사였는데, 녹 씨 같은 전문 통역 지원도 늘면 언어의 장벽 없이 태국 근로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준용 회장과 삿사나이 태국변호사협회 부회장
교류회를 마치고 유준용 회장이 삿사나이 부회장에게 우리 측 선물을 건네고 있다.



태국변호사협회 앞에서
태국변호사협회와 교류회를 마치고 왼쪽 다섯 번째부터 유준용 회장(앞), 태국 여성변호사(뒤), 삿사나이 태국 변협 부회장(앞), 김동하 변호사(뒤), 태국 남성변호사(앞), 녹 통역사(뒤)

교류회를 모두 마친 넷째 날 저녁에 사람들은 아시아티크 앞에 있던 유람선에 올랐다. 삿포로에서 방콕까지 사람들과 함께 한 기억의 조각조각이 반짝이는 강물에 일렁거렸다. 유람선은 짜오프라야강 하류에서 배를 돌려 다시 아시아티크로 향했다. 90년대 우리나라 댄스곡 메들리가 이어지자 사람들은 뚝뚝 두뚝뚝 몸을 흔들었다. 강물은 출렁이면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사무실에 가면 사연 많은 노란 기록봉투가 날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강물에 물결치는 불빛만큼이나 자유로웠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한 방콕의 밤은 깊어만 갔다.

가족캠프 기행문



변호사 장 원 선

1. 고부(姑婦)란

“부부란 여름 날 멀찍이 누워 잠을 청하다가도 어둠 속에서 앵 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이다...(문정희 / 부부)”

우리 집은 고부(姑婦)가 그러하다. 이게 다 집안일은 죄다 ‘제한능력자’인 아들과 남편을 둔 덕. 그렇게 두 사람은 9년을 한 지붕 아래서 때로는 멀찍이, 때로는 합세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던 3월의 어느 날 밤. “우리 ‘식구’끼리 여행을 가보자”는 아내의 자못 심각한 건의가 있었다. 여기서 ‘식구’란 5인 ‘가족’ 중 시어머니(겸 어머니)를 뺀 나머지. 꼽아보니 4년 전 ‘경기북부변협 설악산 가족캠프’ 빼고는 ‘가족’여행만 있었지 ‘식구’여행은 없었더라는... 참 무던한 아내이고 무심한 남편이다.

하소연과 미안함이 교차했던 그 날 밤을 보내고, “‘식구’여행을 어디로 갈지, 어머니께는 어떻게 요령 있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 왜 요령이 없는지...” 이런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이 글을 쓰면서 확인해 보니 그 날은 3월 15일, 시간은 17시 3분 이었다) 이메일이 와 있었다.

보낸 사람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받는 사람 : 장 아무개,

제목 : 가족캠프 개최 및 참가신청안내... 첨부 2 가족캠프 참가 신청서

눈물이 나올 뻔 했다.

2. 여왕 ‘프라엘’

1등 텔레비전을 제친 경품의 여왕이 따로 있었다. “듀얼 모션 클렌저, 갈바닉 이온부스터, 토탈리프트업케어, 더마 LED 마스크”. 영어 무식자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위엄’, 여(女) 변호사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매력’, 어느 변호사님의 ‘갈까 말까’를 일거에 정리해준 ‘마성(魔性)’까지 갖춘 여왕의 이름은 ‘프라엘’

그런데, 낯설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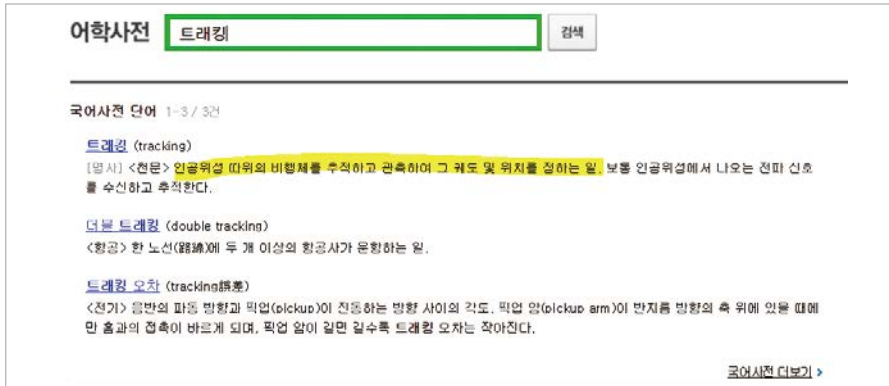


칠칠맞게도 여왕의 존재를 D-day 일주일 전에야 알았다. 그 날 저녁, 보고가 있었고 아내는 ‘그런 게 있는데 좋다고 하더라’고만 말했다(역시 우리 아내는 다르다). 다음 날,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 혹시 1등 상 타면... 얘기 잘 해서 프라엘로 바꿀 수 있을까”

3. 트래킹!

고백하자면, 그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트래킹’이란 말을 써왔다. ‘좀 덜 빠센 등산’ 뭐 이런 짐작이었다. 이 참에 ‘네이버’에 물어보고 따져보았다.



“금대봉에 올라가야 볼 게 많다.”는 회장님의 꼬드김엔 실은 ‘인공위성 따위의 비행체를 추적하고 관측하여 그 궤도 및 위치를 정해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회장님 믿고 올라왔는데 볼게 없는 데요”라고 투덜댔으니… “회장님 죄송합니다!”



4.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에



‘2018년 5월 28일 토요일’은 ‘맑음’이었다. 좀 더 시(詩)적으로 표현(정확히는 표절)하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었다. 그리고, ‘트래킹’엔 또 다른 뜻이 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걸거나 여행을 하는 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금대봉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걸었더랬다.

그 감동과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경기북부변호사협회 회장님,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실무를 맡아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야생화의 천국’이라는 그 곳을 그냥 지나쳐 버린 대책 없는 안목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법. 다음엔 ‘블로그’라도 보고 가야겠다.

5. 임자는 따로 있다

몇 년 전 김 변호사가 고등학교 후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 변호사님 혹시 ○○ 고등학교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김 변호사는 그 후에도 잊지 않고 안부를 물었고, 내가 물은 안부에는 법무사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착함과 성실이 담겨 돌아왔다.

아내를 데리고 온 김 변호사. 아내도 착함과 친절함이 남편 못지않았다. 우리 가족의 사진을 찍어주고, 발이 아파 ‘검룡소’까지는 엄두를 못낸 엄마와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며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었다(물론 나는 눈치 없이 둘을 따라 검룡소에 다녀왔고, 동영상은 생각도 못했다. 으이구!).

그 날 저녁, 대게가 나왔다. 그것도 아주 많이(나와 아내는 대한민국 뷔페를 셋으로 나눈다. 대게가 듬뿍 나오는 집, 치사하게 나오는 집, 아예 안 나오는 집) 행복했다.

이제 경품의 입자를 가릴 시간이 다가왔다. 변호사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돌려 당첨자를 가려내는 최첨단 시스템의 등장에 당황한 건 나 하나였다. 놀라웁게도 많은 분들이 탁 치면 바로 딸 수 있을 만큼 번호를 숙지해 오셨다. 강원도의 힘은 아닐 거고, 경품의 힘?!

할 수 없다. “수료할 때 언론에서 ‘변호사 만 명 시대’ 어찌고 했으니 일단 만 번대가 나오면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혼잣말이 튀어 나왔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다. 들어주실 턱이 없지 않는가. 기도의 나쁜 예, 이불 킷의 좋은 예다.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프라엘 당첨이요! 축하드린다. 덧붙여 ‘듀얼 모션 클렌저’, ‘갈바닉 이온부스터’, ‘토탈리프트업케어’, ‘더마 LED 마스크’의 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뷰티케어’를 통해 극강의 피부미인으로 등극하시길 기원한다.

이제 1등 상만 남았다. 그런데, 등록번호가 불렀는데도 한참 동안 조용했다.

4년 전 설악산 캠프 때 큰 아이가 울었더랬다. 우리 집 경품번호 안 불러줬다고. ‘오늘은 둘째가 울지도 몰라요. 사회자 님 빨리요. 재 추첨엄~~~’(이불 킷의 두 번째 좋은 예)

갑자기 함성과 박수소리가 들린다. 언빌리버블 한 표정의 김 변호사가 1등 상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역시 하늘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다. 그건 그렇고, 준석아! 테레비는 잘 나오지?

공기청정기에 당첨되신 변호사님께서 귀중한 사진 한 장 보내오셨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 ‘프라엘’소식을 듣고 분연히 펼쳐 나오신 (것이 확실한) 이분. 재 추첨에 뽑히셨다.



6. 나의 선생님들

춤출 어린이 나오라고 했는데, 둘째가 겁도 없이 나갔다. 방과 후 수업으로 방송 댄스를 시작한지 두 달이 조금 넘은 때였다. 집에 와서 몇 번 춤추는 시늉을 내 길래 온 가족이(오빠는 빼고) 엄지를 치켜세우며 ‘최고’라고 추임새를 넣어주곤 했다. 그걸 믿고 올라간 모양이다.

사람은 줄을 잘서야 한다. 좀 못 추더라도 엇비슷하면 물어 갈 수 있다.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다. 그것도 둘째 바로 앞에서. 싱크로율 120%, 균계일학이요, 발군이다. 어찌나 양증맞고 감쪽하던지. 일학(一鶴)에게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졌다.

이제 둘째 차례다. 큰일 났다. 큰 애도 동생이 안쓰러운지 “아빠 윤(둘째 이름)이 어떡해요”라면서 손으로 눈을 가린다. 그런데...박수소리가 제법 크다(흑...고맙습니다!).

‘막춤’도 당당하게 추면 ‘괜찮은 춤’이 된다는 걸 그날 알았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좀 부족해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윤아 아빠가 너한테 한 수 배웠다.

앞 순서에 퀴즈를 맞히고 받은 상품권을 흔쾌히 나누어 주신 이 변호사님. 남편과 함께 오셨다. 아내가 윤이가 받아 온 상품권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자 한사코 받지 않으셨다. 체면치레가 아닌 진심이었다.

“나는 윤이 좋았지만, 윤이는 실력이었다.”는 것이 진심의 이유였는데, 결국 이 변호사님이 이겼다. 나 같으면 못이기는 척하고 받았을 거다. 복은 이 변호사님처럼 진심으로 지어 가는 거다(같은 테이블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황보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가족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7. 화약(火藥)의 올바른 사용례

진(秦) 시황제. 자기 혼자 오래 살아 보겠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온갖 군대를 다 쭈시고 다니게 했으나(그 중엔 제주도도 있다), 50년만 살다 간 사람이다. 이 분 덕분에 불로장생의 단약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결과...

화약이 만들어졌다. 불로장생의 단약(丹藥)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화약이 발명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불로장생약’을 보관해 둔 곳에 불이 났고...(핑!)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니었을까(내 상상력의 한계일수도 있다).

원래는 ‘불로장생약’으로 만든 건데, 엉뚱하게도 ‘무기’로 탈바꿈 한 화약. 하지만, ‘불꽃놀이’라는 쓰임새도 있다. 화약의 올바른 사용례이다.

사람들을 가득 실은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잘 해야 폭죽놀이에 불꽃 몇 발 쏠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개 리조트에서 쏘면 얼마나 쏘겠는가.

그런데, 행복하게도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형형색색의 불꽃이 터지는 것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불꽃놀이를 구경해 본 적도 없었다.

문제는 내가 가진 언어로는 그 광경과 감동을 온전히 담을 길이 없다는 것. 고민 끝

에 내린 정답은 ‘직접 가서 보시라!’

8. 웰컴 투 ‘하이원’, 네버 포겟 ‘사북’

내가 아는 전국구 읍(邑)은 두 곳이다. 하나는 ‘별교’. 이 곳에 대한 설명은 ‘두말 하면 잔소리’이므로 생략한다.

이제 다른 하나를 말해보려고 한다. 가족캠프가 차려진 ‘하이원 리조트’는 사북읍장님의 관할구역에 있다.

사북(舍北). 흔히들 ‘막장’이라 부르는 탄광촌의 대명사 격인 동네 중 하나이다. 으레 함께 따라붙던 ‘동원탄좌’는 나에겐 꽤 오랫동안 참치 통조림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더랬다(아무 관계없단다).

이곳에 ‘강원랜드’가 들어섰고, 연수원 수료여행에서 한 체험(?) 학습 덕분에 ‘좀비’가 우리 곁에 살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쾡한 눈의 무표정한 얼굴로 합법적 하우스(?) 곳곳에 진을 치고 있던 그들. 몇몇은 우리에게 다가와 어디서 왔는지 묻곤 ‘다신 오지 말라’ 했다.

체험학습 와중에 슬롯머신에 홀려 5만 원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본전 생각에 더 땡겨 보려다,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5만 원까지는 봐 주겠다”고 했다. 그 얼음장 같은 너그러움에 감읍하여 본전 생각을 거두었다. 하마터면 나도 좀비가 될 뻔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머니께서 ‘을묘생 장 아무개 사법시험 원만합격’을 간절히 기원하며 정암사(淨巖寺)¹⁾에 기도 다니실 때, 고한역(驛)에 출몰한 거지들에게 거지꼴을 선사한 곳이기도 하다(어머니 증언에 따르면 ‘잘못 꺼낸 만원을 남아채갔다’는데, 단언컨대 그 만원 슬롯머신에서 장렬히 산화했을 것이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추억이 방울방울한 곳이다.

1) 조계종에서 꽤 유명한 그리고, 가보면 정말 좋은 절이다.



불꽃놀이를 보러 가던 중 마주친 강원랜드 입구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식구들과 품을 잡았더니, 어느 샌가 직원이 다가왔다.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여긴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곳’이란다. 군사시설이라도 되는 건지.

가족캠프가 차려진 리조트로 화제를 돌려보자. 크기부터 장했다. 그리고, 시설도 장했다. 객실 안에 들어간 우리 식구 모두 방의 깨끗함과 넓이에 감동했다. 어디가면 당연히 자고 오는 것으로 아는, 그래서 나와 아내가 은근히 부러워하는 우리 애들이 ‘여태까지 가본 곳 중 최고’라며 엄지 척을 내들었다. 웰컴 투 하이원!

다음 날. 시간을 도로에 바치느니 아주 늦게 올라가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하니 여유가 넘쳐흐른다.

점심 먹기 전엔 큰애와 루지를 타고 짜릿한 속도감을 이후부터는 놀이동산에서 미니 바이킹도 타고 천문대에 들러 트래킹(인공위성 따위의...)을 시도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할 것이 별로 없다’면서 직원 분이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그 친절함이 너무 고마웠다.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오르기도 했는데, 애들은 곤돌라가 참 신기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 이것저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대답해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애

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말해놓고는 그냥 자버렸다”고 한다. 내가 이렇다.



이제 마지막 일정. ‘사북석탄유물보존관’이다.

이곳은 하이원 리조트에서 ‘옆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다. 리조트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지나치기 십상이다. ‘알쓸신잡’에도 나왔다. 방송에서 소개한대로 모든 것들이 폐광 그 날에 멈춰있었다. 강렬해서 쓸쓸했고, 쓸쓸해서 강렬했다.

방송과는 달리 문이 잠겨있는 곳이 많았다. 사무실에 계신 분께 여쭙보니 방송 나오고 많이들 오셨는데, 미비한 점이 많아 보완하려고 닫아둔 것이라고 한다. 단, 갱도열차 체험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것도 공짜란다.

한 시간마다 운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다. 아이들이 있는 집을 중심으로 전화를 돌렸는데, 이진성 변호사님 하고만 인연이 닿았다.

열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배우 마동석 필이 충만한 분이셨다. 우람한 팔뚝에 사람 좋은 웃음을 간직하신 그 분. 청춘을 이곳에 바치셨다고 한다. 그리고, ‘덜 깎은 듯 투박하지만, 믿음직하고 순박한’, 그래서 각쟁이 동네 서울 말씨보다 몇 배는 호소력 있는

그 말씨가 참 듣기 좋았다. 강원도의 힘!

우렁찬 디젤엔진 소리와 함께 열차가 움직인다. TV나 영화에서만 봤지 직접 타보기는 처음이다.

갱도에 들어서자 공기가 확 달라진다. 서늘하다. 땅 속 깊숙한 곳의 냄새를 실은 바람이 불어온다. 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람의 마음을 비장하고 가지런하게 만드는 그런...(앞서도 말했지만 나의 언어는 빈곤하다)

바닥엔 물이 흘렀다. 들어갈수록 많이 흘렀고, 열차가 멈춘 곳 너머를 보니 정말 많은 물이 흘렀다. 배수펌프를 돌려왔는데, 폐광 후 멈추다보니 물에 잠긴 갱도가 꽤 많다고 한다.

그리고... “광부 남편 도시락을 쌀 때는 절대로 ‘4’주걱은 담지 않는다”

무사귀환을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는 불문율이다. 여기 저기 갱도를 만들면서 탄광사고가 빈발했었다고 한다. 예전에 공부할 때 ‘고시생과 광부는 동급’이라고 입을 놀린 것이 떠올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농담이랍시고 했던 것이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 너에게 묻는다)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이곳에 고단한 삶을 바쳤던 모든 분들을 위하여, 네버 포갯사북!



변호사 김 보 금

같은 듯 다른 나라 오사카



1. 두 여자의 무모한 도전

“같이 여행 한번 갈래요? 일본 어때요?”

가볍게 시작한 여행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7세 동갑내기 유치원생 엄마들로 만난 두 여자가 무슨 배짱으로 아이들까지 데리고 바다를 건널 결심을 했던 것일까. 영어도 일본어도 어설프었지만 구글맵과 인터넷 번역만 믿고 과감히 비행기에 올랐다.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계속 갈 기회를 놓쳐 이번이 첫 방문이었다. 오사카 유니버설 앞에 위치한 숙소까지 가는 길에 본 오사카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느낌이었다. 빈틈

없이 건물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 대도시인 것은 틀림없지만 건물이 전체적으로 낮고 곳곳에 오래된 느낌의 건축물들이 새로 지은 현대식 건물들과 공존하고 있어 복잡한 느낌보다는 한적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었다.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 택시 이용을 최소화해보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는데 낯선 곳에서 헤매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긴장되면서도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조금 헤매기는 했지만 금세 익숙해져 일주일만 더 살면 못 갈 곳이 없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마저 생길 정도였다.

구글맵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하로 들어가는 구역에서는 길을 찾기 힘들었고, 지하철을 갈아타거나, 반대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탈 경우 지상으로 나와 다른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야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헤매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길을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려고 노력했고, 지하철 노선 안내도 조금 익숙해지니 눈에 잘 들어와 큰 불편함없이 다닐 수 있었다.

한국어가 써진 곳도 제법 많이 있었고, 영어로 된 안내판도 많았지만 최소한 일본어 카타카나는 읽을 수 있어야 표지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 편할 듯 했다. 택시를 탈 때도 말로 대화하기 보다는 핸드폰을 건네주는 것이 편했는데, 노령화된 사회답게 택시는 거의 60~70대 정도로 보이는 분들이 운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영어로 된 주소를 못 알아보셔서 주소를 불러드리는 편이 나올 때도 있었다. 택시를 타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이 신기했고, 택시 요금이 정말 비싼 데에는 다시 한번 놀라기도 했다. 체감상 우리나라의 두 배는 비싼 것 같았다.

어설픈 영어와 일본어 몇마디로도 어려움없이 여행하던 중 위기는 마지막날 한큐 백화점에서 찾아왔는데, 내가 어디선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많은 백화점에서 핸드폰을 찾을 길이 없어 막막하던 차에 외국인 쇼핑을 도와준다는 전화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작정 전화를 들었다. 한국인 스텝을 요청하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핸드폰 기종과 색깔, 내가 갔던 곳을 물어본 다음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몇 층 어느 매장에서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친절하고 빠른 대응에 일본이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싶어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2. 같은 듯 다른 나라 일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일정상 오사카에 오면 누구나 간다는 오사카 성 마저 일정에서 제외하다 보니 일본의 전통 문화를 느낄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내 근처의 지하철 역 앞에 자리 잡은 숙소에서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신사를 보기도 하고 구석구석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면서 일본인의 생활상은 조금 옛본 듯한 기분이었다. 색깔로 노선을 표시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갈아타는 방식이 다른 지하철이라든가, 어디서나 보이는 익숙한 편의점에 다양하고 예쁜 음식들이 많은 것같이 같은 듯 다른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맛집으로 유명한 라멘집에서는 자판기로 주문하고 돈을 낸 다음 좁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먹어야 했는데, 좁은 통로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짐은 모두 벽에 걸어야 했다. 오코노미야끼나 스시, 라멘같은 음식들은 한국에서도 자주 먹을 수 있는 메뉴라 크게 신기할 것도 없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잘 마시지 않는 우롱차를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나 사람들이 식당에서 조용조용하다는 점은 일본에 왔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었다.(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스시집에서는 일본인들이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일본 여행 중 식당에서 아이들이 떠들까봐 신경쓰지 않고 맘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집이었다.)



오사카 숙소에 도착해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난생 처음 보는 특이한 변기였다. 이 변기는 중간에 움긴 다른 숙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물을 내리면 사진처럼 변기 위에 달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다시 변기로 흘러 들어간다. 이 물로 손을 씻을 수 있어 별도로 세면대를 설치할 필요도 없어 공간 활용도 잘 되고, 물을 재활용할 수 있어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다.

같이 동행한 아들 친구가 여자아이라 가족끼리 이용할 때와 달리 욕실이나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을 겪을 것 같았는데 두 군데 숙소 모두 번기가 저런 형태로 입구 쪽에 조그만 방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욕실과 화장실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3. 맛있고 예쁜 먹거리들의 향연



일본에 와서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맛있는 간식거리들이었는데, 편의점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아기자기하고 예쁜 간식거리들이 많아 눈이 즐거웠다. 한국에서 여행 준비하면서 슬하게 들었던 일본 편의점의 계란 샌드위치는 기대를 한 탓인지 처음 먹었을 때는 그다지 감흥이 없었는데 돌아온지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그 맛이 생각난다. 면세점에서 한국인들이 줄지어 서서 구입하길래 사본 과자들도 집에 와서 먹어보니 다 맛있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부터 줄서서 먹은 100년 전통의 오무라이스집의 오무라이스와 토마토 샐러드(오무라이스보다 별 기대없이 시킨 토마토 샐러드가 더 맛있었다).

현지에 사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 찾아간 스시집의 신선한 스시들, 저녁에 숙소 근처에서 포장해와 먹은 꼬치들까지 맛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 것은 감자 꼬치 구이였는데, 김에 찐 감자가 표면만 구워 서걱 서걱한 식감이라 정말 감자가 맞는지 한참 들여다보았다. 무나 마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뒷맛은 감자가 맞는 것 같았다. 신기한 것은 서걱서걱 덜익은 느낌의 감자인데도 짭조름하고 맛있었다는 것이다.

4. 어른과 아이가 모두 즐거운 오사카 유니버설

오사카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 중 하나가 바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일 것이다. 우리가 갔던 때는 할로윈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내 거리마다 좀비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좀비 분장도 디테일하고 소품들도 현실감이 있는데다 푸른 빛 조명이나 안개, 으스스한 음악까지 한 몫해 어트랙션을 타지 않고 거리만 돌아다녀도 공포 영화를 즐기는 기분이었다. 좀비 분장을 한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성인들만 입장 가능한 할로윈 파티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이 제각각 귀신 분장을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무심코 거리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랄 때도 많았다. 웅~ 울리는 전기톱을 든 좀비들이 달려올 때는 어른인 나도 덜컥 겁이 날 정도였으니 아이들은 안아주지 않으면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 좀비 옆으로 일부러 다가갔다가 도망쳐 올 정도로 담이 커졌다.

좀비를 무서워하는 이들을 배려해 곳곳에 ‘좀비 프리존’이 설정되어 있기는 했는데, 이동하는 길목 곳곳에 좀비가 등장하기 때문에 좀비를 아예 안 마주치고 프리존으로만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할로윈 시즌이라 호러 등급이 매겨진 장소들이 있었는데,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좀비들은 호러 등급이 아주 낮은 편이었는데도 오싹한 정도였으니 호러 등급이 높게 매겨져 성인들만 입장 가능한 수준이면 대체 어느 정도라는 것인지 궁금하기는 했다.

일본은 워낙 코스프레 의상들도 발달해 있고 이런 의상을 입고 즐길 곳도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분장이 정교하고 다양해 복장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할로윈 복장 뿐만 아니라 해리포터, 윌리, 미니언즈 등 영화 속 주인공들로 분장한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도 잠깐 집에서 가져간 스파이더맨과 엘리스 복장을 입고 돌아다녔는데, 가는 곳 마다 직원들이 스파이더맨이나 엘리스라고 호응해 주고 알아봐주니 더욱 재미있어 하기도 했다. 무서운 분장으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처녀 귀신같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였는데, 눈에 흰 자위만 보이도록 렌즈를 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존은 생긴 이래 유니버설 스튜디오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야경도 아름답고 영화 속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된 듯한 정교한 세트장이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이 어려 해리포터 존에서는 어트랙션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세트장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올리밴더의 지팡이 가게도 있었는데, 마법 지팡이를 구입하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내의 지정 장소에서 마법을 실제로 시연해볼 수 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벗어나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막대 지팡이 하나에 5천엔이라는 가격만 아니라면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기념품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행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각 5천엔의 범위에서만 사고 싶은 것을 사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때문에 아이들은 지팡이를 아주 가지고 싶어하기는 했지만 다음날 가기로 한 장난감 할인매장을 기대하며 스스로 포기하였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해리포터 존을 보고 난 뒤 해리포터에 관심을 갖게 된 아들이 한동안 해리포터 영화를 보고 원서도 읽어보겠다며(7살 어린이가 읽기에는 심히 어



려운 책이라 두세 페이지를 읽고 포기 한 듯 하지만) 나서자 고무된 아빠가 깜짝 선물로 해리포터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심지어 함께 놀겠다고 두 개나 구입했다.) 결국 저 지팡이는 우리 집에 있기는 하다.

5.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지금까지 휴양형 여행만을 즐겼던 나에게 오사카 여행은 극기훈련에 버금가는 강행군이었다. 아이가 있어 일정을 최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야만 했던 일정이라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잘 놀고 잘 먹고 잘 즐긴 여행이 아니었나 싶다.

특히 택시 외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여행은 처음이었는데 생생하게 현지인들과 마주칠 수 있어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



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오사카에 오면 누구나 찍는다는 오사카의 상징 글리코상 사진을 끝으로 이 여행을 마치려고 한다. 관광객 말고는 아무도 이용할 것 같지 않은 유람선을 타고 오사카 시내를 돌아보며 게이샤들이 지나다녔다는 다리, 낮아서 배가 지나가면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다리들도 돌아보고 헵파이브 관람차도 타면서 오사카 시내를 훑어 보았다.

오래된 건물도 많고 좁고 아기자기해 압도되거나 눈에 띄게 화려한 곳은 없었지만 어딜 가나 깨끗했고, 좁아도 불편하지 않았으며,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몸가짐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좋았다.

수영장이 딸린 멋진 호텔이나 리조트는 없었지만 충분히 즐거웠고 소박한 듯 자연스럽게 일본인의 하루를 훑내 내고 돌아온 느낌이 들어 뿌듯했던 여행이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 번번이 무산되곤 했던 일본 여행이었고 가기 전까지도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번 여행의 좋았던 기억을 발판삼아 주저 없이 일본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2019

경기북부법조
통권 제8호

에 세 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허리디스크 관리기



변호사 김 성 연

2015년 가을에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2016년 봄에 개업한 후 5월 무렵부터 PT를 받으면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운동을 하러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평소 ‘허리디스크’가 있어 더 늦기 전에 운동으로 튼튼한 허리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PT 트레이너에게 허리 재활 위주의 운동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었고 트레이너도 허리에 좋다는 운동을 잘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PT를 마치고 운동을 조금 더 하고자 백익스텐션 운동을 했습니다. 한 세트 마치고 그 다음 세트를 시작하는데 허리를 구부릴 때 갑자기 허리 쪽에서 ‘쩍’하는 느낌과 함께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허리를 숙였는데 마찬가지로 통증이 느껴져 즉시 운동을 멈추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하려고 차에 탔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의 통증이 느껴져 집에서 한 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아는 분을 통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 쉬다가 가서 그런지 통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도 통증 정도로 봐서는 그리 심한 것 같지는 않으니 일단 약을 먹고 며칠 경과

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져 가더니 밤에는 정말 엉엉 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 당시엔 통증이 워낙 심해 잠도 못 자고 밤을 거의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에 척추 전문병원으로 가 MRI 촬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파열입니다. 이걸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신마취하고 수술해야 안전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루 빨리 수술 일정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당장 그 다음 주의 재판 일정도 걱정이 되었고 한편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아내와 상의를 한 후 그 전날 갔던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선생님은 MRI를 보시더니 디스크가 파열(섬유륜 파열)된 것은 맞지만 신경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면서 2개월 정도 지켜보고 만약 통증이 줄어들지 않거나 마비가 오면 그 때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때까지 디스크가 파열되면 수술 밖에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주사를 맞고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만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 입원하고 그 다음 날 신경주사를 맞은 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저런 정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도 사보고 허리디스크에 관련된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입해서 매일 다른 사람들의 치료경험담 등을 보면서 수술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면서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치료는 양방과 한방치료를 병행했는데 양방치료는 대학병원에서 신경주사를 2회 맞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식이었고 한방치료는 사무실과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한약을 지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약이 서로 겹치면 안되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께 여쭙어

보면서 양약과 한약을 복용하는 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해서 먹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통증이 약해질수록 복용하는 양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처음 약 2-3개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침상안정을 취했습니다. 사무실에도 접이식 소파를 가져다 놓고 조금 오래 앉아 있었다 싶으면 소파를 펴서 누워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통증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치료를 시작한 지 3~4개월 정도 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수핵이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가 감각이 조금 둔해졌었고 오른쪽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힘이 왼쪽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힘에 비해 많이 약했으며 뒤꿈치로만 걸으면 오른쪽 발은 버티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지는 풋드롭 증상이 있었는데, 3~4개월 정도 후엔 감각이 약간 둔해진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발가락과 발목의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풋드롭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부터는 집에서 책을 보면서 조금씩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참고했던 책은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허리에 좋다고 알고 있는 운동 중 적지 않은 운동들이 허리디스크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중에는 저도 허리에 좋다고 알고 열심히 한 운동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운동들이 정말 허리디스크 환자에게는 나쁜 운동인지는 교수님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어느 교수님이나 도움이 된다고 하는 동작들 3~4개 정도만 골라 반복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조금씩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정도 더 지났을 무렵엔 발가락과 발목의 힘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더 이상 먹지 않아도 통증이 별로 없어서 일상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는 정도까지 호전되었으며 2017년 8월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촬영한 MRI에는 흘러내렸던 수핵이 모두 사라져 더 이상 신경을 압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 나왔다고 볼 만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디스크 파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조심

하면서 꾸준히 재활한 덕분에 지금은 살만해졌습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의 경우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완치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앓았다가 나으면 아프기 전 아무렇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허리디스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일 뿐 돌출되었거나 파열된 디스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약해진 상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재발할지 모릅니다. 특히 신경주사 등 주사치료로 회복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성분이 염증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더 큰 질환으로 재발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편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우인데,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을 열심히 해 버린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재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허리 수술하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수술이 아닌 보존 치료를 권하셨던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통증이 극심한 경우, 신경이 심하게 눌려있는 경우, 마비가 심해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 파열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게 된 정보들을 정리하면, 디스크 파열은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디스크가 평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섬유륜이 찢어져 수핵이 흘러 나오는 것이고, 흘러나온 수핵이 신경을 자극하여 신경을 붓게 하고 염증을 일으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인데 염증이 가라앉으면 통증도 줄어들며, 찢어진 섬유륜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어 천천히 아물어 가는데 이 때 자연적으로 재생되어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 의해 섬유륜과 전혀 다른 조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섬유륜이 아물어도 내구성은 정상 디스크보다 떨어지고, 수핵이 디스크 밖으로 흘러나오면 몸이 이를 이물질로 생각하여 대식세포가 잡아먹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신경을 누르고 있던 수핵이 사라지면서 통증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제 경우도 섬유륜이 아물고 디스크 밖으로 흘러 나온 수핵이 대식세포의 활동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신경을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아 통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된 말이겠지만 예전에 허리디스크는 법조인의 직업병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조인들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적절하게 관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평소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셔서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길 바라고, 허리가 아파서 이 글을 다시 읽는 분이 없으시길 기원하면서 부족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다이어트 도전기



변호사 이진성



I. 들어가며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결혼한 이후에 먹는 걸 좋아하는 아내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10여 년간 뚱뚱한 상태로 생활하다보니 올 여름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데 날씨가 무더우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곤 했습니다. 이 몸으로는 도저히 힘들어서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에는 장모님의 제안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평소 저와 아내, 처남의 뚱뚱한 모습에 불만이 많으셨던 장모님도 계속해서 팽창하는 저희들의 모습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거금의 상금을 걸고 다이어트를 제안하셨습니다. 평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자주했지만 며칠 식사량을 줄이다 이전의 식습관을 버리지 못해 며칠 만에 포기하던 패턴을 반복하였는데, 이번만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다이어트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고 ‘장모님배 다이어트 대회’에서 우승해서 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저의 다이어트 과정에 대해 기록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나의 다이어트 도전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II. 나의 어린 시절 및 다이어트 시작 전 모습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말랐습니다. 어머니도 살이 찌지 않는 아들이 안쓰러웠는지 살을 찌우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한 일화로 어머니께서 식용 개구리가 살찌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장에서 식용 개구리를 사오셨습니다. 식용 개구리를 통째로 냄비에 삶아서 고아 먹이셨는데 저는 처음 며칠간은 꿩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고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부엌에서 냄비에 어떤 생명체를 삶아 고아서 꿩고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셨고, 저는 진짜 꿩고기로 알고 마셨습니다. 간혹 목에 건더기가 걸리긴 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며칠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엌에서 냄비를 열어보았는데 물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던 개구리와 눈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먹었던게 저거 였구나...’, 뿔어오르는 배신감과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 당시 모범생(?)이었던 저는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내색하지 않았고, 씹씹하게 먹었습니다. 가끔 건더기가 목에 걸릴 때는 헛구역질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어머니에게 제가 실체를 알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몇 달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그 때 먹은 식용 개구리의 효과가 좋았는지 살이 찌기 시작하였고 결혼 후에는 먹는 걸 좋아하는 아내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105kg까지 살이 찌게 되었다. 일주일에 2, 3일은 캔 맥주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고, 주로 치킨, 피자, 고기, 아이스크림, 라면 등 살 찌는데 최적화된 음식을 주로 즐겨 먹었습니다. 운동이라고는 1달에 1번 정도 사회인 야구를 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키는 180cm인데 몸무게가 105kg까지 나가게 되니 좀 뛰면 무릎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있었고, 혈압, 간수치 등 여러 건강 수치가 안 좋아 졌습니다. 지방이 주로 복부 쪽에 집중적으로 쌓였고, 팔다리는 가늘어 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면서도 깜짝 깜짝 놀라게 되는 저의 다이어트 시작 전 사진들을 몇 장 올리겠습니다.



중간 수영복 사진은 다이어트 전 몸매 사진이 없어 다이어트 시작하고 40일 정도 지난 10kg 정도 감량한 사진입니다.

Ⅲ. 다이어트 초반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나서 무작정 동네 수영장에 등록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수영장을 등록할까라는 생각은 하였지만 지금 이 몸 상태로는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작정 등록부터 하였습니다. 일단 등록을 하게 되니 몸은 힘들고 숨이 차서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어떻게든지 출석은 하게 되었고,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되어 수영장 시간 전까지 어찌어찌 업무도 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

고도비만 상태였기 때문에 다이어트 초반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수영을 선택하였고, 식이조절을 병행하였습니다. 닭가슴살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여 마트와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닭가슴살을 구입하여 먹어보았습니다. 이중 저의 입맛에 맞고 가성비도 괜찮은 코**코에서 판매하는 수*스 닭가슴살과 맛*닭에서 판매하는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주로 구입하여 먹었습니다. 닭가슴살은 다이어트 내내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식단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수영과 식이조절을 하여 7kg정도 감량에 성공하였고, 한 달 후부터는 헬스도 등록하여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급격한 체중감량을 위

해서는 무작정 굶기가 더 효율이 높지만¹⁾ 요요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²⁾ 하는 것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헬스를 병행하면서 6주 정도 지나 10kg 감량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고도비만의 경우 초반에 감량 폭이 크지만 수분이 빠져 나간 비율이 높고 외관 상으로는 크게 살이 빠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가 10kg가 빠졌다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10kg 정도 빠진 이후에는 초반처럼 급격하게 감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정체기'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IV. 다이어트 정체기³⁾ 및 상승다이어트⁴⁾

고도비만인 관계로 초반 감량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10kg 감량 후 감량 속도가 줄어들게 되었고 여러 차례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매일 식이조절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술자리 모임이나 여행을 가게 되면 잠재되어 있던 식욕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평소보다 더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폭식을 하게 되면 자책을 하게 되고 폭식 후 몸무게가 3~4kg 정도 한꺼번에 늘게 되면 실망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음날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니 급격히 늘어났던 몸무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폭식을 하게 되면 음식 무게와 과다 나트륨 섭취로

-
- 1) 운동을 병행하면 오히려 식욕이 늘어 식이조절이 힘든 경우도 많고, 우리 몸이 효율이 좋아서 운동 자체의 칼로리 소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 2) 신체의 에너지 소비는 기초대사량과 운동대사량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은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활동을 통해 소모되는 운동대사량의 3배 정도로 대부분 기초대사량에 의해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운동자체의 직접적인 효과는 의외로 크지는 않지만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기초대사량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운동후대사효과**(metabolic effects after exercise)로 인해 운동 후 회복기의 몇 시간 동안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되어 간접적인 체중 감량의 효과까지 있어 운동은 자체 칼로리 소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 3)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중 정체기가 찾아오는데 줄어든 체중에 신체가 적응하는 기간으로 몸이 체중에 맞게 변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4) 상승다이어트는 근육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면서 체지방량을 줄이는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근육량의 증가는 인슐린에 의한 동화작용으로 이루어지고, 반대로 체지방 감소의 경우 이화작용으로 이루어져 근육량의 증가와 체지방의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실제로 매우 어려우나 초반 근육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비교적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건강한 다이어트와 멋진 몸매를 위해서는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을 줄여야 하므로 상승다이어트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인한 수분량의 증가로 몸무게가 일시적으로 확 늘게 되지만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여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먹은 만큼 다 살로 가지는 않고 적절히 관리하면 금방 몸무게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음식을 조절하면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회식이나 외식을 하게 되면 먹고 나서 더 운동을 하자는 생각으로 편하게 먹기로 하였습니다.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치팅데이⁵⁾를 가졌습니다.

초반보다는 감량의 속도가 줄고, 몸무게가 줄었다 늘었다가 반복하게 되면서 정체기를 겪게 되었고,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력 운동의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근력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거나 근손실을 막고 체지방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운동을 하였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렸습니다. 꾸준히 인바디를 측정하였는데 목표한대로 근육량은 조금씩 늘었고 체지방은 감소하였습니다. 몸무게 자체의 줄어드는 속도는 늦어졌지만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헬스를 시작하고 나서 초반 많은 감량이 이루어진 시기에 바로 인바디를 측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상승다이어트를 목표로 운동 강도를 늘린 이후의 인바디 결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9. 7. 체중 92.6, 골격근량 37, 체지방률 29.6
- 2018. 10. 5. 체중 90.4, 골격근량 37.6, 체지방률 27.1
- 2018. 10. 18. 체중 91.1, 골격근량 37.9, 체지방률 26.5
- 2018. 11. 9. 체중 89.2, 골격근량 38.0, 체지방률 25.0



2018. 09. 07.



2018. 10. 05



2018. 10. 18.



2018. 11. 09.

5) 치팅데이는 '속인다'라는 뜻의 'cheating'과 'day'가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로, 다이어트 기간 동안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있다가 1~2주에 1회 혹은 정해진 기간마다 1회 정도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날을 의미하는데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 한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측정 결과 체중은 3.4kg이 줄었지만, 근육량은 1kg정도 늘었고, 체지방율이 4.6%가 줄었습니다.

V. 관리 및 유지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87kg까지 감량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105kg에서 시작해서 18kg 정도 감량을 하였습니다. 최근 1~2달 사이에는 감량 폭이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체지방률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근육량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5kg정도 감량을 한 상태인 100kg 정도에서부터 체중계로 꾸준히 몸무게를 체크하여 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식단관리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고, 올해가 지나기 전 85kg으로 20kg 감량을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번 씩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 몸무게가 일시적으로 늘 때가 있지만 다음날 더 열심히 운동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현재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Ⅵ. 다이어트 식단 조절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이조절을 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원래 오랜 기간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아침을 안 먹으니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이후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다던지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아침은 꼭 먹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침에는 해독주스(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와 닭가슴살 1개, 견과류⁶⁾(아몬드, 땅콩, 호두 등) 10개 정도를 챙겨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초반에 해독주스의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평소 장이 좋지 않았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등 더부룩한 경우가 많았는데 해독주스를 마신 후부터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속에 있는 노폐물들도 많이 배출이 된 느낌(?)이었고 직접적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⁷⁾

점심에는 다이어트 식단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식을 먹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밥 한 공기를 추가해서 먹거나 사이드 메뉴를 추가해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될 수 있으면 약간 남기거나 정량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군것질을 하거나 믹스커피를 자주 마셨는데 군것질과 믹스커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믹스커피나 탄산음료는 다이어트 기간 중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에 경우 다이어트 초반부에는 운동 전, 후 닭가슴살 1~2개에 샐러드 정도를 먹었는데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단백질 섭취량도 늘려 운동 가기 전 닭가슴살 1~2개, 바나나 1개, 견과류 10개 정도 먹었고, 운동 후 닭가슴살 1~2개와 샐러드, 과일 등을 먹었습니다. 평소 고기를 좋아해서 가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밥양은 좀 줄이고 삼겹살과 소고기는 배불리 먹었습니다.⁸⁾

6) 포화지방 과다섭취시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혈관에 쌓임으로서 혈관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데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불포화지방 섭취시 혈관벽에 있는 나쁜 지방을 제거해 주어 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일부러 매일 챙겨먹었습니다.

7) 해독주스는 미국 암센터에서 암환자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고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8) 지방과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다이어트에 크게 지장이 가지는 않는 것 같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도 있기는 한데 일부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몸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 탄수화물을 약간 줄이되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VII. 운동(헬스 및 수영)

고도비만으로 무릎이 좋지 않아 다이어트 처음 한 달 간은 수영을 주로 하였고, 집에서 틈틈이 맨몸 스쿼트와 플랭크 등 코어 운동⁹⁾을 하였습니다. 한 달 이후에는 헬스도 함께 등록하여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였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수영강습이라 화요일, 목요일은 유산소 운동인 수영을 하였고, 나머지 요일에는 헬스를 하였습니다. 운동 초반에는 의욕이 넘쳐 휴식일이 없이 거의 매일 운동을 하였으나 부상방지과 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휴식도 중요한 만큼 1주일에 1, 2일은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헬스의 경우 천천히 걷기와 실내 자전거로 10분 정도 워업을 하였고, 스트레칭 후 근력운동을 1시간 정도 하였으며, 이후 20분 정도 실내 자전거로 유산소 운동을 하였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¹⁰⁾ 처음 시작할 때에는 PT를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유튜브나 헬스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어 운동을 하였습니다. 헬스 초반에는 분할 없이 상, 하체 운동을 전부하였으나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로는 상체와 하체를 나누거나 가슴부위 운동과 등 운동을 나눠서 진행하는 등 분할 운동을 하였습니다. 수영의 경우 현재는 오리발을 착용하여 수영하는 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상급반에서 오리발을 착용하고 빠른 속도로 접영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그걸 목표로 하였는데 드디어 오리발을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접영도 하고 있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운동이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을 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집에서 가까워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퇴근 후 집 근처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하기 싫은 날도 가까운 거리니까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운동을 할 경우 귀찮아서 한두 번 빠지게 되면 점점 운동을 멀리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시설이 약간 더 열악하거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9) 코어(core)가 '핵심'이라는 뜻과 같이 코어 근육은 우리 몸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몸통 근육 등을 가리키며 코어 근육은 몸의 기둥인 척추와 골반을 중심으로 몸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하며 거의 모든 운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스쿼트가 있고 플랭크도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좋은 운동입니다.

10)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할 때 무산소 운동의 경우 운동 초반 힘이 많이 남아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고, 무산소 운동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을 통해 탄수화물을 소진 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 연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무산소 운동 중 쌓인 젖산을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을 하고 난 후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VIII. 글을 마치며

저보다 훨씬 많은 몸무게를 감량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다이어트 글을 쓰게 되어 한편으로는 많이 민망하지만 이 글이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극이 되거나 정보 제공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뱃살이 많아 체지방 10kg 정도를 추가로 감량해야하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IET



클래식 수업

- 다채로운 음악세계로의 여행



변호사 임 세 진

I. 음악이 주는 즐거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일 때가 있다. 힘들고 지칠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이따금 멍하게 있을 때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음악의 종류는 다양하고 클래식 역시 음악의 한 종류로서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접해오고 있다. 처리하는 사건의 쟁점에 관한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사건을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클래식도 그 해설을 곁들여 듣게 된다면 보다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클래식 수업』을 읽었고 이를 통해 소소한 사색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II. 소나타 - 형식적이지만 형식적이지 않은

클래식은 시대 순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모습으로 발전해왔고 여러 형식 중 하나로 '소나타'라는 것이 있다. 자동차 브랜드 이름으로 더 익숙할 수 있는 용어인데, 소나타란 악기를 연주한다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하였고 음악용어로써는 '제시부-전개부-재현부'라는 형식을 갖는 음악이다. 제시부에 여러 가지 주된 선율들이 등장하고 전개부에 각 선율들을 다양하게 섞어 연주하며 재현부에서는 제시부의 선율들이 다시

등장하고 종결부가 덧붙여 마무리를 하게 되는 형식의 음악을 말한다고 한다.

소나타라고 하면 피아노 소나타나 바이올린 소나타가 떠오르는데, 소나타는 독주곡 뿐 만이 아니라 교향곡과 협주곡에도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하니 소나타 형식의 쓰임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나타 형식은 베토벤이 발전시켜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와 같이 유명한 작곡가들이 더욱 발전시켰다고 한다.

Ⅲ. 클래식과 영화

영화를 보는 재미만큼이나 영화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큰 경우가 있다. 최근에 「맘마미아」, 「보헤미안 랩소디」와 같은 음악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개봉되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종류의 영화들에 대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나름의 매니아층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클래식 수업』에서도 클래식을 주제로 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피아니스트」 이야기다. 폴란드인 피아니스트가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남게 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써, 쇼팽의 피아노 곡을 좋아해서 인상 깊게 본 영화이다. 피아니스트로 등장하는 배우가 연기를 실감 있게 하여 정말 실제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책에서는 영화 속 피아노 연주 장면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것이라고 한다. 『클래식 수업』에는 「피아니스트」 이외에도 클래식 음악과 관련 있는 여러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영화는 영상이라는 도화지 위에 배우들의 모습, 행동, 대사라는 그림을 그려 완성한 작품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텐데, 영화에 등장하는 음악이 영화를 더욱 입체감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클래식을 포함하는 음악도 예술이고, 영화도 예술이다. 클래식과 영화가 들려주고 그리는 현실 그 자체는 결코 예술이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는데, 현실이 예술이 되기엔 어렵고 그 때문에 어찌면 인간은 영화와 음악과 같은 예술로써 현실의 이상향을 끊임없이 창작해내는 것은 아닐까 한다.

IV. 고난 속에서 탄생한 음악

베토벤은 19세기 초 그가 살고 있던 오스트리아 빈이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에 의해 함락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피아노 협주곡 5번(‘황제’라고 명칭으로 불리움)’을 작곡하였고,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공격한 나폴레옹이 결국 추위와 물자부족으로 물러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812년 서곡’을 작곡하였으며,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은 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하면서 ‘피아노3중주곡’을 작곡하였고, 무사히 살아남아 전쟁에서 희생된 전우들을 추모하며 ‘쿠프랭의 무덤’이라는 피아노 모음곡을 작곡하였다고 한다.

고난은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부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감동과 눈물이 있다. 시인 윤동주는 「쉽게 쓰여진 시」에서 깊은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희망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꺼이 노래하였다. 고난 속에서 탄생한 시와 음악은 이를 읽고 듣는 이들에게도 끝내 밝은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빛을 선사하는 것이 아닐까.

V. 작곡가들의 휴식 - 변호사도 휴식이 필요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다. 심지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직업도 있을 것이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직업적 삶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한편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때도 있다. 작곡가라는 직업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직업 중 하나이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삶을 영위할까. 흥미롭게도 『클래식 수업』은 과거 작곡가들의 휴식 생활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들은 여행을 가거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음악을 가르치거나 심지어 일정기간 거주지를 옮기는 방식을 통해 휴식을 취하였다.

아무래도 작곡가는 예술가라는 점에서 긴 시간 동안 창작활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기 때문에 직업적 삶과 휴식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을 연주하고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창작활동을 하지만, 휴식을 통해서도 좋은 작품들을 탄생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변호사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의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의뢰인, 서면, 재판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휴식이라면 좋은 휴식이 아닐까 싶다. 휴식을 취하며 듣는 음악은 작곡가들의 직업적 삶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하니, 변호사들의 직업적 삶의 결과물이 어떤 이들에게는 휴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Ⅵ. 음악은 돌고 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키워드들 중 하나는 ‘융합’이다. 융합은 경계를 없애는 것이며 이전(移轉)과 변형(變形)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섞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초록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융합이 아닐까 한다. 음악에 있어서도 융합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가수 서태지가 등장했을 때 국악과 가요를 융합함으로써 서태지 식(式) 대중음악이 선보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대중음악들이 파생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집시음악과 클래식, 재즈와 클래식, 팝과 클래식,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악과 클래식과 같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의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팝페라’라고 하여 팝과 오페라를 융합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클래식 수업』에서도 중세의 종교음악이 클래식의 한 장르를 형성해 왔고 이를 기초로 다른 클래식 음악의 요소와 섞여 새로운 유형의 클래식이 만들어져 왔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집시음악이 클래식과 융합하여 멀리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가까이는 바이올리니스트 라카토시의 음악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듯 음악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무궁무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음악을 통해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을 『클래식 수업』을 통해 새삼 성찰하게 된 좋은 기회였다.



호아 하카나나리아는 집으로 가야 한다



변호사 최 미 현

칠레령 이스터섬에서 온 타리타 알라르콘 라푸 지사는 2018. 11. 20. 영국 대영박물관 앞에서 전통 복장 차림을 한 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육체만 있을 뿐이다. 영국인이 우리의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대영박물관에 전시된 ‘호아 하카나나리아’라는 모아이 석상을 돌려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호아 하카나나리아는 영국이 1868년 제국주의 시절 약탈해간 이래 150년째 그의 고향인 이스터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은 모아이 석상에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램버트 대영박물관 이사회 의장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대영박물관은 ‘세계를 위한 세계의 박물관’이라며 “문화간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전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됐고, 이 역할을 해내려면 ‘글로벌 컬렉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스터 섬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유물반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대영박물관은 영국이 1897년 지금의 나이지리아 남부에 위치한 베닌 왕국을 강제로 합병할 때 빼앗은 수천여 점에 이르는 청동 유물인 ‘베닌 브론즈’의 상당수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2018. 11. 28.자 영국 타임스오브런던 보도에 따르면 대영박물관이 나이지리아 베닌시티에서 2021년 개장하는 왕립박물관에 이 베닌 브론즈를 “대여” 전시하기로 결정했고, 베닌 브론즈 외에도 대영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엘긴 대리석, 이집트 로제타석 등이 장기“대여” 형식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영국의 오만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는 표어로 유명한 영화 인터스텔라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과학이론과 신비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장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위 영화는 우주 영화가 아닌 가족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후반부, 영화의 주인공인 쿠퍼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시공간 구조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쿠퍼는 위 시공간 구조물이 자신의 딸인 머피의 방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장의 책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용해 과거의 자신에게 ‘STAY’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합니다. 위 장면을 보고 안타깝고 애절한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쿠퍼가 사랑하는 딸인 머피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주로 떠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에게 간절하게 ‘STAY’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쿠퍼의 마음을 관객들 모두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가 우주를 묘사하는 경이롭고 신비한 영상들과 주인공들의 위기 상황들로 인한 긴장감만으로 만들어졌다면 국내 관객수 1,000만 명 이상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집안 청소를 하다가 고시를 준비할 때 사용하던 독서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위 독서대는 ‘나이스 2단 독서대’인데, 독서대의 2개 지지대 중 한 쪽 지지대의 경첩이

고장 나 있었고, 상단에 꽂아서 2단을 만들 수 있는 상판도 잃어버려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려고 시작한 청소였기 때문에 독서대를 발견하고는 독서대를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서대를 보니 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선배가 ‘고시 공부를 하려면 독서대가 좋아야 한다. 신림동 가서 나이스 독서대를 사와라.’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너스레를 떨던 기억과 함께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그 때가 생각나서 독서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먼지가 묻은 독서대를 닦아서 컴퓨터 옆자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고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경이로운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장면이 아니라 쿠퍼가 애절하게 과거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장면이 시각적으로 경이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을 가족에 대한 애뜻함과 간절함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독서대를 버리지 못한 이유도 독서대가 쓸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독서대를 통해서 제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해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레 이스터섬에서 태어난 원주민으로 라파누이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아나케나 마누토마토마는 “영국인들은 우리 섬에서 모아이를 훔쳐 갔다. 내가 당신네 집에 들어가 할아버지를 훔친 뒤 내 거실에 내놓고 전시하는 격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패트릭 가타라 케냐 정치평론가는 “유물은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전시될 필요가 있다. 영국인이 세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호아 하카나나이야는 이스터섬 주민들에게 조상의 영혼이 담겨 있는 유물로서, 이스터섬 주민들이 조상의 혼을 느끼고 과거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위 호아 하카나나이야가 대영박물관에 전시되는 동안은 조상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유물이 아니라 이스터 섬 주민들이 어떻게 대형 모아이 석상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대형 모아이 석상을 옮길 수 있었는지가 의문스럽고 신기한 대형 석상에 불과합니다.

호아 하카나나리아가 이스터 섬의 제자리로 돌아갈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소중한 물건이 있습니다. 물론, 비싸고 값져서 소중한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의 기억이 담겨져 있거나 부모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등 주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소중한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이유로 가치 있다고 평가받는 것은 반쪽짜리 또는 그 이하의 가치만 인정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물건에 담긴 의미와 가치 및 소중한 기억들이 빛을 발할 때 그 물건도 온전한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호아 하카나나리아도 이제 타향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후손들과 만나야 합니다.

호아 하카나나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후손들도 호아 하카나나리아를 통해 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도 이스터 섬의 제자리에 위치해 있는 호아 하카나나리아를 만날 때 단순히 거대하고 건축과정이 미스터리한 모아이 석상이 아닌 ‘문화적 맥락’에서 진정한 가치를 담고 있는 호아 하카나나리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탈된 유물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 진정한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참고자료〉

이스터섬 지사 “우리 영혼 깃든 조상님 석상 돌려주세요” 연합뉴스

“우리집 거실에 당신 할아버지가 전시돼 있으면 어떨겠는가?” 서울신문

건물과 경비원 말곤...영국 대영박물관에 영국의 물건은 없다. 중앙일보 각 기사 참조



바이올린 한번 배워 보실래요?



변호사 임 현 일

들어가며

우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부터 이번 회지에 실릴 원고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회지에 실었던 진중한 글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나의 신변잡기적 소재로 부족하나마 글을 써보고자 한다. 그것은 나의 취미 이야기이다. 제목처럼 나의 취미 중 하나는 바이올린 연주하기이다. 아래에서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된 이야기와 바이올린 곡들에 대하여 소개하여 보도록 하겠다.

바이올린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나?

나의 동년배 또래의 경우와 같이, 나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 무렵까지 약 2년 정도 피아노 학원을 다녔고, 재미있게 피아노를 배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내 바람과는 달리 부모님은 더 이상 학원에 보내 주지를 않았다. 나는 한동안 음악과 멀리 지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다니던 고양시의 J중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이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고, 나는 방과후 특별활동 과목 중에 바이올린 수업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실 당시 나는 바이올린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상태였지만, 음악 수업 때

악기 연주 발표시 바이올린을 가져와서 연주하는 일부 친구들의 모습이 멋있기도 하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친구들이 있는 집 자녀처럼 보여(?), 방과후 특별활동 수업 중 바이올린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여 약 5개월 정도 매주 한번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다. 사실 다소 어렵기도 하였으나 배우다보니 조금씩 흥미가 생겼다. 이에 계속 배우고 싶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아노를 배웠을 때처럼, 이번에도 부모님, 특히 아버지께서 내게 바이올린으로 먹고 살 것 아니면 이정도 배우면 됐다면서, 바이올린을 배우지 5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바이올린 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한동안 밤에 내 방에서 바이올린(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저가형 입문용 바이올린을 샀었다)을 마치 기타처럼 잡고 현을 손으로 ‘핑가핑가’ 뜯으면서 배우지 못하였던 악보를 연주를 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바이올린은 내게 점점 잊혀 갔다.

시간은 흘러 흘러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남을 때 가끔씩 지난날을 회상하다보니, 중학교 때 배우다 그만 두었던 바이올린을 다시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마음속으로 버르고 버르다가 평소에 포천 방향으로 갈 때 길가에서 보아 두었던,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의 Y바이올린 학원에 무작정 찾아가, 원장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바이올린을 계속 배우고 있다.

어떻게 바이올린을 배웠나?

바이올린 학원에는 매주 목요일 저녁식사 무렵쯤 찾아갔다(1년 전부터는 한 달에 두 번 찾아간다). 사실 변호사로서 나름대로 바쁘다보니 매주 찾아 가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 주에 수업을 빠지면 다음 주에 보충수업을 받는 방법으로라도 수업을 계속 이어나갔다. 모든 악기는 배웠으면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고 진도도 나가게 되는 것이 진리이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연습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점점 시간이 나지 않았다. 이에 수업 전에 최대한 일찍 와서 연습을 충분히 한 뒤 수업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당시 거의 20여 년 전인 중학교 때 약 5개월 배웠던 바이올린 실력을 첫 한

달간의 수업에서 되살려 내었고, 이에 바이올린 학습 극초반의 지루한 기본기 단계를 쉽게 건너 뛰었다. 이후 바이올린 교재인 호만 연습곡집과 스텔리 메소드 교재로 서서히 바이올린을 배우고, 서드포지션과 음계 관련 교재도 약간 익히면서, 바이올린 실력이 어느덧 초급 단계를 넘게 되었다(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할 때). 사실 연습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기본기도 없지만, 어린 학생들처럼 바이올린을 전공하거나 무슨 대회를 나갈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여, 성인 학습자인 내게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배려로, 나는 바이올린에 흥미를 잃지 않고 나름대로 재미를 붙여나갈 수 있었다. 중간 중간에 몇 주씩의 공백기가 있곤 하였지만, 어쨌든 바이올린 학습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지금까지 취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

특히 부족한 연습을 보완하고자, 교재에 첨부된 연주 CD를 차량으로 이동할 때 수시로 들었던 것 같다. 이는 내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에도 썼던 방법인데, 책을 읽는 것이 부족하거나 책을 반복해서 읽기가 어려울 경우, 강의 테이프나 MP3 파일을 거의 모든 일과 중에 반복해서 듣다보면 어느덧 그 내용이 머리 속에 박히게 되는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또한 전철로 이동할 때나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중간중간 시간이 남을 때, 악보를 보면서 머리 속으로 가상 연주를 하는 방법(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어쨌든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BWV 1043), 바이올린협주곡 제1번(BWV 1041)을 거쳐(끝까지 배웠기는 했으나 솔직히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바흐의 바이올린협주곡 제2번(BWV 1042)을 배우고 있다. 바이올린 협주곡 한 곡을 배울 때마다 몇 개월씩 걸린다. 악보로도 거의 빼곡히 10장에 가깝다. 그렇지만 한곡한곡 배워 완주할 때마다의 성취감은 짜릿했다고 말하고 싶다.

바이올린의 어떤 점이 좋은가

사실 별 이유는 없다. 나는 그저 음악이 좋았다. 다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할 뿐이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다 그만 둔 것으로 인한 음악에 대한 갈증이 내게 항상 있었기에 음악을 더 즐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는 내게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보다는 헬스, 등산, 골프 등 신체활동적 취미를 권하거나 그러한 운동을 배울 것을 권유 하였다. 정말 시간만 많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배우고 싶고 또한 취미로도 가지고 싶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이라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끌리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음악을 선택하였고, 그 중에서 바이올린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바이올린은 피아노처럼 건반도 없고, 기타처럼 현에 음을 구분하는 플렛도 없으며, 관악기처럼 구멍이나 키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바이올린 현 위에는 아무런 구분도 없고 표시도 없다. 오로지 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뒤 눌러서 그로부터 나는 소리를 듣고 음을 만들어 내야 한다. 기본 포지션(바이올린 지판에서 손가락의 위치) 외에 제2, 3, 4포지션 등 상위포지션으로 올라갈수록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간격이 달라진다. 이러한 부분이 바이올린을 배움에 있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머리를 쓰면 각 음의 지판에서의 위치와 손가락 번호를 알아 낼 수 있고, 음의 상대적 위치에 의하여 지판에서의 음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 또한 바이올린 곡을 연주함에 있어서, 특정한 손가락번호나 활 굿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바이올린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함께 생각을 하면서 연주자의 상황에 맞는 손가락번호나 활 굿는 방식을 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악기에 비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나는 이런 면에 재미를 느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주하면, 쉽게 말해 머리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변호사로서의 일을 할 때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의 뇌 활동영역은 다른 것 같다. 바이올린을 나중에 그만 배우더라도 취미로 꾸준히 연주하면 적어도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한편 나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주할 때의 고도의 집중 상태를 좋아한다. 한 곡을 연주하거나 한 곡의 부분 부분을 연주할 때, 악보를 봄과 동시에 왼손 손가락을 움직이고 오른손으로 활을 그어야 하며, 다음 마디의 음표를 미리 머릿속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없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연습이 부족할 때의 경우 더욱더 그러하다(연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몸이 움직임을 체득하여 어느 정도 곡을 외워 연주하게 되면 집중을 덜 할 수 있기는 하다). 바이올린 협주곡의 한 악장을 연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몇 분이 훌쩍 지나가게 된다. 그와 같이 바이올

린 연주에 고도로 집중하다보면, 바이올린 연주전에 있었던 여러 상념이 사라지고, 어느덧 명상 상태와 비슷한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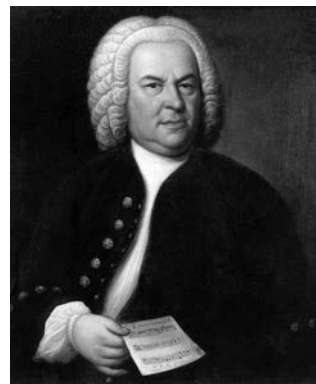
그리고 나는 바이올린 연습을 하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좋아한다. 곡을 처음 배울 때는 연주되는 곡은 차마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렇지만 그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배워나가면서, 전에 배웠던 부분은 반복학습이 되게 되고, 완성도는 더욱 높아진다. 또한 학원에서 곡을 배운 후 배웠던 부분을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부분 연습을 한다. 템포를 느리게 했다가 연습을 계속 할수록 점점 템포를 빠르게 해 나가기도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덧 처음에 비하여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연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보면서,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탑은 하루아침에 쌓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또한 바이올린의 연주 자세를 보면 알겠지만, 바이올린은 아래쪽 뒷부분을 어깨에 대고(어깨받침 이용), 윗쪽 뒷부분에 턱을 댄 채(턱 받침 이용), 왼손으로 바이올린의 목(네크)을 잡게 된다. 여기서 오른손을 활을 긋게 되면, 현의 진동이 바이올린 내부에서 공명하고, 그 공명은 턱받침에 댄 턱을 통하여 두개골을 진동시켜, 온 몸의 뼈에 그 진동이 전해진다. 다른 악기와 달리 바이올린(바이올린족인 비올라 등도 포함)은 귀뿐만 아니라 그 악기의 소리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악기이다. 이는 다른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바이올린만의 매력이다.

추천하고 싶은 바이올린 곡은?

바이올린 곡 중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곡이 많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배웠던 바이올린 곡을 여러분께 추천하고 소개해 드리고 싶다.

그것은 내가 배웠던 바흐의 바이올린협주곡 3곡이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작곡한 것으로 전해지는 바이올린협주곡은 3곡뿐이다. 바이올린협주곡 제1번(BWV⁹ 1041),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BWV 1042),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BWV 1043)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바이올린협주곡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독일의 쿠틀에 궁정악장으로 머물던 시절(1717년 ~ 1723년) 궁정 관현악단의 지휘자인 요셉 슈피스를 위해 작곡한 곡이라고 한다. 바흐의 쿠틀 시절은 바흐가 교회음악을 떠나 세속적인 기악곡을 가장 많이 작곡했던 때로, 바흐도 이때 연봉 조건이 제일 좋았었고, 여러 모로 행복했던 시기라고 한다.

먼저 바흐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의 1악장을 소개한다. 바흐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은 비발디의 바이올린협주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곡이다[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널리 알려진 곡은 한때 서울지하철 5호선 ~ 8호선에서 환승곡으로 나왔던 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RV 356)이다]. 또한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곡은 바흐의 음악으로는 드물게 ‘비극적 서정미’를 가지고 있다. 마치 한편의 그리스 비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곡으로, 감정이 점점 고조되었다가 해소되는 느낌이 반복되는 특색이 있다. 유튜브에서 ‘BWV 1041 1st movement’라고 검색하여 보자.

다음으로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의 2악장을 소개한다. 이 곡은 두 대의 바이올린이 함께 연주를 하면서 멜로디를 섞는 곡인데 두 대의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의 하모니가 압권이다. 음악용어로는 ‘푸가(fuga)’라고 한다고 한다. 음악이 다소 느린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 나른해지며 여유가 생기고 차분해지게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유튜브에서 ‘BWV 1043 2nd movement’라고 검색하여 보자.

바이올린 곡은 클래식만 있나?

- 1) 학교 음악시간에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 헨델’, ‘교향곡의 아버지는 하이든’, 음악의 신동은 모차르트’ 라고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양에 가서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이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위와 같은 공식은 수십 년 전 일본의 어떤 한 출판사에서 악보를 출판하면서 한 네이밍 마케팅의 결과로 일본에 퍼진 것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 교과서에서까지 실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 2) BWV는 독일어 ‘Bach Werke Verzeichnis’의 약자로 ‘바흐 작품 번호’라는 의미이다. BWV 1부터 BWV 1126까지 있다. BWV 번호를 기억하면 바흐의 곡을 검색하기가 편하다. 유튜브에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라고 검색하기보다 ‘BWV 1041’을 검색하여 보자.

바이올린을 배우면 반드시 클래식 곡만 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이올린을 몇 개월 정도 배워 기본 음계를 익혔다면 가요 등도 악보를 보고 충분히 연주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바이올린 연주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 먼저 전자바이올린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진박이 예전에 유명했는데, 최근에 다시 연주활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재즈 바이올린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엄연히 바이올린도 재즈 음악의 일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장르는 바로 ‘피들(fiddle) 음악’이다. 쉽게 말하면 ‘서양 민속 바이올린 음악(컨트리 음악)’이다. ‘바이올린’이라는 말은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피들’이라는 말은 게르만 고유어에서 나온 말로, 서양에서는 바이올린의 별칭으로 사용된다. ‘피들 음악’의 경우, 미국에서는 중서부 등에서 술집이나 축제 현장에서 많이 연주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피들’ 연주 경연대회도 심심치 않게 열린다고 한다. 가끔 서양영화를 보면 바이올린으로 단순하고 빠른 음악을 연주하면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탭댄스를 추는 모습이 있는데, 이때의 음악이 ‘피들’이라고 보면 된다. ‘피들 음악’의 경우 바이올린을 턱에 대지 않고 어깨에 대어 연주기도 하고, 연주기법도 단순하다. 다만 음색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음을 연속적으로 끌기도 하며(글리산도), 음을 꺾기도 하고, 엇박자 등을 활용하는 등 일반 바이올린과는 다른 주법들을 즐겨 쓴다. 또한 ‘피들스틱’이라는 막대로,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쌍의 작은 막대로 현을 두드려 리듬을 연주하기도 한다. 피들 음악에서는 바이올린이 연주할 때 포크 기타나 만돌린 또는 밴조로 반주를 하게 된다. 미국의 민중 음악을 체험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fiddle’이라고 검색하여 그 음악을 들어 보기를 권하여 드리고 싶다.

나가며

솔직히 바이올린 연주와 같은 취미는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주변을 살펴봐도 이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공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통하여 커밍아웃을 하기가 다소 어려웠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하여 바이올린에 대하여 막연히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임 아무개 변호사가 바이올린을 새로 배워 취미로 가지게 되기까지의 일을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가 바이올린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어,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즐거운 일도 없을 것 같다.

바쁜 변호사 일상과 부족한 실력에 감히 엄두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행복한 상상을 하여 본다. 우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도 바이올린 등 현악기를 연주하는 취미를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현악4중주로 회원들에게 하모니를 들려주는 그날을!



2019

경기북부법조
통권 제8호

칼럼 및 서평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마스터스 오브 로마』를 읽고

- 로마 공화정을 생각하며



변호사 오수진

I. 들어가며

로마. 그리스와 더불어 서양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곳. 글과 그림으로 접해보았으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해 무척 가보고 싶은 곳. 그 로마에 관하여 기념비적인 역사소설 『마스터스 오브 로마』가 출간되었다기에 언젠가 한 번 읽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총 21권의 방대한 양이 부담되었다. 그럼에도 어렵사리 『마스터스 오브 로마』 펼쳐들었는데, 책의 재미가 분량을 압도하여 순식간에 읽어 내려갔고 책을 덮고 나니 2,000년도 더 된 과거 로마 공화정을 여행하고 온 기분이었다.

II. 로마 공화정의 모습

1. 로마 공화정의 기원

로마는 기원전 8세기 로물루스 왕이 건국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후 기원전 509년,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시작되었다. 초기 로마 공화정은 귀족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평민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 기원전 494년 평

민의 권익수호를 위해 호민관이라는 관직이 신설되었다. 로마 공화정은 갈리아인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3차에 걸친 삼니움 전쟁과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거쳤다. 이 같은 위기를 겪은 로마 공화정은 군사와 문화 강국으로 거듭났고 이에 따라 군사적 능력이 출중한 장군들의 영향력이 커져갔다.

2. 모스 마이오룸(mos maiorum)

로마 공화정은 모스 마이오룸의 기초 위에 영위되었다. ‘모스 마이오룸’은 정확히 정의 내리기에 어려운 개념이지만, ‘모스’는 이미 뿌리내린 관습을 의미하고 ‘마이오룸’은 조상 내지 선조를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모스 마이오룸이란 로마의 관습 내지 불문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책 전체를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모스 마이오룸’이란 개념이 등장하는데 로마인들이 오래된 전통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모습에서 로마가 부침(浮沈)을 겪으면서도 오랜 역사를 유지해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었다.

3. 귀족과 평민이 공존하는 체제

로마 시민은 크게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귀족은 다시 구(舊)귀족인 파트리키(patricii)와 신(新)귀족인 노빌리스(nobilis)로 나뉜다. 전자는 대체로 로마 왕정 시대부터 존재하던 귀족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로마 공화정 후기에 집정관을 배출한 평민출신 귀족을 의미한다. 조상과 가문을 중요하게 여긴 로마인들에게는 파트리키인지 아닌지가 공직을 맡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파트리키 중에서도 오래된 가문은 로마 왕정 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귀족이었고 이 같은 가문은 그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고 공직 진출도 용이하였다. 『마스터스 오브 로마』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역시 오래된 파트리키 출신으로서 그 출신 자체만으로 비교적 쉽게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관점으로서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어찌면 이 같은 서양문명의 기초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로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Ⅲ. 로마 공화정의 재판제도와 특별한 개념과 법

1. 로마 공화정의 법 체계

로마는 공화정 초기인 기원전 450년 경 법전 제정을 담당한 10인이 작성한 ‘12표법(Twelve Tables)’라는 성문법 체계를 로마법 체계의 기초로 삼았다. 이후 이 12표법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로마법들이 제정되었다.

2. 로마 공화정의 재판

로마 공화정은 일반적으로 민회에 재판권(사법권)이 있었고 범죄 유형에 따라 재판소를 별도로 만들어 운용하였다. 예컨대 ‘대반역죄’의 경우는 민회 중 하나인 백인조회에 재판권이 있었는데 최종 판결은 백인조회의 비밀투표로 정해졌다. 또한 ‘부당취득죄(속주의 총독이 권력을 부당히 사용해 사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죄)’의 경우 원래는 개별 건마다 특별 법정을 만들어 원로원 의원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하였으나 동료 의원인 속주 총독을 처벌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 그 후 로마 공화정 말기에는 원로원 의원이 아닌 기사(상당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로마 시민)만으로 구성된 상설 법정을 설립하여 기사가 배심원이 되어 재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래 민회가 갖고 있던 재판권은 유명무실해졌다. 기소는 로마 시민 또는 비로마 시민이 하였다. 이 같은 방식이 그 후 로마의 표준적인 법정 모습이었다고 한다.

3. 특수한 개념 : ‘공공의 적’과 ‘공권박탈’

우리나라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위한 법은 제정할 수 없는데, 로마 공화정 법 체계에 따르면 ‘공공의 적(hostis)’과 ‘공권박탈(proscription)’이라고 하는 특수한 개념이 존재했다. 공공의 적이란 로마의 적으로 선포된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서 시민권과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빼앗겼다. 카이사르도 공화파에 의해 공공의 적으로 선포되어 이를 계기로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은, 위와 같은 공권박탈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운명의 순간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며 외친 말로 유명하다. 공권

박탈은 특정인의 시민권, 재산, 목숨을 전체적으로 빼앗는 행위로서 그 집행과정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고 공권박탈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주로 내전에서 패배한 자들에 대해 내려진 처분이었는데 특히 로마 공화정 말기 독재관 술라에 의해 원로원 의원 300명과 기사계급 1,600명이 공권박탈의 대상이 되었고 그 대부분은 살해되었다. 이 같이 공공의 적과 공권박탈 개념은 현대 국가의 법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인 바, 2,000년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법체계가 더욱 문명화 되면서 발전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인 것 같았다.

4. 신분과 재산에 관한 흥미로운 법들

『마스터스 오브 로마』에서는 로마 공화정 당시 사회를 규율하던 다양한 분야의 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과정과 시행에 따른 사회상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법들은 다음과 같다. 신분에 관하여 ‘미니키우스 자녀법’은 로마 시민과 비로마 시민이 혼인하여 낳은 자녀는 로마 시민이 아닌 비로마 시민 신분을 물려받는다라는 내용의 법인데, 이는 로마 시민권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이었다. 현재와 비교하면 국적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로마가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한편, 재산에 관하여 ‘리키니우스 사치금지법’은 당시 최고급 음식으로 대접받던 굴과 민물장어 등과 같은 특정 음식을 연회에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는데, 경제력을 갖춘 로마 시민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이 그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 위와 같은 법으로부터 시작된 아닐까 하는 생각에 법의 연원이 정말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IV. 로마 공화정의 통치구조와 통치를 둘러싼 대립

1. 로마 공화정의 통치구조

로마 공화정은 통치기능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마스터스 오브 로마』를 읽으면서 수없이 등장하는 원로원·집정관·민회(호민관)로 각각 구분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2. 원로원

원로원은 로마 왕정 때 왕의 자문기구 역할을 위해 최초로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로마 공화정 당시에도 원로원은 입법기관이 아닌 민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마 공화정 말기에는 원로원에서 실질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한편, 외교·국방·재정에 관한 문제는 원로원에서 다루어졌다. 민회가 제정한 법이라고 해도 그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로원이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로원이 반대하는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원로원은 합의체 기관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최초의 원로원 인원은 100명이었으나 로마 공화정에 이르러 그 인원이 300명이 되었고 로마 공화정 말기로 오면서 600명이 되었다가 카이사르가 독재관일 때에는 1,000명으로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마스터스 오브 로마』를 읽다보면 원로원 인원이 원로원 내 유력한 파벌 또는 독재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공익을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결국 로마 공화정의 몰락을 앞당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원로원 의원은 제명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신직이었고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간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따라야만 했다. 원로원 최고참 의원(모스 마이오룸에 의해 선정되는 권위 있고 청렴한 원로원 의원)과 전직 집정관 출신 의원의 발언권이 우선이었고, 귀족 출신 의원이 평민 출신 의원보다 우선권이 있었으며 심지어 발언권이 없는 원로원 의원(이를 평의원, ‘페다리(pedarii)’라고 한다)도 있었다.

『마스터스 오브 로마』에서 원로원의 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종종 등장하는 인상 깊었던 모습으로써 ‘의사진행방해’가 있었다. 우리나라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 2에 규정된 무제한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은 일명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filibuster)’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제도가 로마 공화정 때부터 존재하던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마 공화정 당시 원로원에서는 원로원 의원이 다른 의원의 발언을 막고 표결을 저지하고자 의사진행방해를 동원하였는데 책에서의 묘사 모습이 정말 실감나고 마치 원로원 내에 있는 듯 착각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3. 집정관과 독재관 - 로마 공화정 분열의 단초

집정관은 임기 1년의 로마 공화정 최고위 관료로서, 매년 민회(백인조회)에서 2명을 선출하였다. 원래 파트리키만이 집정관이 될 수 있었으나 기원전 366년 최초의 평민 출신 집정관이 탄생하였고 그 후부터는 평민도 집정관이 될 수 있었다. 집정관은 원로원과 협력하여 로마 공화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국방에 관하여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음에 따라 전쟁 발발 시 그 수행에 관한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평시가 아닌 전시에도 집정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집정관과 관련하여 ‘임페리움(imperium)’이란 개념이 등장한다. 임페리움은 집정관을 포함하는 일정한 고위 관료 또는 그 권한대행에 대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의미한다. 즉, 임페리움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해당 관직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법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그 권한을 부정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임기 동안 임페리움이 유지되며 원로원(또는 민회)의 동의를 받아 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었다. 임페리움을 가진 사람은 그 경호원단인 릭토르단을 거느릴 수 있었는데 그 관직이 높을수록 릭토르단의 수가 많아졌다. 현재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정확히 동일한 개념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일종의 ‘신분보장’이 아닐까 한다. 『마스터스 오브 로마』를 읽다보면 임페리움 있는 관료들에 대해 로마 시민들이 존중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그 권위 있는 자들의 책임 있는 모습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일반적인 전시를 넘어서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시에는 원로원의 결의를 통해 집정관이 독재관을 임명하였다. ‘국가 중대한 위기’란 본래 로마 본토가 침공당할 우려가 있는 전시를 의미하였고 이는 독재관이 오직 전쟁에 관해서만 특별한 군사권을 부여받고 전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 것이어서 그 임기는 6개월에 불과하였다. 독재관이 임

명되더라도 집정관은 그대로 로마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함에 따라 독재관과 집정관은 병존하였다. 독재관은 임기 중의 행위에 대해 면책 받을 뿐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 중의 행위로 인해 소추되지 않는 특권을 누렸다. 로마 공화정 말기 원로원은 1인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독재관을 임명하는데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원로원 최종 결의’라는 형태의 특별한 결의로써 독재관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결국 로마 공화정 말기에 뛰어난 전직 집정관으로서 독재관의 자리를 차지한 카이사르의 생각과 로마 공화정의 기존 제도를 지키고자 한 원로원의 생각 사이에 간극이 커짐에 따라 로마 공화정은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을 거치지 된 것이라 생각된다.

4. 민회

민회(코미티아, comitia)는 로마인들이 입법, 행정(선거 포함) 및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체를 일컫는 말로써, 로마 공화정 당시 민회는 크게 ①평민회 ②백인조회 ③트리부스회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평민회가 대표적인 민회였다.

평민회는 평민만이 참여하여 입법권 및 재판권(로마 공화정 말기 상설 법정이 설치되면서 민회의 재판권은 유명무실해짐)을 행사하였고 오직 호민관만이 평민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호민관은 평민회에서 10명(초기에는 2명)이 선출되는데 평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대부분 파트리키로 구성된 로마 고위 관료 집단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원전 149년부터 호민관은 자동으로 원로원 의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호민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거부권’이었다. 호민관의 거부권은 다른 호민관 9명, 집정관 및 원로원이 취한 결의나 처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이 거부권도 오로지 ‘독재관’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었다. 호민관의 거부권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로마 공화정 후기로 가면서 거부권의 행사가 본래 목적이 아닌 파벌의 이익을 위한 지나치게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마스터스 오브 로마』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마스터스 오브 로마』에서는 호민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장면들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호민관의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파급력 있는 정치적 행위였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 같이 강력한 권한인 거부권조차도 술라나 카이사르 같은 독재관 앞에

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보면 독재관이 가진 권력이 가늠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마도 로마인들이 독재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갖지 않았을까 싶었다. 국가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원로원 동의에 따라 임명되는 독재관의 권력은 양날의 검 역할을 하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는 걸 『마스터스 오브 로마』를 읽으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다.

백인조회는, 파트리키와 평민 모두 참여할 수 있었고 집정관을 선출하였으며 일정한 범위의 재판(대반역죄 재판)권 및 입법권이 있었다. 백인조회는 민회에 비해 규모가 거대하였으므로 실제로 재판 진행 및 법 제정을 위해 모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마스터스 오브 로마』에서도 일반적으로 민회라고 하면 평민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트리부스회에 관하여, 트리부스란 원래 동일한 종족 집단의 거주지역을 의미했으나 로마 공화정 때는 행정작용의 편의를 위해 구분한 일종의 행정구역과 유사한 개념이다. 로마에는 총 35개의 트리부스가 존재했다. 트리부스회는 백인조회와 마찬가지로 파트리키와 평민 모두 참여할 수 있었고 또한 일정한 입법권 및 재판권이 있었으며 집정관이 트리부스회를 소집하여 집정관 이하의 고위 관료를 선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트리부스회는 상대적으로 집정관의 의도대로 운영될 소지가 있었던 민회였다. 『마스터스 오브 로마』에서도 영향력 있는 집정관의 경우 자신에게 우호적인 고위 관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당 집정관이 트리부스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V. 나오며

로마로부터 서양문명이 흘러나와 인류역사의 한 면을 장식했다면, 『마스터스 오브 로마』로부터 로마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와 역사소설과 로마에 관한 문헌의 한 면을 장식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로마와 그리스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수레가 서양의 역사와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다음에는 그리스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소설이 출간되기를 바라면서 소소한 독후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S.P.Q.R. (Senatus Populusque Romanus의 약자. 로마 공화정을 이르는 말로써, ‘로마 원로원과 시민’을 뜻함)은 지금, 여기에 있다!

완벽하지 않은 타인



변호사 김 호 정

영화 ‘완벽한 타인’은 이탈리아 영화인 ‘Perfetti sconosciuti’의 국내 리메이크작이다. ‘Perfetti sconosciuti’는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리메이크되었던 흥행작으로, 오랜 친구간인 네 남자와 이들의 아내인 세 여자 모두 일곱 사람이 저녁식사 동안 각자의 핸드폰으로 오는 개인적인 연락을 공유하는 상황을 가정한 이야기로 코메디적인 요소가 많은 영화이다.

석호(조진웅 역, 성형외과 의사)는 새 집으로 이사한 것과 36년 만에 월식이 오는 것을 기념하여 40년 지기 친구들인 태수(유해진 역, 변호사), 준모(사업가), 영배(윤경호 역, 이혼남)와 그들의 부인(또는 연인)을 월식의 저녁식사에 초대한다. 태수는 고시생 일 때부터 동고동락을 함께한 부인 수현(염정아 역, 전업주부)과 함께 도착했고 준모도 부인 세경(송하운 역, 수의사)과 함께 왔지만 영배는 평소 친구들에게 말하던 여자 친구와 함께 오지 않고 혼자서 왔다.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석호의 부인인 예진(김지수 역, 정신과 의사)은 식사하는 시간 동안 서로의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내용(통화, 메시지, 이메일까지)을 공유하는 것이 어



떨졌냐고 제안하고, 세경이 좋다고 강력하게 찬성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7명은 자신의 핸드폰을 식탁위에 두게 된다.

3시간여, 길다면 4시간 사이로 보이는 식사시간동안 생각보다 꽤나 많은 개인정보들이 공개되고 만다(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반나절 만에 한 사람의 거의 모든 비밀이 공개된다는 것은 어색하다). 석호와 예진은 한강이 보이는 고급아파트에 병원건물까지 가지고 있고 자녀도 성년까지 잘 키워냈지만, 사실 집을 저당잡히고 잘못 투자를 한 상황인 점, 석호가 예진의 아버지로부터 현재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예진조차 일찍 한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

평소 정숙해보였던 수현은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를 한 적이 있고, 이를 남편인 태수가 이를 덮어주기 위해 수현의 음주운전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점과 수현이 예진과 친하게 지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에는 예진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던 점, 연하에 돈이 많은 집 딸인 세경과 결혼한 준모는 사실 장모님이 차려준 레스토랑의 매니저와 불륜관계였고 심지어 예진과도 내연관계인 것처럼 묘사되어 매우 심각한 바람둥이라는 점, 태수 역시 연상의 여인과 부적절한 사진을 받으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점, 영배는 동성애자였으나 이를 40년 지기 친구들에게 숨기고 있었던 사실까지 모두 밝혀지고 만다.

그런데 이 영화는 위 핸드폰 공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즉 서로간의 비밀

을 알지 못하는 채로 영화가 끝난다(세경은 마치 준모와 이혼할 것 같은 기세로 석호의 집을 나가면서 식탁 위에 동전을 돌려놓는데, 화면이 전환되며 핸드폰을 공유하지 않은 상황으로 반전이 나온다. 마치 영화 인셉션의 팡이와 비슷하다). 영화의 끝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적인 하나, 그리고 비밀의 하나.” 결국 부부간이나 오랜 친구간이라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담아두고 살아가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왜 비밀을 만드는 것일까? 그리고 비밀은 알아야 하는 것일까?

영태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동성애자인 사실을 숨겼고, 수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성상(정숙한 어머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뜨거운 열정을 자신의 블로그에만 표현했다. 태수의 경우는 애매하지만, 부인의 잘못(음주운전)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성정(정의를 구현하려는 면모)과의 괴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심적인 시련을 다른 여성(연상의 여성)으로부터 위로를 받음으로써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다. 석호도 잘못된 방법이지만 자기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 부인인 예진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습적인 법칙과 같다면, 일종의 편법을 쓰는 셈이다. 자신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그것이 상대방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러한 정보 자체를 알리는 것이 상대방에게 강요로 느껴질 수 있고, 관계를 해칠 수 있기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차라리 이를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정보가 아닌 양 행세하는 것이다.

영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4명의 40년간의 우정은 깨졌을지도 모른다. 수현이 자신의 취향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작품을 읽고 평가하도록 요구했다면 태수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비밀의 경우, 어떻게 보면 ‘알게 되더라도 상관없을 것’이다. 상호간의 관계에 신뢰와 애정이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정보를 알게 된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황할 것이지만 이내 받아들여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뢰나 애정이 없었다면 이를 기회삼아 그들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모르더라도, 상관없다. 위와 같은 정보는 ‘순수한 내밀한 기본정보’로서 알든 알지 못하든 상호간의 관계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불법적인 비밀도 있다. 준모의 수 개의 내연관계가 그럴 것이다. 물론 여성편력도 하나의 내밀한 취향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혼인제도와는 맞지 않다.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하는 부부에게는 엄연히 정조의무가 부여된다. 준모가 한 명의 여성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준모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니 그 자체로 혼인의 법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고, 결혼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못해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상대방인 세경을 위하는 마음은 없다. 세경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이익만을 주려는 행동일 뿐이다.

이러한 비밀에는 딜레마가 있다. ‘아는 것은 힘’이지만 ‘모르는 것은 약’이라고 한다.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모르는 것은 비록 거짓되지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게 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상대방은 몸과 마음에 병이 들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민사판례는 상대방 몰래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된 자료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세경이 준모 몰래 핸드폰 비밀번호를 열고 취득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이더라도 세경은 준모와 이혼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경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타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훔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한 형사책임이 발생된다. 세경은 준모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가볍게는 벌금에서 심하면 징역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비밀’을 밝히는 순간, 둘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되어야 한다’는 관습적인 법칙을 유지시키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동성애’라든지 ‘불륜’같은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표현했으나, 막상 영화를 보고 나오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 희극으로 포장된 영화 속에서 관객은 갑작스럽게 ‘공공연한 비밀’을 마주한다.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비밀만 아니라면 나는 얼마든지 비밀을 말하고, 듣고 싶다. 사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디에선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낸다. 그 작은 표현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비밀을 굳이 비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서로 어디까지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2019

경기북부법조
통권 제8호

나의 변론이야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나의 첫 국민참여재판 - 17시간의 기록



변호사 양원석

저는 2015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36살의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는데, 로스쿨을 다니면서부터 기존 재판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조정과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심이 많아, 여름방학에 ‘YMCA 조정 캠프’에 참여하여 직접 조정과정에 참여해 보았고, 그림자 배심원으로 2012년과 2013년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2015년 가을부터 의정부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님의 추천으로 국선전담변호사님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자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혐의로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님께서도 제가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아셨는지 저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수사기록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검토해 보니,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수시로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받다가 전 부인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자, 칼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리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고소인 겸 피해자인 전 부인의 증언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은행의 CCTV 화면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타고 다닌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음성이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는 사건 이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이용한 위협에 대해서 따지면서 묻자, 피고인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전화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저도 수사기록의 위 증거들을 보고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의구심이 들었는데, 기록을 여러 차례 검토해 본 결과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은행의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차를 주차시킨 곳을 조사해 보니, 경찰지구대에서 매우 가까운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이후에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봐두었다는 PC방을 함께 방문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범죄사실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녹음한 전화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부정하지 않으면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과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 녹취록은 위의 전화 통화 이외에 몇 개가 더 있었는데, 대부분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박하면 피고인이 사과를 하는 대화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박하는 이유는 이혼한 이후로 수차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는데도, 피고인이 매번 실패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거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대화는 특수강도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부부싸움으로 들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기록 검토한 이후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왜 이혼을 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냐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는 경제적 이유로 가장이혼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혼한 이후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미술학원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미술학원 수입은 모두 피해자가 관리하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였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칼 이야기에 대해 왜 부인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혼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피해자는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매번 구박을 하였는데,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박을 하였고, 이에 대해 반박하면 더 많은 구박을 하였기에, 언제부턴가는 피고인의 구박에 대해 반박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번에도 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딱히 부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과의 접견을 마치고 며칠 후에 피고인은 수감 장의 진술서를 작성해서 변호인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의사선생님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아내를 포기하고 아이라도 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끝까지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 기적같이 피해자와 아들의 생명을 모두 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잘못으로 하나뿐인 아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고발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고, 이번에 교도소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진심을 알았기에 교도소에서 나가게 되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홀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접견을 마친 저와 국선전담변호사님은, 피고인의 특수강도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당시의 행적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된 반면에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계속된 경제적 도움 요청에 지친 피해자가, 더 이상의 경제적 도움 요청을 막고자, 평소에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박에 반박하지 않고 사과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칼 이야기를 하고, 이를 녹음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선전담변호사님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진

술이 계속 반복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압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 스스로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시인하게 유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고도 피해자를 위해 희생하였던 일들, 그리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배심원단에게 이 사건이 특수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사이에서의 단순한 다툼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선정절차로 시작되었는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2명뿐이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기회는 피해자에 대한 신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100개가 넘게 준비하였고, 그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배심원단 선정과정에서 저녁 시간에 용무가 있거나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집중해서 변론을 듣기 곤란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심원단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이 배심원단 선정에 있어 위와 같은 계획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늦은 시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사실을 배심원 후보자들이 알게 될 경우, 배심원단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려 배심원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의 걱정과는 반대로 배심원단 구성이 빨리 마무리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배심원 후보자들도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과 국민참여재판이 현재 사법시스템을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오전에 배심원단 구성이 마무리 되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모두변론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의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단의 신문이 시작되었고, 변호인단은 원래 계획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계속 반복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흥

분한 나머지 ‘경찰관이 나의 진술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는 대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위 대답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의 계속된 압박 질문에 당황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잘못한 사람은 저기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가요?’라면서 변호인단에 화를 내더니, 결국에는 울먹이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위증해 줄까? 그러면 되겠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엄마, 그러지 말고 묻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재판장님께서 직접 아들에게 경고를 주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울먹이면서 피해자에게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런데 이진 아니잖아, 다시는 여보 괴롭히지 않고 연락도 하지도 않을게. 우리 이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 인연을 끝내자’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애증관계가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끝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찰 측도 변호인단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피해자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호인단과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 오후 재판을 마쳐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8시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시작으로 재판이 속행되었고, 변호인단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과 이혼하게 된 경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함께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피해자를 사랑하기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할 사람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도와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늦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신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검찰의 반응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변호인단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배심원단이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인단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고, 배심원단은 저녁 식사 후에 이어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경청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질문 사항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신문을 끝내고, 이어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마무리 하고 나니, 어느덧 시간은 밤 12시가 되어갔습니다. 저와 국선전담변호사님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근처의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국선전담변호사님은 지금까지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왔지만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것이라면서 저에게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변호사님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아쉬웠던 점을 곱씹어 보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았는데, 배심원단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본 변호인은 재판 결과가 궁금하였고, 끝까지 피고인과 함께 하고 싶어 국선전담변호사님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으니, 먼저 집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하고, 법원 근처에 있는 본 변호인의 사무실로 가서 쉬면서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 판결을 듣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재판장에 갔는데, 배심원단의 결론은 변호인단의 예측과는 달리 배심원단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배심원단과 본 변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수차례 하였고, 재판장님께서도 국민참여재판을 마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주신 배심원단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금번과 같은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계속되어

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라고 하시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배심원단 분들도 퇴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제부터는 아내분 괴롭히지 말고 남은 인생 아내분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서 피고인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재판장님, 검사님, 배심원단, 그리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새벽 2시가 훌쩍 넘어 집에 가기 위해 승용차에 올라 운전을 하었는데, 평소에는 밤 11시만 되면 훑아떨어지는 변호인인데, 이상하게도 그 날은 밤 12시가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리거나 힘이 들기는커녕, 몸에서 뿌듯함으로 인한 기운이 샘솟는 것이 느껴졌고, 4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나 수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 날 새벽에 느꼈던 그 기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고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수기를 쓰면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금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사건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결혼부터 이혼 이후의 일들까지 모두 살펴보면서 서로의 눈물을 통해 애증관계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애증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재판장님도 이를 지적하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기존의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였다면 당사자들의 애증관계까지는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다양한 연령과 성별 및 경험을 가진 배심원단이 아닌 결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판사님 또는 남성이나 여성 판사님들로만 구성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였다면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비효율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인데, 각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단순 건수를 통한 성과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굳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건까지 무리하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 비효율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번 사건과 같이 현재의 일반 형사재판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변호와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법원과 변호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이 지금보다 국민의 사랑과 법조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비효율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정확히 선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각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기관을 각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건이 정확히 선별된다면, 앞으로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번에 본 변호사가 참여한 재판과 같이 새벽까지 계속되는 국민참여재판이 많아질 것인데, 그렇다면 각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 변호사가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새벽까지 진행하면서 재판 시작 전에 양해를 구했던 다음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배심원들 뿐 만 아니라 다음날에도 평소와 같이 재판을 하셔야 하는 재판장님을 포함한 판사님, 그리고 사무관님을 포함한 법원 직원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선전담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저와 같은 청년 변호사들에게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본 변호사의 바람으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P.S : 이 수기는 제1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사건 셋



법학박사 변호사
휘은(徽銀) 권종철

1. 사고 내고 소주 병나발 분 사건

1989년(변호사 3년) 2월에 동두천 동네선배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 특허사무소에서 일하던 휘은(나, 권종철 변호사)을 찾아왔다.

[휘은은 어떤 일을 기록할 때 변호사를 시작한 1987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호를 기록해 놓고 있다. 이것은 그 일이 변호사를 시작한지 몇 년 후에 일어난 것인지를 파악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호사 원년에 휘은이 서른 한 살이었으니, 변호사 연호 숫자에 30을 더하면 휘은의 나이가 되며, 변호사 원년에 휘은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변호사 연호는 곧 아들의 나이이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변호사라는 연호를 기록한다.]

선배가 찾아와서 하소연한 사건은 이리했다.

1989. 1. 7. 그때 나이 서른 한 살이었던 선배의 동생은 자동차 운전을 시작한지 두 달 쯤 되었다. 그날 밤 9시에 동생은 회사의 복사 트럭을 운전하여 동두천에서 전곡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안개가 끼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동두천시 상봉암동 74 앞길에 이르러서 차 오른쪽에서 무언가 부딪힌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250미터 가량 더 가서 길옆 빈터에 차를 세우고 돌아와 보니, 길가에 42세의 피해자가 차에 치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차가 여러 대 있어서, 그 중 트럭 한 대를 세워서 부탁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동두천시내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응급치료를 요청하였는데, 트럭을 운전하여 간 사람이 병원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동생은 병원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사서 병나발을 붙였다고 한다. 동두천성모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 중해서 치료를 할 수 없으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트럭 운전사와 동생은 피해자를 실은 채로 의정부 신천병원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가는 도중에 죽었다.

동생은 경찰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받았고, 술 냄새가 났으므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결과는 핏속의 알코올 농도가 0.12%였다.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우선 뺑소니가 아닌가 의심되었다. 왜냐 하면, 동생은 사고 장소에서 250미터가 떨어진 곳 빈터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돌아왔기 때문이다. 보통 이와 같이 현장에서 250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면, 이것은 뺑소니가 된다. 우리 제도는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데에 큰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는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차를 보면 사생결단을 하고 쫓아가서 잡는다. 그래서, 이날 만일 근처에 택시가 있어서 택시운전사가 보았다면 즉시 쫓아가서 사고차를 잡았을 것이고, 그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뺑소니가 되고 만다.

다행히 그곳에는 택시운전사도 없었고, 동생을 뒤쫓아 온 사람도 없었고, 동생이 스스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다. 동생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다. 동생은 물론 이것을 부인하였다. 즉, 사고났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를 낸 후에 성모병원에 갔을 때, 동생은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가게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사서 다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동생이 성모병원 앞에서 소주를 사서 마신 것은 같이 갔던 트럭 운전자와 슈퍼마켓 주인이 증언하여 주었다.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이 아닌가를 추궁하지 않았다. 즉, 결국 동생은 다른 위반 사항이 없이 단지 밤에 안개 속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사람을 치어 죽였다는 죄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보통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으면, 사고를 낸 사람은 구속된다. 동생도 사고가 난 후 3일 만인 1월10일에 구속되었다. 그리고, 1월13일 동생의 형은 죽은 사람 가족들과 만나 550만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사고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다. 동생은 사고를 낸 후 병원에 갔을 때, 소주를 사서 병나발을 붙였다. 그런데, 이것이 동생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그야 말로 이것이 최악의 사태를 불러왔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형량은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가벼운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은 교통사고에 관하여 관대하다. 보통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여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만 되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이 되고, 재수가 좋으면 그 이전에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동생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다만 안개가 끼고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차도를 건다가 동생의 차에 치어 죽었으니, 아마도 동생이나 그 형은 동생이 빨리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확신하였던 것 같다. 당시 보석이 허가되면 구속된 지 보름 내지 한 달 안에 석방이 되었다. 동생의 형은 당시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던 휘은에게 이 사건을 맡기지 않고 어떤 사무장의 권고로 의정부법원 앞에 개업하고 있던 어떤 변호사에게 맡겼다.

아마도 그 사무장은 브로커 사무장이었을 것이다. 그 변호사는 동생이 술을 마시지 않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보석을 신청하였다. 당시 담당 판사는 휘은의 법대선약회 선배였는데, 간단히 보석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그 변호사는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보석이 기각되자, 동생의 형은 그 변호사를 해임하고, 그 변호사에게 준 돈을 돌려받아서 휘은을 찾아와서 사건을 맡아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생의 형은 휘은에게 다시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이었다.

언젠가 신참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하였는데 기각되었고, 법원장을 지낸 거물급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어 보석을 신청하였더니 보석이 허가된 일이 있어서, 법원의 부조리로 신문에서 크게 다루어졌던 일이 있었다.

본래 한 번 보석이 기각된 사건은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보석이 허가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 따라서, 다시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내는 일은 불가능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휘은은 이 사정을 설명하고 보석은 안 되고, 재판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사실, 휘은은 대학교 산악반 선배인 판사가 그 정도는 봐 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 즉, 그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인 경우에 대부분 합의만 되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도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휘은은 그 사건을 맡고서 담당

판사를 찾아갔다.

지금은 꿈도 꾸지 못 할 일인데, 그 때는 변호사가 담당판사의 방에 찾아가서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고 잘 봐 달라고 하는 일이 예사로 있었다. 휘은은 선배를 만나 뻘한 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런데, 그 선배는 휘은을 보고 빙긋이 웃을 따름이었다.

휘은은 선배가 빙긋이 웃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 드디어 3월15일에 첫 공판이 열렸고, 3월 29일에는 슈퍼마켓 주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동생이 병원에 온 후에 소주를 사서 마신 사실을 증언하였다. 그 증언 중에는 동생이 소주를 사러 슈퍼마켓에 왔을 때 전혀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재판은 빨리 진행되어 4월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휘은의 선배는 우리들의 기대를 산산이 깨뜨리고, 동생에게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집행유예가 아니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다른 경우,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데, 선배의 동생은 왜 집행유예를 받지 못 하고, 실형선고를 받았는가? 동생이 술을 마시지 않은 멀쩡한 정신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게 하였으므로 떨어져 술을 사서 마셨는지, 아니면 술을 마셔서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나중에 사고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나중에 술을 마셨는지는 변호사도 모르고, 검사, 판사도 모른다. 그런데, 진실이 어떠한 간에 판사는 동생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얹은 피를 내어 술을 마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나중에 남이 보는 앞에서 소주 병나발을 붙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판사의 생각이었다. 아무리 변호사가 그게 아니고, 술을 안 마셨는데 사고 후에 떨어져 술을 마신 거라고 변호해 보았자, 판사는 빙긋이 웃을 따름인 것이다. 판사는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순진한 변호사 양반아! 너는 그렇게 믿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술 마신 것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병나발 분 거야.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몰라.” 이 사건에서 동생은 큰 잘못으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는데, 사고 후에도 참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몇 달을 더 감옥에서 고생하여야 하였다. 보통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어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당시의 기준으로 두 달 정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후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동생은 술 마시고 사고를 낸 것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석 달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받은 판결에서 금고 10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만일, 동생이 진실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냈는데, 사고 후에 떨어져 술을 마셨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고, 멀쩡한 밤에 재를 뿌린 것이다. 그런 변명을 받아주는 판사는 없는 것이다. 실형 선고를 받은 동생은 당연히 항소하였고, 휘은은 그 사건 항소심을 맡지 않았다.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6개월 이상 구속되어 고생을 했던 것이다.

2. 유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휘은은 1993년(변호사 7년) 8월에 가뭍에 콩 나듯이 드물던 형사사건을 수입하였다. 사건 내용을 이리했다.

피고인은 29살로 화물차 운전을 해 왔다. 1993. 6. 23. 오후 2시쯤 대형트레일러(보통 사람들은 추레라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속 85킬로미터로 고양시 현천동 난지검 문소 앞 왕복 4차선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차가 화물차이므로, 2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선으로 적재함에 병사들을 실은 군용트럭이 앞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트럭이 오른쪽 길가에 정차하는 듯하여 피고인은 그 차를 피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들어갔다.

그런데, 도로가에 정차하는 듯하였던 군용트럭이 갑자기 길가에 서지 않고 2차선, 1차선을 가로지르듯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왔다. 피고인은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트레일러 앞 모서리로 군용트럭 왼쪽 뒷모서리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트레일러는 미끄러져서 가던 길 1차선과 2차선에 걸쳐서 2시 방향을 보고 길을 가로막듯이 섰고, 군용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길 2차선까지 밀려가서 돌아서 7시 방향을 보고 섰다. 이 사고로 군용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병사들이 떨어져, 그 중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전치 12주, 7명이 전치 2주씩의 상해를 입었고, 군용트럭을 운전한 병사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2차선으로 가다가 앞서 가던 군용트럭을

앞지르려고 1차선으로 바꾸다가 그 군용트럭도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것을 보지 못 하고 과속으로 군용트럭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고 기소되었다.

1993. 7. 16. 피고인이 구속되었다.

휘은은 8월11일에 이 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리고, 사태를 파악해 보니, 다름 아니라 군용트럭이 그곳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고임을 알아차렸다. 그 군용트럭이 유턴하기 위해 편도 2차선의 길의 길가에 잠시 서서, 맞은편 길은 물론이고, 자기가 달려온 길의 1, 2차선에 달려오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불법으로 2차선, 1차선을 가로질러서 유턴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석의 왼편 바로 뒷부분은 백미러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이다. 그래서, 차선을 왼편으로 바꿀 때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왼편 차선에 차가 없는지를 살핀 후에 왼편 차선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왕왕 이 사실을 까먹고, 백미러에 차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차선을 바꾸었다가, 왼쪽 뒤편에서 차를 발견하고 기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도 군용트럭을 운전한 병사는 자기 트럭을 뒤따라오다가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피고인의 트레일러를 백미러로 보지 못 한 것이다. 운전병은 백미러를 볼 뿐 아니라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바로 왼편 뒤에 지나가는 차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가 없다고 판단하고, 갑자기 차선을 가로질러서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트레일러에 왼편 뒤 모서리를 치이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돌아서 7시 방향을 보고 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사고 후에 두 차가 서 있는 위치였다. 오른쪽에서 들어가다가 들이받힌 군용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 편 길 2차선에 가서 섰고, 들이받은 트레일러가 가던 길 가운데에 1차선과 2차선에 걸쳐서 섰다는 사실은 군용트럭이 매우 급히 차의 머리를 틀어서 들어왔으며 그 차가 선 곳 즉 맞은 편 길로 건너가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만일, 공소사실대로 군용트럭이 단순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고, 트레일러도 바로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났다면 군용트럭은 맞은 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서지 않고, 오른쪽으로 밀려서 그 차선 안에서 섰을 것이고, 트레일러도 그 차선을 가로막고 서지 않고 왼편으로 밀려서 중앙선 부근에서 섰을 것이다.

그 사건의 담당 판사가 휘은의 법대 동기동창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같은 반이

었다. 휘은은 어느 날 판사방에 찾아가서, 이 사건은 구속된 피고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불법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급히 차머리를 꺾어서 들어온 군용트럭 운전병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 당시에 변호사가 판사방에 찾아가서 사건을 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가용 운전이 일반화된지 몇 년 안 된 때였다. 보통 중산층 사람들이 자가용을 사서 운전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변호사인 휘은이 처음 차를 사서 운전한 때가 변호사 2년(1988년)이었다. 휘은의 기억으로 그 판사도 비슷한 시기에 운전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판사가 뜻밖의 말을 했다. “운전병이 유턴을 하려면 안쪽 차선인 1차선에서 해야지, 왜 바깥 차선인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왔다는 것이냐?” 이때 휘은의 나이 37살, 판사는 36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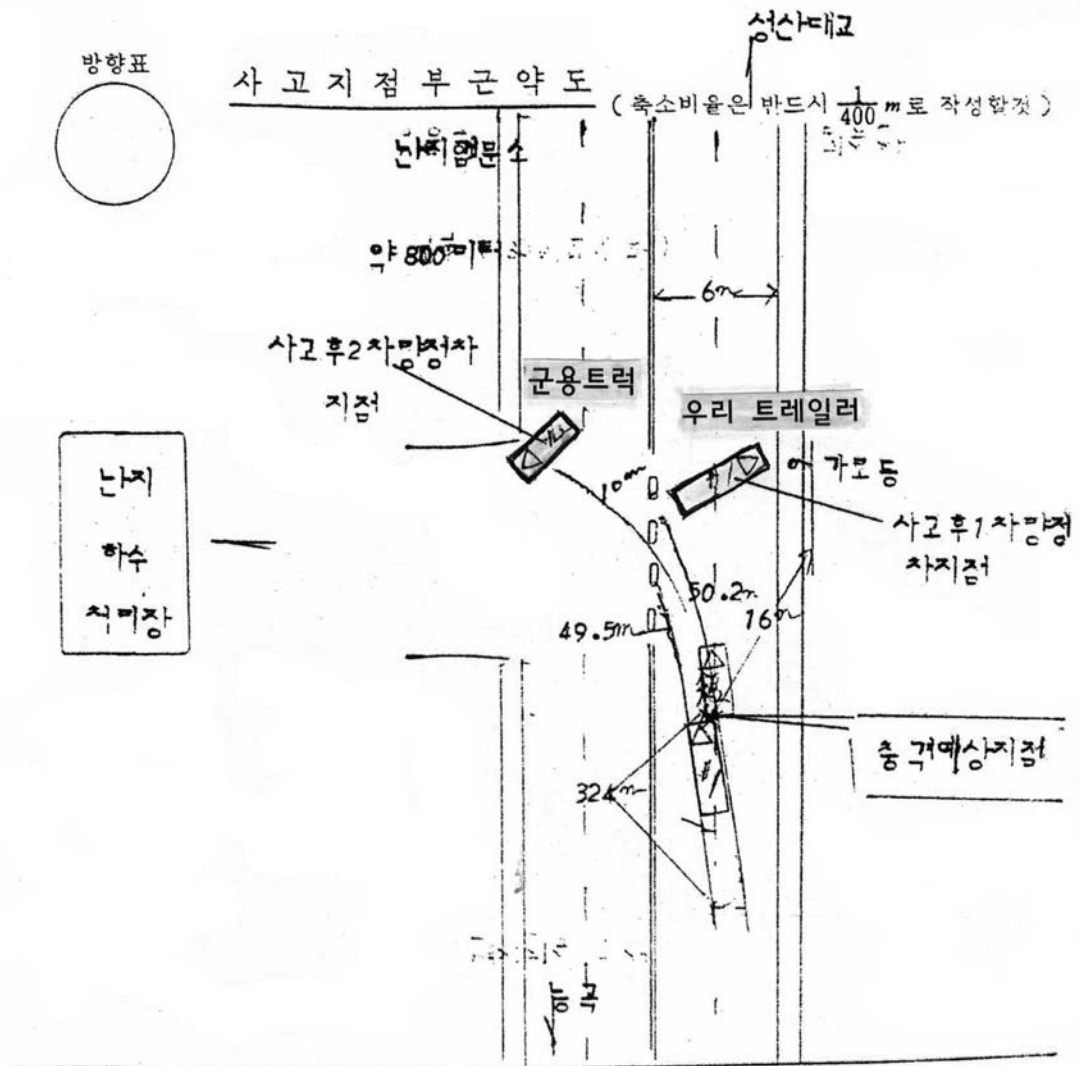
휘은은 놀랐다. 이 판사는 유턴을 하려면 차선이 여러 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유턴을 허용하고 있는 곳을 가만히 보면 왕복 4차선인 곳에 유턴을 허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 유턴은 기본적으로 왕복 6차선 이상인 곳에서 허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왕복 4차선인 곳에서도 허용을 한다.

그런데, 왕복 4차선인 곳에서 유턴을 하는 차는 보통 한 번에 돌지 못 하고, 원편으로 돌아서 간 후 한 번 후진하고, 다시 핸들을 틀어서 간다. 유턴은 차를 180도 돌리는 것이므로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이 편도 2차선으로는 부족하다. 편도 3차선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2차선의 길을 가던 군용트럭 운전병은 1차선에서는 유턴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던 길 2차선 밖 길가에서 차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면서 양쪽 차로에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하고, 양쪽 4차선을 이용하여 한 번에 유턴을 하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운전병은 2차선 밖에 차를 세우려고 하다가 백미러를 살펴보니 양쪽 차선에 차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실은 군용트럭 뒤를 따라오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던 피고인의 트레일러가 있었는데, 이 트레일러가 백미러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운전병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운전병은 양쪽 차로 모두 차가 없다고 판단하고 트럭을 세우지 않고 급히 길가에서 2차선, 1차선을 가로질러 유턴하러 들어간 것이다. 빨리 차가 오기 전

에 두 차선을 가로지르고, 중앙선을 넘어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트레일러에게 들이받힌 것이다.



휘은은 판사에게 이 사정을 설명하였지만, 판사는 휘은의 이 설명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했다. 2차선으로는 한 번에 유턴이 안 된다는 이 사정을 판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딪친 두 차가 서 있는 위치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휘은이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해도 도통 이해하는 기색이 안 보였다.

형사판사들은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시한다. 사고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판사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 올 것을 바란다. 이 사건 판사도 빨리 합의해 오기를 바랬다.

그러나, 죽은 병사의 부모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며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었다. 합의가 안 되어, 휘은은 보석을 신청하지도 못 했다.

1993. 8. 19. 1차 공판이 열렸고, 일단 재판이 끝나서, 판결 선고날짜가 9월 2일로 잡혔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휘은은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고, 죽은 병사의 어머니와 군용트럭의 운전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993. 9. 16. 다시 공판이 열렸다. 죽은 병사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휘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느냐고 물었더니,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했다.

휘은은 군용트럭의 운전병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곳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려고 급히 차선을 바꾸어 들어온 것이 아닌가 따지려고 하였는데, 운전병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운전병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거짓을 증언하기 싫어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판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판사는 그날 재판을 끝내고 10월 7일을 선고 날짜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선고 하루를 앞둔 전날인 10월 6일에 피고인의 가족은 죽은 병사 가족에게 35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1993. 10. 7. 판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석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풀려났다.

그러나, 휘은은 피고인이 두 달 반 가량 구속되어 고생하고, 35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을 안타까워한다. 반면에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운전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부정이다.

사실은 병사를 죽게 한 자는 군용트럭 운전병인 것인데, 그 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갑자기 머리를 박으며 들어오는 군용트럭을 피하지 못 한 피고인만 잡혀 들어가 고생하고 돈까지 들인 것이다. 이것은 부정이고, 판사의 경험부족으로 벌어진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3. 빨간 불에 횡단보도에 들어온 피해자를 친 것이 무죄 아닌가?

2016년(변호사 30년) 8월에 의정부 대원여객 버스운전사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36살의 피고인이 아는 사람 소개로 휘은을 찾

아왔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이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은 경기 74아2877호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5. 8. 26.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51에 있는 해밀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연평리 쪽에서 경북대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아무개(58세)를 위 버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성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망상, 부적절한 언행, 현실 판단력 저하, 불면 등의 증상 등이 남아 있는 기질성 정신장애 등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한 마디로 삼거리에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지켜서 버스를 운전하여 가는데, 그곳 횡단보도가 빨간 불인데도 피해자가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버스에 치어서 전치 12주 이상의 상처를 입고, 난치병 증세를 얻게 되었으니, 그런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를 징역형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사고의 처벌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이다. 금고는 쉽게 말해서 강제노동 없는 징역이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에게 금고라고 하면 알아듣지를 못 한다. 이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무심하게 만든 것이다. 금고라고 하지 말고, “노동 없는 징역”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 글을 법조인들이 읽는 것이기는 하나, 휘은은 보통사람들의 감각으로 징역과 금고를 섞어 쓰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청에는 형사조정위원회가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하여 타협하기를 권하여, 중재한 결과 타협에 이르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휘은은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제도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에 형사재판 제도를 두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나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가 되면 기소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돈이 없어서 타협에 이르지 않으면 기소하여 처벌 받게 하겠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아가 더욱 한심한 것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보통 사람들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 타협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나는 무죄라고 확신하는데, 조정위원은 혹시나 유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주고 타협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라는 사람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경우가 된다. 이걸 정말 아니다.

이런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휘은은 아직 그런 제도가 딱 나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 했다. 휘은은 32년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매번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판사에게는 두 가지밖에 안 보인다. 그것은 첫째는 결과이고, 둘째는 합의했는가 안 했는가이다.”

첫째는, 피고인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피해자에게 남은 상처가 가볍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별로 없다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가볍고, 거꾸로 별로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남에게 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다. 피고인이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피해가 크다고 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둘째는 더욱 정의가 아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을 안 하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합의가 안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형사재판의 형량과 집행유예를 붙여 석방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따라 결정될 일이지, 일을 저지른 후에 돈을 주고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면 풀어

주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선고하여 징역을 살리는 부당한 일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랜 관행이다.

휘은은 이런 관행이 생긴 이유가 우리나라 판사들의 유약함, 무소신, 무분별한 봐주자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판사를 했던 사람이 변호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법조계에는 지연, 학연 따위의 인연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영악한 사람들은 형사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맡긴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자기 사건을 맡은 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판사로 일하던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맡기고, 판사와 같은 법대 동기동창인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맡기는 것이다. 판사도 사람이고, 인정이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함께 같은 법원에서 같이 일하던 판사로서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회식을 하던 사람이라면, 대학시절에 함께 같은 반에서 공부하며 함께 웃고 떠들었던 사이라면, 판사는 그런 변호사가 들고 오는 사건을 잘 봐주려고 한다.

그런 사건을 법대로 칼같이 판결하는 사람은 인정이 없는 매정한 사람으로 상종 못할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심이다. 말로는 법대로, 기준대로 판결한다고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다. 봐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만든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휘은은 생각한다.

그래서, 휘은은 하루라도 판사를 한 사람은 변호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더 어려운 일일지는 모르나, 판사와 변호사가 학연 또는 다른 이유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경우에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많은 판사들이 피고인을 봐주려고 한다. 봐준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징역 살아야 할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석방하는 방법은 징역 보낼 것을 벌금형으로 바꾸거나, 집행유예를 붙여서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나쁜 짓을 한 피고인을 풀어줄 때 그 나쁜 짓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반발할 수가 있다. 왜 저런 나쁜 인간을 풀어주느냐? 이렇게 반발하며, 더 나아가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풀어주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누군가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이런 반발과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 판사는 변호사에게 피해자와 합의해 오라고 하는 것이다. 합의만 되면 석방해 주어도 아무런 반발이 없으니, 봐주려면 합의가 꼭 필

요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형을 정할 때 합의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되었다. 휘은은 이것이 결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검찰까지 나서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합의해서 형사사건을 해결하라고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어쨌든 버스운전자가 좌회전 신호를 따라 가다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들어온 행인을 치어서 다치게 한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의 조정위원회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8백만원을 물어주고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피고인 운전사는 8백만원을 내놓을 형편도 안 되었고, 돈이 아깝기도 해서, 그 권고를 따르지 않고, 1백만원만을 공탁하자, 검사는 운전사에게 금고형에 처해 달라고 불구속 기소했다.

휘은은 이 사건이 무죄라고 확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하는 약식기소가 아니고, 징역(금고)형에 처해 달라고 정식기소를 한 검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휘은은 안다. 왜 우리나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어려운가?

첫째는 우리 검사가 기소에 매우 신중하다는 사실이다. 검사는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잘 기소하지 않는다.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기소하여 처벌하여 마땅한 나쁜 인간들을 처벌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로, 우리 판사들이 대부분 사회경험이 거의 없이, 공부 잘 해서 판사가 된 사람들인데, 나이도 젊어서, 검사가 내놓는 증거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검사가 어렵히 잘 수사했겠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우리 판사들은 피해자의 진술은 철석같이 믿고,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 발뺌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런 사정을 아는 휘은은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변호에 나섰다.

휘은은 우선 판례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찾았다.

(1)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

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 2671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1990.1.23. 선고 89도1395 판결, 1989.2.28. 선고 88도1689 판결)

(2)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 38767 판결)

(3)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4) 반대방향에서 불법주차된 트럭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 39158 판결)

(5)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승용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4도548 판결)

(6)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7)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5도382 판결)

(8)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지만 교행하기에 충분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

(9)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934 판결)

(10) 1차선에는 화물차, 2차선에는 승용차가 운행하였는데, 1차선에 있던 화물차가 깜박이를 켜지 않은 채로 우회전하다가 2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경우에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746 판결)

(11)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던 행인끼리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막 출발하려는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버스운전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행인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동인의 머리가 위 버스 뒷바퀴에 들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대법원 1986.8.19. 선고 86도1123 판결)

(12)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583 판결)

(13) 내리막길이고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운전트럭과 그 우측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고 선행하여 가던 피고인의 운전트럭을 바짝 붙어 따라가다가 위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후방주시까지 하여 뒤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든가 나아가 선행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1.21. 선고 85도1959 판결)

(14)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95 판결)

(15) 비가 와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심야에 왕복 8차로 도로, 그것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 죽하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광주지법 2004. 4. 14. 선고 2004고단601 판결)

그리고, 2016년에 하급심 법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버스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횡단보도에 뛰어든 보행자를 친 경우에, 보행신호가 바뀐 뒤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사람은 다른 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법하게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혀 온 경우에, 그 운전자는 그런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막을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 비록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어도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1) 사고가 난 곳은 "ㄱ" 자 쪼의 교차로인데, 피고인은 좌회전신호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고, 피해자는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들어와 횡단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왼편 앞부분에 부딪쳤다.

(2) 사고 당시는 밤 10시50분이었다.

(3) 사고 당시에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4) 사고 지점에 가로등은 있었지만 어두운 상황이었다.

(5)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들어와서 횡단보도의 절반 이상을 걸어와서 피고인의 버스에 부딪혔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조사하여 기록하지만 보행자의 음주여부는 조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9쪽)에는 보행자 음주여부가 확인불가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난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니 피해자의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차가 많이 오가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횡단보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술을 마셔서 정신이 혼미하여 정신없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에 들어온 것이다.

(6) 사고 당시에 보슬비 때문에 피고인의 버스의 와이퍼가 작동하고 있었다.

(7) 피해자가 부딪힌 차 부분은 왼편 앞부분인데, 이곳은 버스의 귀퉁이로서 차 프레임이 있고, 커다란 후사경(백미러)이 있어서 운전자가 그곳을 관찰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역시 사각지대이다.

(8) 피고인의 버스가 좌회전하기 직전에 왼편에서 버스 한 대가 우회전하여 피고의 버스 옆을 지나갔다. 그 버스 때문에 피고인은 왼편의 시야가 가렸다. 피해자는 그 버스가 지나간 후에 피고인의 버스에 부딪쳐 왔다.

2016년 9월 23일에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뜻밖의 말을 했다. “피고인 이 사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이 얼마요?”

“백만원입니다.”

“그게 적당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피고인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소?”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몇 백만원의 돈이 들 터인데, 그 돈을 변호사 선임하는데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판사가 사정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 운전자는 대원여객주식회사에서 버스를 운전하였다. 대원여객은 운전사들에게 복지를 잘 해 주는 회사로 이름 높아서 많은 운전사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모든 운전사들에게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 보험에는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변호사비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그 벌금까지도 보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휘은은 보험회사에서 변호비를 받기로 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이 돈을 피해자에게 공탁할 수는 없다.

휘은은 판사의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그 사정을 알렸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데,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변호사비가 나온다고, 본인은 보험회사에서 변호비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자, 판사는 머쓱해 하며, “아! 그래요?” 했다.

그리고, 판사는 블랙박스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검사가 낸 공소장에는 분명히 피해자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들어왔으며,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지켜서 가다가 사고가 났음이 밝혀져 있고,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판사는 버스에 달린 블랙박스를 보고 정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0월5일 2차 공판 때에 휘은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디스크를 법정에서 제출하여, 판사는 그 디스크를 법정에서 틀어서, 버스 앞쪽에 있는 신호등이 붉은 빛이었다가 파란 빛으로 바뀐 후에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판사는 2차공판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1일을 판결선고 날로 지정했다. 변론을 마칠 때, 검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재판이 끝나서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16일의 기간이 있었다. 휘은은 그 사이에 피고인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했다. 휘은은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무죄가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보인 태도는 유죄라는 것이었다. 이거 대단히 불안한 일이었다.

휘은과 피고인은 오래 상의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백만원을 더 공탁하였다. 혹시 판사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겨우 백만원을 공탁하였다고 꽤심하다고 하여 법정구속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피해보자는 생각이었다.

10월 21일 오후 2시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사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언하고, 아무리 기록을 다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법조인이 듣기에 이상하지 않으나, 보통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낮은 설명이다. 즉, 판사는 보통사람을 위하여, 이리이러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에게 잘못(과실)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매우 추상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아무런 잘못(과실)이 없는 가난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돈 3백만 원을,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들어와서 다친 피해자라는 사람에게 주도록 만들었으며, 가슴 졸이며 여러 달 동안 법정에서 서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피해를 입힌 것이다.

아마도 판사는 아무리 피고인이 잘못이 없다고 해도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는데, 3백만원 정도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휘은은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는 다른 범죄와 좀 다르다. 다른 사건 예를 들어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사건의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해 주는 좋은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종합보험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보장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재판을 걸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손해를 다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피해배상이 확보되어 있는데, 돈을 더 주고 합의하면 풀어주고, 돈이 아까워서 또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달라고 하는 돈을 안 주거나, 못 주어서 합의가 안 되면 징역을 살리겠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어떤 피해자는 이런 사정을 악용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달라고 떼를 쓴다. 피해자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작은 돈으로 만족하고 합의해 주면 풀려나고, 피해자가 모질어서 많은 돈을 달라고 하여 그 돈을 주지 못 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일인가? 판사 중에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어서 가해자가 별도로 돈을 더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다. 만일 그렇다면, 판사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 많이 완전하게 배상하도록 판결하면 된다.

형사판사와 민사판사가 다르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제도에 따르면 판사는 형사판사를 하다가 민사판사를 하고, 민사판사를 하다가 형사판사를 한다.

만일, 형사판사하다가 민사판결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민사판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생각하여 완전한 배상이 되도록 판결을 하면 된다.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판사가 왜 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이 안 되도록 판결을 한단 말인가? 완전한 배상이 되도록 판결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또 사람을 잡아넣겠다고 협박을 해서 가외 돈을 주도록 강요한단 말인가? 버스 운전사에게 3백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상당히 큰 돈이다.

이런 돈을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들어와서 부딪힌 사람에게 잘못이 없는 버스운전사가 왜 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완전한 배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다.

보험회사는 변호사비를 한 번만 보상한다고 하여, 피고인은 휘은에게 항소심을 맡기지 않았다. 아마 국선변호로 재판을 진행한 것 같다. 그리고, 휘은은 항소심 재판결과를 모른다.

그리고, 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어떤 배상을 받았는지 휘은은 모른다. 그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잘못하여 일어났으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치

료비를 포함하여 아무런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할 잘못(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민사상의 잘못이라는 것이 달라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잘못이 매우 커도 치료비는 무조건 다 내주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다른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좀더 복잡해서 머리가 아픈 일인데, 그건 휘은이 모르는 일이니,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함혜란

국선전담변호사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맡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록 봉투에 적혀있는 죄명은 특수존속상해였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죄명은 아니기에 약간의 긴장과 함께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남성이었는데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어머니와의 말다툼이 있던 후 부엌에 있는 부엌칼로 모의 팔을 찔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부엌칼로 어머니를 찌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고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우선 피고인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데리고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은 자신이 어머니를 찌른 것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인 성인 정도의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은 어릴 적 백혈병을 앓아 50여 일 정도 의식불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간질, 뇌병변장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적 연령은 성인이지만 정신적 연령은 사실상 6~8세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다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입원되어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 피고인이 현재도 입원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주 면회를 온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사무실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아픈 아이이지 나쁜 아이가 아니라며 제발 아들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정신병원으로 피고인의 면회를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낯선 사람과는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곤란한 질문을 물어보면 다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제대로 된 면담을 진행하려면 보호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피고인의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는 수 없이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이 입원중인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사건 내용을 묻고 확인할 때 피고인이 흥분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긴장한 상태로 병원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면회실로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를 보자마자 “엄마~” 하면서 아이처럼 어머니의 손을 잡더니 “스케치북이랑 과자 사왔어?”라고 물었습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영락없는 8살짜리 꼬마였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앞에 앉은 저를 소개했고, 비교적 부드러운 어투로 어머니를 다치게 한 일이 기억나는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세한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하였고, 어머니가 “그 때 엄마 다치게 한 것 기억나지”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하여 받아야하는 형사재판과 형사처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피고인에게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와야 하는 이유, 재판을 받을 때 판사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듣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는 등의 재판절차를 설명하고 돌아왔습니다.

공판 당일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아 떠엄떠엄 겨우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맞느냐는 재판장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였으나,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처럼 피고인석의 의자를 계속 돌리거나 마이크에 올리는 소리가 신기한지 연신 마이크에 바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6~8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이고 이 사건 당시에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를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강력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현재도 피고인의 보호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이례적이지만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선고를 들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후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선고형의 의미와 항소절차 등을 재차 설명해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고 아들이 감옥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피고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피고인. 지금도 심신미약을 주장할만한 정신질환을 가진 피고인들을 만나거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 사건들을 접할 때면 위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리 비극일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나부터



변호사 장소현

재판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아 하루하루 고군분투를 하던 어느 날, 국민참여재판 도장이 찍힌 기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여 고양지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하게 되는 국민참여재판이어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건 기록을 들추어보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의 기록은 두껍지 않아 순식간에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 기록만 보고 느낀 점은 충분히 피해자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CCTV나 당사자 간에 오간 대화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피해자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과의 만남 이전에 주변 변호사님들 및 지인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면서, 과연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다시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곧장 면담시간을 잡아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매우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누차 얘기하였지만, 말이 안 된다며 자신의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면담도중 언성을 높여가며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으며 중간 중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의 흐름으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기록만 보면서는 혹시 이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면담을 하고나니 이 사람이 무고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견해만 완강하게 피력하는 피고인을 보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때 피고인신문이 제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본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 개찰구를 들어가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돌아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까이하면서 입맞춤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증거는 사건 직후 신고를 한 피해자의 진술과 지하철 역사 내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개찰구를 지나가려는 차에 피해자가 앞에서 뒤돌아서며 자신과 가까워져서 자신의 평소 습관대로 혀를 차는 소리를 낸 것뿐이지, 쪽 하는 소리로 입맞춤을 하려는 소리를 낸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CCTV 영상으로는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 쪽으로 살짝 돌려지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려고 하였다는 식의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60대의 아저씨였고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직후에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따지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선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추측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이 조금 기울어 있는 듯한 피고인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제쳐두고, 우선 주어진 사실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피고인은 입맞춤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개찰구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맞닿게 되어서 혀를 차는 소리를 낸 것 뿐이라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워져서 습관대로 소리를 낸 것이었다면, 입맞춤 하려는 목적,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미수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접하게 된다는 부담감과 행여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라는 염려를 가지고 재판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부담감은 생각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일반재판절차에서도 당황하기 일쑤인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실수하면 재판 결과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담감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재판 당일까지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모든 것이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두려움과 부담감을 안고 시작한 재판은 배테랑인 검사님을 좇아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선적으로 성범죄의 특성상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할 수 있다는 점과 당시 피고인에게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변론해 나갔습니다. 기습추행이 인정된 판례들도 있지만, 그와 이 사건의 차이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은 무사히 진행이 되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변론을 함으로써 재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식이 날로 엄격해져 가고, 배심원들의 연령대도 다양하여 배심원 평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배심원들이 피고인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느낌이 막연하게 들었기에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검찰 구형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사히 재판이 끝난 것만으로도 안도하면서 판결 선고를 기다리다가, 선고 시간이 되어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피고인이 무고한 사람인지에 대해 확신은 없었던 터라 재판정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선고를 받기 위해 재판정에 들어가는데 배심원 분들이 눈을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죄에다가 형이 세게 나오려나..’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변호인’ 팻말 쪽으로 눈을 아래로 돌리고 있을 때, 재판장님이 선고를 시작하였습니다.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입 사이로 웃음이 피식피식 흘러나오는 것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의 기쁨이 더 큰 법이듯, 마음에 벽참이 몰려왔습니다. 애써 표정관리를 하면서 재판정에 나와 배심원들과 피고인에게 수고했다는 인사와 함께 법정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의 벽참과 묘한 기분이 교차했습니다. 무죄 선고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변호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록과 경험칙에 비추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유죄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피고인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만으로 피고인의 전체적인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록과 피고인과의 대화로 느끼게 된 인상만으로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혹시나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특히 배심원들에게 강조하였던 무죄추정의 원칙이 오히려 배심원들에게는 잘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써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원칙 중의 원칙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되며 오는 안이함이나 생각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여 마주하게 되는 사건 진행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잊지 못할 경험이자 많은 걸 가르쳐 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019

경기북부법조
통권 제8호

논문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피체포자의 휴대전화 압수와 그 내용확인의 적법성

the Requirements for the Searching of Digital Information on a Cell Phone Seized from an Arrestee



최 대 호*
Choi, Dae-Ho

1. 들어가는 말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의 내부에는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 E-mail, 웹 히스토리, 위치정보가 기록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문서 파일, 사진 또는 동영상, 오디오 파일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다양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¹⁾ 이처럼 휴대전화는 통신과 이동성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현대인의 개인생활, 직업 활동 등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즉 휴대전화의 1차적 기능은 통신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휴대전화에 남겨진 통화상대방, 통화시간 등이 저장된 통화목록, 문자

* 대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1) 그밖에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서파일,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백업파일 등이 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개인의 수많은 다양한 사생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최우용·은성경, “스마트폰 포렌식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제28권 제3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2-3면)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2차적 기능인 컴퓨터 용도로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신용카드 기능이 내장된 경우 카드결제 시간 및 내용,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털인터넷 서비스에 기억된 검색어 등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²⁾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휴대전화 내부에는 다른 전자기기의 내부정보에 비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체포된 범죄와 관계없는 별건의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우연히 발견될 경우 증거인멸 등에 대한 염려 없이 언제든지 별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국내의 학계 및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통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³⁾ 그 주된 내용은 휴대전화를 정보저장매체의 일종으로 설정하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탐색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이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는 디지털증거분석과정으로서 압수된 저장매체의 봉인을 해제할 때에 피압수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이는 영장집행에 따른 참여가 아니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거나,⁴⁾ 압수·수색의 대상을 저장매체가 아니라 디지털정보라고 하면서 이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관련 디지털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디지털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⁵⁾

2) 이혼재, “휴대전화 압수·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730호), 법조협회, 2018. 8, 118-119면 참조.

3) 이와 관련된 국내논문으로는,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25권 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이종근,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휴대폰의 수색과 영장주의: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33권 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원혜옥,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압수·수색-”, 형사판례연구(제22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4 등이 있다.

4)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법조(제670호), 법조협회, 2012. 7, 254- 273면.

5)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헌법학연구(제18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2012. 3.), 22· 33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1190 결정 등. 그 결과 압수·수색집행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준수되어야 할 ①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②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금지, ③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디지털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공통된 운영체제(OS)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제조사마다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압수자가 어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하게 될 휴대전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구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또한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하는 경우,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으며, 전자파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기록저장매체인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다른 매체에 복제·이전하기가 매우 어렵다.⁶⁾

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포 시에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Riley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서 수집·보전하는 데 있어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관련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 Riley 판결

1. 사실개요

Riley 판결⁷⁾은 휴대전화의 수색에 관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사건과 휴대전화(폴더) 수색에 관한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사건을 병합·심리한 것으로서 각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2009년 8월 자동차 등록이 실효된 자동차를 운전한 교통법규위반으로 경찰관에 의해 정차명령을 받은 Riley는 자동차 내부에서 총기가 발견되어 총기은닉·소지죄로 체포되었다. 체포당시에 Riley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스마트폰)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체포한 후 2시간이 경과하여 경찰서 안에서 수사관이 휴대전화의 내용을 망라적으로 확인한 결과, 말다툼 동영상, 이전의 총격사건

6)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7) Riley v. California 134 S. Ct. 2473(2014).

에 관여한 의심이 있는 차량 앞에서 촬영한 Riley의 사진 등을 발견하였다. 그 후 Riley는 총기사건에서 총기를 사용한 폭행사실로 기소되었다. Riley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관련증거의 배제를 주장하였다.

사실심은 그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은 캘리포니아州的 판례⁸⁾를 인용하여, 사실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캘리포니아 州대법원 역시 Riley 측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Riley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⁹⁾

- (2) Wurie는 2007년 9월 자동차에서 약물을 거래하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경찰서에서 소지하고 있었던 휴대전화(폴더폰)를 압수당하였다. 그 휴대전화의 화면에 ‘집(my house)’이라고 표시된 번호로부터 착신이 반복되고 있음을 느낀 수사관은 휴대전화를 열어 전화기록에 접근하여 그 전화번호를 특정하였다. 온라인 전화부를 이용하여 이 번호에 대응하는 주소를 알아내어 현지로 갔는데 그 우편함에 Wurie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창 너머로 보인 여성이 휴대전화 안에 보존되어 있는 사진의 여성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그 집을 수색하였다. 그 결과 약물, 총기, 탄약 등이 발견되어 약물과 총기소지 등에 관한 죄로 소추되었다.

Wurie는 자택수색으로부터 얻은 증거가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수색에 따른 결실이라는 이유로 증거배제를 신청하였지만, 매사추세츠(Massachusetts)州 지방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Wurie는 262개월의 자유형을 선고받았다.¹⁰⁾ 제1순회구 미국항소법원은 내장된 개인의 정보가 다량이고 법집행에 미치는 위협이 사소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체포에 수반된 무영장 수색이 허용되는 다른 유형물과는 구별된다고 하여, 증거배제의 신청을 기각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유지판결의 일부를 취소하였다.¹¹⁾ 이에 검찰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8) People v. Diaz, 244 P. 3d 501(2001).

9) People v. Reley, 2013 WL 475242(Cal. Ct. App. Feb. 8, 2013)

10) United States v. Wurie, 612 F. Supp. 2d 104(D. Mass. 2009).

11) United States v. Wurie, 728 F. 3d 1(1st Cir, 2013).

2. 판결요지

연방대법원의 법정의견은 수사기관이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 없이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의 수색에 대한 영장주의 적법성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제약 정도와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한 후, 체포에 수반한 무영장수색과 관련된 다음 세 가지의 선례와 비교하고 있다.

(1) 합리적인 수색과 체포에 수반된 무영장 수색

수정헌법 제4조는 수색의 합리성을 요청하고 있고, 이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이 영장이다. 다른 한편, 원칙적으로 불합리한 수색인 무영장 수색도 특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합리적인 수색으로 보고, 그 하나의 유형으로서 ‘체포에 수반된 수색’이 있다.¹²⁾ 체포에 수반된 수색은 예외라고 부르기에는 맞지 않을 정도로 영장에 의한 수색보다 매우 자주 행해지고, 1세기에 걸쳐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 하에서 허용되는 수색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논의대상이었다. 이에 관하여 다음 3가지의 선례가 규칙(rule)을 형성하고 있다.

가. Chimel 판결

자택 내부에서 체포된 경우 자택 전체가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 Chimel 판결(1969년)¹³⁾은 체포에 수반된 무영장 수색이 체포집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피체포자에 의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화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허용된 수색의 범위는 피체포자의 신체와 흉기 및 인멸될 수 있는 증거를 취거할 수 있는 ‘직접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within the mediate control of the person arrested)’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정의견에 의하면, 체포집행자의 안전 확보에 관하여 휴대전화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체포집행자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체포집행자로부터 도주하기 위한 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의 케이스 등에 대하여 흉기 유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휴대전화 내부의 정

12) *Week v. US*, 232 U.S. 383, 392(1914).

13) *United States v. Robinson*, 414 U.S. 218(1973).

보를 수색하는 것까지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다.⁶⁾

나. Robinson 판결

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으로 체포된 경우 의복을 두드리면서 흉기소지 유무를 조사하는 신체검사(patdown search)를 통해, 코트 주머니 안에서 감지된 담배 갑을 끄집어내고 그 담배 갑 안에서 헤로인 캡슐 14개를 발견한 사안을 다룬 Robinson 판결¹⁴⁾은 Chimel 판결의 법리를 피체포자의 안전확보와 증거발견이라고 하면서도 그 정당성을 체포 시의 흉기 및 증거를 발견할 개연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대신 수정헌법 제4조 하에서 상당한 이유에 따른 체포에 수반된 수색이라고 한다면 추가적 정당화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명확하고 유형적인 접근 방법을 채용하였다. 또한 신체수색과 그 결과 발견된 담배갑의 내용확인을 일련의 수색으로 취급하고 담배갑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추가적인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다. Gant 판결

나아가 면허정지 중 운전을 이유로 체포된 자의 차량을 수색한 사안을 다룬 Gant 판결은 Robinson 판결¹⁵⁾과 마찬가지로 Chimel 판결이 제시한 체포자의 안전확보와 증거보전을 체포에 수반된 수색의 전제로 하면서, 피체포자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지 않고 또 수색 시 자동차 내부의 좌석부분(passenger compartment)과 가까운 범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별개로 동 판결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자동차 내부에 있다고 믿는데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체포 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 방법은 Chimel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동차 특유의 사정 즉 가동성 및 공공도로의 주행에 따른 사생활 보호의 기대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2) ‘체포에 수반된 무영장 수색’ 법리의 적용

휴대전화의 경우 ‘체포에 수반된 무영장 수색’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

14) Chimel v. California, 395 U.S. 752(1969).

15) Arizona V. Gant, 556 U.S. 332(2009).

제된다. 휴대전화는 Chimel 판결 및 Robinson 판결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적 산물이다. 헌법을 기초한 당시부터 영장이 면제된 예외적인 수색인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지침은 없다. 이 문제는 수색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와 체포자의 안전 확보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익형량의 결과가 Robinson 판결에 있어서 예외적인 영장 없는 수색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본 사건에서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Robinson 판결의 법리가 제시한 유형적 규칙은 유체물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는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색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 체포자의 안전확보

휴대전화 내부의 디지털 정보가 경찰관을 상해한다거나, 피체포자의 도망을 실현시키는 흥기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휴대전화가 흥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칼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외표부분을 조사하면 충분하고, 이는 체포에 수반된 영장 없는 수색으로서 허용된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잠재적인 물리적 위협을 감소시키면 휴대전화 내부의 디지털 정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유체물은 Robinson 판결에서의 담배 갑 내부에 있는 내용물처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색이 그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조사할 경우 공범자가 체포현장으로 향하고 있는 등의 정보를 얻을 있고 이 경우 현장에 있는 경찰관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체포집행자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를 경험한 사례는 없다. 또한 Chimel 판결은 피체포자 자신의 가해방지를 영장 없는 수색의 정당화사유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화사유를 체포현장 밖에서의 가해방지를 근거로 할 경우 그 법리를 필요 없이 확장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 증거인멸 방지

수색영장을 받을 때까지 휴대전화를 압수·보전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피체포자 자신은 휴대전화 내부의 정보를 삭제할 수 없게 된다. 확실히 휴대전화 내부의 디지털 정보를 원격으로 제거한다거나 암호화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Chimel 판결에 있어서 ‘체포에 수반된 수색’은 피체포자 자신에 의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므로,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또는 전화의 안전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은 체포에 수반된 수색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이에 관한 실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휴대전화를 로그(log)하는 데 비밀장금장치가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로그(log)는 버튼 하나를 누르면 연결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아주 짧은 시간에 조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암호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휴대전화를 수색할 수 있는 예는 거의 없다. 더 나아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수색하더라도 원격 제거 및 비밀장금장치에 대응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스위치를 끈다든지, 전지를 제거한다든지 또는 휴대전화를 전파를 차단하는 알루미늄 포장지에 집어넣는다든지 등 수색 이외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다. 사생활 침해의 정도

Robinson 판결에서는 의복을 툭툭 치는 신체수색 및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담배갑 내용물의 검사는 신병구속에 비하여 사생활에 대한 사소한 추가적 침습에 불과하고, 이는 체포에 의해 피체포자의 사생활이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피체포자의 사생활 이익이 감소된다고 해서 수정헌법 제4조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즉 신병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모든 수색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사생활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하나의 사례가 바로 피체포자의 자택 전체에 대한 무영장 수색을 부정한 Chimel 판결이다.

검찰 측에서는 휴대전화 내부의 디지털 정보의 수색을 유체물의 수색과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승마와 달 여행을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무튼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은 있지만 그밖에 양자를 일괄적으로 취급할 이유는 없다. 휴대전화의 수색에 수반된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담배갑, 지갑 및 가방 등의 수색에 수반된 사생활 침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피체포자 호주머니의 내용물에 대한 수색은 그에 앞선 체포를 초월하는 실제적·추가적인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사고방법은 유체물의 경우에는 타당하더라도 이를 디지털 정보에 확장시킬 수는 없다.

휴대전화는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그 용량은 종래의 서류 및 사진으로 대치한다면 방대한 양에 상당하고, 가지고 운반할 수도

없는 정보의 양이다. 이러한 정보가 휴대전화에 집약되어 있고 그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재현시킬 수도 있다. 또한 한 종류의 정보이더라도 과거에 소급된 방대한 양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는 보급률이 높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의 보급률에 따라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견게 되어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소지가 일반화된 현재 휴대전화 내부의 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유체물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내부의 정보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유체물인 기록과 차이가 있다. 인터넷 기능을 구비한 휴대전화 안의 검색·열람 이력은 개인의 흥미·관심을 밝힐 수 있다. 많은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위치확인정보기능은 개인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휴대전화에서 이용자가 보고 있는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휴대전화 본체 내부가 아니라 원격 서버에 보존되어 있는 지도 모른다는 점은 여기에서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범위를 복잡하게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용기로 파악하여 그 내용물인 정보를 체포에 수반하여 수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휴대전화 내부의 정보 가운데 무엇이 휴대전화 본체에 보존되고, 무엇이 클라우드에 보존되어 있는지는 수사관은 물론 이용자 자신조차 알지 못한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수색은 피체포자의 '직접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을 초월하여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고, 문제된 사생활 보호의 이익은 Robinson 판결에서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훨씬 크게 된다.¹⁶⁾

라. 기타

검찰 측은 Gant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수사관이 '휴대전화 내부의 정보에서 체포 혐의가 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데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영장 수색을 허용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리는 '감소된 사생활 보호의 기대'와 '높아진 법집행의 필요성'이라는 자동차 수색의 특수한 사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

16) United States v. Wurie, 728 F. 3d 1(1st Cir, 2013).

고, 이러한 사정이 없는 휴대전화의 수색에는 적용할 수 없다. Gant 판결의 법리는 수색의 저지를 의도하였지만 휴대전화의 수색에서는 어떠한 범죄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Gant 판결의 법리는 수색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되지 않는다. 본 판결이 법 집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용이다. 본 판결에 의해 피체포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색은 일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내부의 정보를 수색하는 데 영장취득을 의무지우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사태의 예외로서 개별사안에서 영장 없는 수색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

3. 검토

본 판결은 과거 10년간 각 지방법원에서 판단이 나뉘고 있었던 체포 시 휴대전화에 대한 무영장 수색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디지털 정보의 특성에 주목하여 그 수색을 유체물에 대한 수색과 구별하고, 수색영장의 취득이라고 하는 기본입장에서 절차면의 보장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 본 판결이 사용한 합리성의 형량테스트는 체포영장에 수반된 무영장 수색에 관한 선례에서 일탈한 방법이고, 향후 사생활 보호를 끌어 올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¹⁷⁾ Chimel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수색이 ‘체포자의 안전’이나,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체포자의 사생활 보호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는 듯하면서도, 실제 많은 사례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체포자로부터 DNA 샘플 채취에 관한 2013년 *Maryland v. King* 판결,¹⁸⁾ 구금시설에서 새로운 피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2012년 *Florence v. Board of Chosen Freeholders* 판결,¹⁹⁾ 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사건이 사생활 보호로 그 결론을 전환한 점에 다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신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다면 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방대법관이 반사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17) Leading Case, 128 Harv. L. Rev. 251(2014).

18) 133 S. Ct. 1958(2013).

19) 132 S. Ct. 1510(2012).

사생활 보호의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판결은 휴대전화의 수색을 둘러싼 문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본 판결은 휴대전화의 수색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영장취득이라고 하는 절차적 요건을 확인한 것이다. 더구나 본 판결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본체에 대한 압수는 항상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도 효율화됨에 따라, 전자메일로 영장을 청구한다면 15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 사안이 '긴급 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휴대전화 내부의 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할 여지도 남아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사생활 보호의 관점보다 중요한 과제는 실제적 문제 즉 휴대전화 내부의 디지털 정보를 한계지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어디까지 수색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휴대전화 본체에 내장된 정보의 취급에 머무르지 않고, 클라우드에 보존된 정보에 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 이외의 디지털 정보 일반에 관한 지침도 필요할 것이다.

III.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내용확인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위에서 살펴본 Riley 판결에서는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후에 연행된 경찰서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사생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다량 저장된 휴대전화의 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Riley 판결을 다시 살펴보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물건'과 '정보저장매체'로 한정하고 있고(제219조 및 제106조)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며(제216조 제1항 2호), 또한 이와 더불어 압수물에 대하여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19조 및 제120조). 따라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내용확인은 체포·구속에 수반하여 취득한(제216조 제1항) 압수물에 대한 '필요한 처분(제219조 및 제120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 보면, Riley 판결은 압수물(휴대전화)에 대하여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제120조)’을 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실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탐색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고찰함과 더불어 Riley 판결의 취지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수사실무에 반영하여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필요한 처분’의 한계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과 ‘필요한 처분’의 관계

Riley 판결은 “압수물에 대한 내용확인”은 ‘체포집행자의 안전 확보’, ‘피체포자에 의한 증거인멸의 예방’ 등을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처분’의 취지가 제216조의 취지와 연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은 압수수색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처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의 목적을 전제로 하여 수사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특히 처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할 경우, ‘필요한 처분’의 의미는 제216조 제1항(체포현장에서)의 무영장 압수·수색·검증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2) 긴급처분설과 ‘필요한 처분’

첫째, 형소법 제216조의 취지를 Chimel 판결과 마찬가지로 ‘체포·구속하는 자의 안전 확보’와 ‘피체포자의 증거인멸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처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⁰⁾ 이에 따를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지금까지 긴급처분설의 입장에서는 압수된 증거물의 경우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압수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Riley 판결이 제시한 것처럼 압수된 증거물의 내용확인 역시 체포에 수반하는 압수의 취지와 합치하여 이해할 경우 제

20) 배종대 외 3인,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7, §16/37; 손동권·신이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7, 316-317면;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248면 등.

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는 체포집행자의 안전 확보와 피체포자에 의한 증거인멸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Riley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체포집행자의 안전 확보와 피체포자의 증거인멸을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자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희박할 것이다. 일단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문제도 발생하기 않으며 설령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파를 차단하는 상자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설명이 여기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0조의 처분을 집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할 가능성이 도출된다.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는 배경에는 Riley 판결의 법정의견이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양과 질’ 때문이다.

결국 긴급처분설의 입장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결여되고, 또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내부의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²¹⁾

따라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필요한 처분의 의미는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하고, 사후에 그 내용을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²²⁾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체포에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긴급한 상황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내부의 정보가 삭제될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처분설이 증거인멸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상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삭제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20조의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그

21) 이에 대하여 유체물은 압수시점에 일정한 정도로 한정되어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증거물로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2)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일시보전을 압수로서 허용하는 것이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3) 부수처분설과 ‘필요한 처분’

두 번째로 제216조의 취지는 체포현장에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포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다고 이해함과 동시에 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 경미한 비밀이나 소유권의 침해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자유권이 적법하게 침해된 경우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영장 없이 행해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²³⁾ 이에 따르면 압수물의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은 압수물로부터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120조의 처분을 집행할 필요성은 증거로서 정보를 취득한다는 관점에서 파악하게 된다.

이는 결국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의 ‘필요한 처분’과 그 성질이 같다. 즉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 내부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 행위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이 제120조 제2항 또는 압수의 본래적 효력으로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체포에 수반한 경우에도 제120조 제2항에 의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정보취득의 필요성보다 높다고 한다면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다만 긴급처분설의 입장과 달리 제120조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상,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정보취득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① 양자의 이익을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형량하여 비교할 것인지, ② 유형별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률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지,²⁴⁾ ③ 유형별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거나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점유가 박탈된 이상 사생활에 대한 제약을 부수적인 제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일률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방법은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휴대전화의 사용빈도 및 사용태양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형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적

2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292-293면.

24) 이 경우 앞에서 기술한 긴급처분설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형별로 판단하는 방법은 부수처분설이 명백한 규칙(bright line rule)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즉 부수처분설은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의 장소적 범위를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장소적 동일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긴급처분설에 비해 그 범위가 명확하고, 또 수사기관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유형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가 주거의 수색에 필적하는 정도로 사생활을 제약한다고 판단되면 일률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정책적으로 채용할 여지는 있다.

결국 부수처분설에 의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인정될 것이다. 다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그 내용확인 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영장 없이는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볼 여지는 있다.

3. 내용확인 과 사생활 보호

(1) 영장주의 의 유효성?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사생활 보호의 이익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은 체포에 수반하여 압수된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할 때 영장을 발부받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압수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형소법 하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영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Riley 판결과 동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즉 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영장체포를 두고 있으므로 체포영장의 심사를 통하여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담보되고 있다는 점, ② 미국에서는 경미사건에 대한 체포도 허용되기 때문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③ 미국에서는 영장을 심사할 때 그 소명이 우리나라보다 간단하고 쉽다는 점, ④ 미국에서는 체포현장 이외에서도 긴급상황에 따른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영장 없

이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²⁵⁾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Riley 판결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를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방대한 정보에 대한 수색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같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영장절차의 비용, 피체포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관의 필요한 정보취득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한 균형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른 규율도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대상을 특정할 때에는 압수하려고 하는 물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는 사전에 그 특징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그 특징을 엄격히 요구할 경우 그 특징을 피의자신문을 통하여 특정한 이후 대물적 강제처분을 실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수사의 방향을 왜곡시키게 된다. 따라서 그 특징을 일정 정도 개괄적·추상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전자기록매체 및 컴퓨터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고객명부가 입력되어 있는 CD-R’, ‘본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가 기록된 컴퓨터기기’ 등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개개의 유체물을 특정하더라도 그 유체물 안에 방대한 정보가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또한 체포에 수반하는 압수를 통해 취득한 휴대전화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검증대상을 휴대전화만을 기재한다면 결국 검증영장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입법을 통한 사생활 보호보다는 사법부의 영장주의를 통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디지털 정보의 수집과 더불어 사생활을 제약하는 경우 영장주의는 처분범위의 최소화, 처분대상의 특정, 영장심사를 통한 수사기관의 통제 등을 기대할 수 있다.²⁶⁾

25) 柳川重規「逮捕に伴う捜索・押収の法理と携帯電話内のデータの捜索—合衆国最高裁 Riley 判決の検討」法字新報121 券11=12 号(2015) 527頁 이하.

26) DANIEL J. SOLOVE, THE DIGITAL PERSON : TECHNOLOGY AND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219(2004).

또한 입법적 규율은 통제기준을 망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대응할 수 없고, 또한 반드시 사법적 판단보다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²⁷⁾ 이에 비해, 영장주의는 사후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정보제공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 등을 통하여 부족한 전문지식을 해결할 수 있다.²⁸⁾ 이처럼 영장주의에도 유용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영장주의에 입각한 규율방법으로서, 사생활을 과잉되게 제약함이 없이 피의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규율을 설정하면 좋은지를 검토 한다.

(2) 미국에서의 최소화 조치와 그 시사점

가. 규칙 41의 2단계과정의 최소화 조치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클라우드(Cloud)에 보존되어 있는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권리의익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수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²⁹⁾ 우선, 수사기간은 제공자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계정의 모든 기록을 복사하여 개시하도록 한 다음, 그 중에서 취득하고 싶은 정보를 선별한다(제1단계). 그리고 개시 후 2주 이내에 영장을 집행하여 취득대상인 정보만을 취득한다(제2단계). 그 결과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을 보존하게 된다.³⁰⁾

그러나 정보의 경우에는 파일명 등을 얼핏 살피고 그 정보가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파일명을 은어로 기재할 수 있다는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정보의 내용을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점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규칙 41은 이러한 관점에서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제1단계의 개시를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형식을 채택한 것으로 이

27) Daniel J. Solove, Fourth Amendment Codification and Professor Kerr's Misguided Call for Judicial Deference, 74 FORDHAM L. REV. 747, 761-771(2005).

28) Ibid., at 771-772.

29) FED. R. CRIM. P. 41 (e)(2)B.

30)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정보의 보관자 또는 이용권한을 가진 자에게 수사기관이 특정정보를 지시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라고 명령한 후 이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는 제출명령과 유사한 것으로, 피의자 등 당사자보다는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에 매우 유효한 제도이다.

해할 수 있다.³¹⁾

적어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정보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제1단계의 정보선별을 행하는 한, 사생활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휴대전화를 컴퓨터에 접속하여 특정 확장자 또는 특정 용어가 포함된 파일만을 골라낸 후 확인하게 한다든지,³²⁾ 이에 더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사된 전자기록매체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삭제하고 선별된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³³⁾

나. 영장에 대상기간·정보종류의 제한

이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수사기관이 취득할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Web메일에 보존된 전자메일, SNS 및 채팅로그 등을 취득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취득할 메일 등의 시간적 범위를 공모가 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2006년 6월 이후’라고 영장에 기재한 사례가 있다.³⁴⁾

Riley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과거에 소급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사생활을 과잉되게 제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Cloud)에 존재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적합하다. 이처럼 계정에 접근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과거에 대한 소급을 한정하는 취지에서 메일 등 취득대상에 그 기간을 특정·명시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행해질 수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취득대상기간의 특정에 더하여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즉 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SNS인 Facebook에서 취득대상인 정보를 개시할 경우 제3자가 대상계정으로 송신한 메시지, 대상계정이 태그화 된 사진·동영상 가운

31) 규칙 41의 제1단계 개시가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제약한다고 하여 2009에는 이 규칙 41을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FED. R. CRIM. P. 41 committee's notes to 2009 amendment, <http://www.gpo.gov/fdsys/pkg/USCODE-2011-title18/pdf/USCODE-2011-title18-app-federalru-dupl-rule41.pdf>.

32) Orin S. Kerr, Searches and Seizures in a Digital World, 119 HARV. L. REV. 531, 544-547(2005).

33) Note, Data Mining, Dog Sniffs, and The Fourth Amendment, 128 HARV. L. REV. 691, 708-712(2014). 또한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초기의 정보로서 무엇을 어디까지 수집하고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Predictive Coding에 의해 대상정보를 분별하는 경우에도 초기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과제가 있을 수 있다.

34) In re Target Email Accounts/Skype Accounts, 2013 U.S. Dist. LEXIS 123129(D. Kan, Aug. 27, 2013).

데 제3자가 찍힌 것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특징이 행해졌다.³⁵⁾ 왜냐하면 대상계정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영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³⁶⁾

이에 체포한 후에 휴대전화 내부의 앱(app)에서 관련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의 자신문 등을 통하여 대상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정을 파악할 수도 있다. 한편, 체포에 수반되지 않고 통상압수에 부수하는 처분인 경우는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범위 및 복제(제106조 제3항)와 관련될 수 있다.³⁷⁾ 그 기재는 서버와 관계된 서비스의 종류(메일서비스, 파일서비스의 구별 등), 접근을 위한 ID 등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더하여 앞에서 기술한 취득대상의 기간을 제한한다거나, 취득대상인 정보의 종류를 특정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포괄적 제약을 회피하는 유용할 것이다.

다. 필터링(filtering) 조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방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사건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담당수사기관과 더불어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은 사생활에 대한 과잉된 제약을 회피할 수 있다.³⁸⁾ 예를 들어 취득대상에서 변호인과 피고인 간에 송·수신된 메일을 제외시키기 위해, 필터링 에이전트(a filtering agent)를 붙인 사례가 있다.³⁹⁾ 영장발부판사는 영장에 필터링 절차를 기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필터링에 관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조건부 수색영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35) In re Search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Facebook Account Identified by the Username Aaron, Alexis, 21 F.Supp. 3d 1(D.D.C. 2013). 또한 Facebook에서는 사진 등을 투고할 때 피사체인 사람의 계정을 자동적으로 태그하게 된다.

36) 소명할 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할 예정인 keyword 및 해독용 소프트웨어를 명시할 것을 수사기관에게 요구한 사례로서 See, In re Search of Apple iPhone, 31 F.Supp. 3d 159(D.D.C. 2014).

37)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지 않은 휴대전화의 내용확인 및 복제되지 않은 내용확인의 경우 현행법 체제에서는 이하에서 제시하는 영장으로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접근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8) See, Orin S. Kerr, Ex Ante Regulation of Computer Search and Seizure, 96 VA. L. REV. 1241(2010).

39) See e.g., United States v. Bickle, No. 2 : 10-cr-00565-RLH-PAL, 2011 U.S. Dist.LEXIS 94921,at 59(D. Nev. July 21, 2011).

있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Microsoft 사가 수사기관에게 정보를 과잉되게 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필터링하는 에이전트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그 주체를 통신사업자로 한다면 사건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⁴⁰⁾ 또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가까운 자에게 필터링을 위임할수록 그 필터링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다.⁴¹⁾ 이러한 문제는 2단계 과정의 최소화 조치에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자동화시키는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타

사생활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일환으로서 내용이 수반되는 정보(메일 및 메시지 문장 등)와 내용이 수반되지 않는 정보(메시지 수신인 및 일시)를 구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4조 하에서 최소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대상이 아닌 후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수사기관에게 명령할 수 있는 ‘보존·이용기간의 상한’을 입법부가 설정함으로써 사생활에 대한 제약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⁴²⁾ 또한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대상인 정보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수사기관이 취득한 디지털 정보를 보존·이용하는 기간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⁴³⁾

이는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목적 외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적어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명확히 관계가 없는 정보인 경우에는 보존·이용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법관이 개별사안에 따라 보존·이용기간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보의 성질 및 목적에 따라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범죄사실의 입증과 관련된

40)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사례로는 *In re Search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mac.com*, 13 F. Supp. 3d 157(D. D. C. 2014).

41) 경찰 내부의 정보분석부서의 독립성을 높이고 그 부서가 필터링을 실시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적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가 과제로 남게 된다.

42) Orin S. Kerr, *The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Privacy Act*, 162 U. PA. L. REV. 373, 412-414(2014).

43) Reid Day, *Let the Magistrates Revolt : A Review of Search Warrant Applications for Electronic Information Possessed by Online Services*, 64 U. KAN. L. REV. 491, 524(2015), at 524-525.

정보의 보존·이용기한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IV. 나오는 말

우리나라 대법원은 컴퓨터를 압수한 사안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추출행위’ 역시 광범위하게 강제처분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영장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확인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영역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으로서 Riley 판결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iley 판결의 논리를 입각한다면 형소법 제216조의 취지는 ‘필요한 처분’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긴급처분설과 부수처분설 모두 체포에 수반하여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검증영장을 요구하는 논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장을 요구하더라도 사생활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방법과 대책이 요구되어, ① 2단계 과정을 바탕으로 한 최소화조치의 채용, ② 취득대상인 정보의 특정을 구체화, ③ 영장집행 시에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필터링하는 것, ④ 입법에 의한 정보의 보존·이용기간의 제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①과 ③의 경우는 수사기관 자신이 행하는 것보다도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자동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체포에 수반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①, ③ 및 ④ 모두 입법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영장에 의해 규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검증영장을 발부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배종대 외 3인,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7.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 손동권 · 신이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7.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25권 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최우용 · 은성경, “스마트폰 포렌식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제28권 제3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 이현재, “휴대전화 압수 · 수색관련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730호), 법조협회, 2018. 8.
- 이종근,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휴대폰의 수색과 영장주의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33권 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원혜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 수색 -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압수 · 수색-”, 형사판례연구(제22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4.
-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법조(제670호), 법조협회, 2012. 7.
-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헌법학연구(제18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2. 3.
- 柳川重規「逮捕に伴う捜索・押収の法理と携帯電話内のデータの捜索—合衆国最高裁Riley 判決の検討」法字新報121 券11=12号(2015).
- DANIEL J. SOLOVE, THE DIGITAL PERSON : TECHNOLOGY AND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219(2004).
- Daniel J. Solove, Fourth Amendment Codification and Professor Kerr's Misguided Call for Judicial Deference, 74 FORDHAM L. REV. 747,

761-771(2005).

In re Target Email Accounts/Skype Accounts, 2013 U.S. Dist. LEXIS 123129(D. Kan. Aug. 27, 2013).

In re Search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Facebook Account Identified by the Username Aaron, Alexis, 21 F.Supp. 3d 1(D.D.C. 2013).

In re Search of Apple iPhone, 31 F.Supp. 3d 159(D.D.C. 2014).

Leading Case, 128 Harv. L. Rev. 251(2014).

Orin S. Kerr, Searches and Seizures in a Digital World, 119 HARV. L. REV. 531, 544-547(2005).

Orin S. Kerr, The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Privacy Act, 162 U. PA. L. REV. 373, 412-414(2014).

Orin S. Kerr, Ex Ante Regulation of Computer Search and Seizure, 96 VA. L. REV. 1241(2010).

Reid Day, Let the Magistrates Revolt : A Review of Search Warrant Applications for Electronic Information Possessed by Online Services, 64 U. KAN. L. REV. 491, 524(2015).

Ryan Watzel, Riley's Implications for Fourth Amendment Protection in the Cloud, 124 YALE L. J. F. 73(201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Legal Measures to revitalize unification education

목 차

- I. 서설
 - II.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 III. 독일 정치교육 사례와 시사점
 - IV.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V. 결론
-



소성규***
Sung-Kyu SO

I. 서설

2015년 2월 통일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준비에 대한 인식과 통일교육 실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¹⁾, 공직자의 절반정도가 재직 중 단 한 번도 통일에 관한 교육이나 강의를 들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이러한 조사결과와 그동안의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시행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였고, 2018년 9월 14일부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 이 논문은 소성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7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 6, 81-117면에 게재된 것을 기초로 한다. 다만, 2018년 3월 13일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되고, 이 법의 개정으로 2018년 9월 14일 부터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논문을 수정·가필한 것임을 밝힌다.

*** 대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1)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7. 2. 참조.

2) 【통일부 주관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2015.2)】에 의하면, 전체 공직자 중 통일교육을 받아본 비율은 54.1% 수준이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47.7%만이 통일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 통일교육은 의무화되었다. 마치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가정폭력 예방교육처럼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는 통일교육이 의무화된 것이다. 매년(1.1-12.31)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통일교육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이 연구는 시작한다. 현행 통일교육의 근거법령인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하여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하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고,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일각에서는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을 동일시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은 차이가 있다.³⁾ 교육방법에서 안보교육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통일교육은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의 평화 공존 방안 등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없는 통일교육이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통일교육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⁴⁾ 통일교육은 통일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통일의 방법에 따른 개별적 통일교육 논의 보다는 통일 이전 단계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논의로 한정하고자 한다. 특히 통일교육에 관한 논의 가운데 공공기관 내지 공적영역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주로 정치학 내지 교육학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통일교육에 관한 법제도적 관점에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⁵⁾ 이 연구는 공적 영역에서의 우리나라

3) 소성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7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 6. 82면.

4) 소성규,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활동상황 및 법정책 제언”,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 회(사회문화분과)·통일교육원 주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 2016. 6. 17, 16면.

5) 통일교육지원법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는 김용재, “통일교육의 발전방향: 통일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 5, 2000. ; 김창환, “통일교육지원법 개선방안 연구”, 「통일교육연구」, Vol. 3, 2003. ; 김종세, “인터넷을 통한 남북통일교육에 대한 소고 -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 조선대 「법학논총」 제16집 제1호, 2009.

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⁶⁾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1.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 내지 법적 체계로는 헌법, 통일교육지원법, 평화·통일교육-방향과 관점(구 통일교육지침)⁷⁾ 등이 있다. 헌법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을 적시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라고 하고 있다.⁸⁾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방향을 정치적 중립성, 평생교육 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제66조와 제69조는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92조에서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의 근거를 두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1999년 8월 6일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삭제),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6) 이 논문 연구자는 2012년 2월 1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2015년까지는 경기도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2016년 경기도 통일교육센터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으로 분리되면서, 2018년 현재는 경기북부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의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특정지역의 통일교육 실무경험만을 근거로 논하는 한계는 있을 수 있다

7)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교육 지침이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으로 변화되었다. 변화된 통일교육 관점에 대한 비교는 후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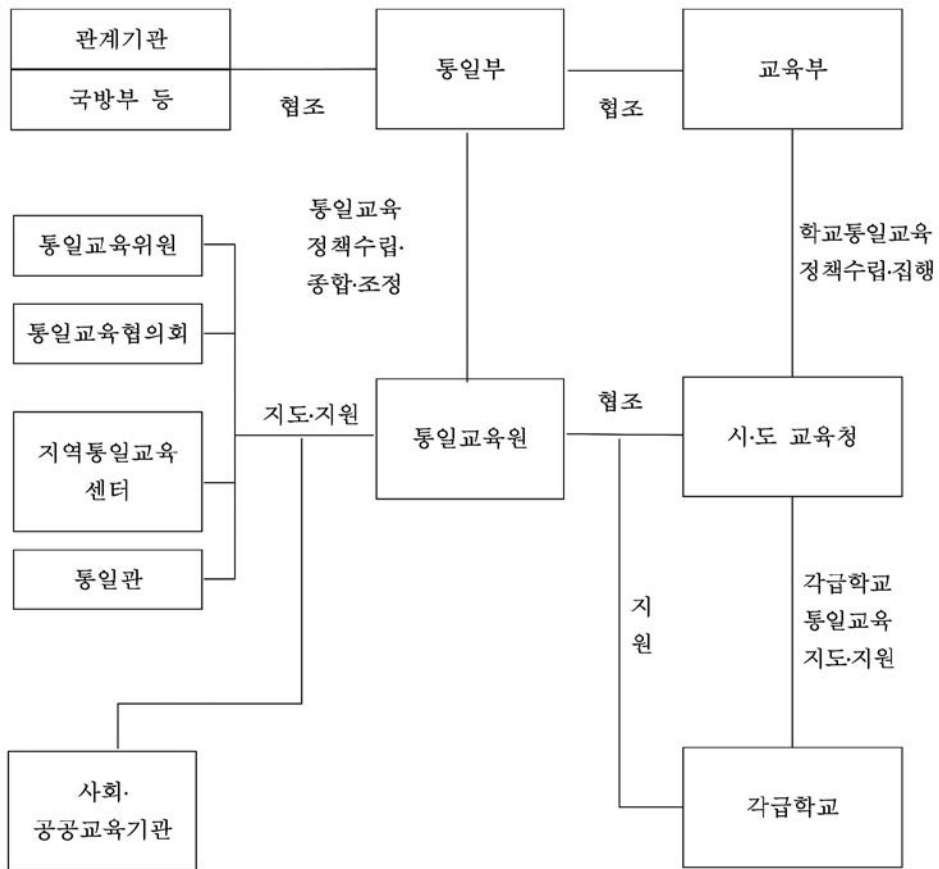
8)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요청 등),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제11조(고발), 부칙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통일교육의 추진체계

우리나라 공공기관 통일교육에 관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통일교육 추진체계〉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3에 근거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 17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⁹⁾를 설립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두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Ⅲ. 독일 정치교육 사례와 시사점

1. 통일 전 동서독 정치교육 사례

통일 전 독일에서는 통일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¹⁰⁾이란 이름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¹⁾ 이 논문이 추구하는 우리나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보다는 통일 전 동독과 서독에서 실시한 정치교육 사례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통일 전 동서독의 정치교육 가운데 학교정치교육과 사회정치교육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9) 전국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연계된 통일교육위원회협의회와 통일교육협의회는 구별된다

10) 전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통일교육을 내포하는 포괄적 개념인데, 통일교육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김창환, “독일 통일 이전 통일교육”,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Vol. 2011 No. 1, 6면). 이 논문의 독일사례에서는 한국식의 통일교육이란 용어보다는 독일의 정치교육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11) 독일 통일 이후 정치교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미경, “독일 통일 이후 통일교육”,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Vol. 2011 No. 1, 참조.

가. 통일 전 동서독 학교정치교육 비교

(1) 학교정치교육의 정책과 목적

서독의 학교정치교육은 빌리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기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동방정책 이전에는 서독체제에 대한 우월감과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이 정치교육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동방정책 이후에는 동독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 체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독은 통일교육 기본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서독 정치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도록 하는데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자유와 평화,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정치교육이다. 반면에 동독 정치교육의 기본정책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동독은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이념과 논쟁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완수라는 이념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동독 정치교육의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정당 정책을 주입시키고, 사회주의 혁명과업을 동독 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완성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¹²⁾

(2) 학교정치교육의 내용과 방법

서독 학교정치교육의 내용은 동독에 대한 객관적 소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비교, 국제정세,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이 주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정치교육의 방법으로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개, 비교, 체험학습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양 체제를 비교하고, 어떤 체제가 우월하고 통일 후 어떤 체제를 지향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런 점에서 특정이념 강조보다는 토론수업이 강조되었다. 반면에 동독에서는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정,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동독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등을 주 내용으로 가르쳤다. 정치교육의 방법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방적 우월성을 학생들에게 교화(Indoktrination) 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¹³⁾

12) 김창환, 앞의 논문, 22면.

13) 김창환, 앞의 논문, 22면.

(3) 학교정치교육의 원칙으로서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내용과 평가

1976년 바덴-뷔르템버그(Baden-Württemberg) 주 정치교육원의 원장이었던 Siegfried Schiele는 다양한 정파의 정치교육 이론가와 행정가들을 슈바벤(Schwaben) 지역의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로 초청하여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때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1차적으로는 학교교육 내에서의 정치교육 원칙을 확립하고, 기타 학교 밖의 정치교육에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¹⁴⁾ 이 원칙의 적용은 독일의 초등학교(Grundschule)에서 김나지움(Gymnasium)과 각종 실업계 학교(Hauptschule, Realschule)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는 모든 정치적 관점을 인정하고 수업에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을 가라앉혔다. 이 합의에 따라 수업 시간에 정치적 교의를 주입하거나 당파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다. 학교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당파성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정치적 견해는 성적 평가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는 독일의 정치교육의 중립화 내지 객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⁵⁾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 따라 확립된 정치교육의 원칙은 다시 각각의 교과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적용되었다.

나. 통일 전 동서독의 사회정치교육 비교

(1) 사회정치교육의 목적

통일 전 서독의 사회정치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통일교육이 다루어진 것이다. 정치교육의 목적 역시 민주적 소양을 키우고, 동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추게 하여, 올바른 통일의식과 통일의지를 함양하는데 모아졌다.

14) 정호경, “재통일 전후의 독일의 정치교육 경험과 그 시사점”, 『공법연구』 제45집 제2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16. 12, 215면.

15) 정호경, 앞의 논문, 218면.

반면에 동독은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체제를 가르치는데 정치교육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그러다보니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대립과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사회정치교육의 내용과 방법

서독 사회정치교육의 내용에서는 동독체제의 대한 객관적 지식 전달, 동서독 체제의 비교, 동서 냉전체제에 대한 이해, 국제관계 등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그리고 사회정치교육 방법으로는 대부분 강의와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주제발표와 토론이 주된 교육방법이다.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성인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인식을 찾도록 지도하였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효과는 컸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에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철학, 사회주의 정치경제 등 사회주의 이념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았고, 서독을 투쟁의 대상과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주로 가르쳤다. 그리고 사회정치교육 방법으로는 대화와 토론보다는 지식을 주입하고 교화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사회주의 이념은 토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¹⁶⁾

(3) 사회정치교육 담당기관

서독의 사회정치교육 담당기관으로는 국가기관인 연방정치교육센터와 11개 주 정치교육센터, 내독성¹⁷⁾(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과 전독연구소 등이 있었다.

그리고 정당재단, 교회,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많은 사설 정치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 국가와 민간이 모두 정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16) 김창환, 앞의 논문, 41면.

17) 내독성은 우리나라의 통일부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으로 1949년에 설립되었다. 내독성의 주요과제는 독일정책을 입안하고, 독일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지만, 정치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다. 내독성의 정치교육은 산하기관인 전독연구소와 함께 수행하였다.

〈서독의 주요 사회정치교육기관〉

주요 정치교육 담당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
연방정치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교육센터 - 바이에른 주 정치교육센터 - 베를린 주 정치교육센터 - 브레멘 주 정치교육센터 - 함부르크 주 정치교육센터 - 함부르크 주 정치교육센터 - 헤센 주 정치교육센터 - 니더작센 주 정치교육센터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치교육센터 - 라인란트-팔츠 주 정치교육센터 - 잘란트 주 정치교육센터 -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정치교육센터
내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독연구소
정당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사회민주당, 1925년 설립, 1949년 재설립) -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기독교민주당, 1964년 설립) -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자유민주당, 1958년 설립) - 한스-자이델 재단(기독교사회당, 1967년 설립)
사설 정치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신교 정치교육기관 - 가톨릭 정치교육기관 - 경제단체 정치교육기관 - 정치 관련 연구소 - 기타 각종 정치교육 단체

반면에 동독에서는 모든 사회정치교육은 국가가 관장하였다. 동독의 모든 교육기관을 국가가 관장한 것과 같이 사회정치교육 역시 국가의 소관사항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교육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2. 우리나라의 시사점

독일과 한국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정치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차이 이외에도 국력격차의 차이, 통일비용 조달 능력의 차이 등 통합 여건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강대국들의 합의에 따라 분할되었고, 양대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조 하에서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독일은 분단의 평화적 극복,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따른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¹⁸⁾

독일 학교정치교육의 특징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개, 비교,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양 체제를 비교하고, 어떤 체제가 우월하고 통일 후 어떤 체제를 지향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통일교육이 다루어졌다. 사회정치교육의 목적 역시 민주적 소양을 키우고, 동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추게 하여, 올바른 통일의식과 통일의지를 함양하는데 모아졌다. 사회정치교육의 내용에서는 동독체제의 대한 객관적 지식 전달, 동서독 체제의 비교, 동서 냉전체제에 대한 이해, 국제관계 등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동·서독 비교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판단하게 한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이 모두 정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할 것이다.

독일은 빌리 브란트가 1970년 동방정책을 펴기 전까지는 반공교육이 강조되었다.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간의 평화와 협력, 민족애를 강조하는 쪽으로 정치교육의 방향전환을 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내용에서 보듯이 독일의 정치교육은 수요자, 즉 학습자 중심이다. 또한 정치교육의 체계 및 운영 측면에서 보면,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 밖의 기관들이 성인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민·관·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

18) 김미경, 앞의 논문, 71면.

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 담당자들은 명확한 원칙아래 정치교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정치교육 주체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갈등 없이 일관된 정치교육을 하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서 드러나는 정치교육의 방침은 정치교육 담당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독일의 모든 정치교육에서 확고한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통일교육에 관한 노선과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고,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통일교육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Ⅳ.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안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의 기본사항(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통일교육의 반영(제7조), 학교의 통일교육의 진흥(제8조), 통일교육의 수강요청 등(제9조),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제9조의2)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물론 지난 2018년 3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의 법적 근거 마련(제3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제4조), 통일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제6조의6),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제6조의7)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지원법에는 일부 임의규정의 성격이 잔존하고 있다.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¹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 2014년 5월 16일 제19대 국회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안 제7조, 안 8조, 안 제9조 제1항)에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세대에 통일의 가치를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 전반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법안 통과는 되지 못하였다. 통일교육 의무화, 특히 대학 통일교육 관점에서 논의는 고경민, “통일교육 의무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23집 3호, 2015. 8. 참조.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이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조례 제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통일교육 협력체제 구축, 기본계획 수립사항 구체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체제 구축은 강행규정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례제정과 예산지원의 근거는 임의규정화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통일교육은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일은 국가의 비전으로 통일교육은 중앙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범정부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개발·문화·예술과 같은 가시적 사업에 비해 통일교육은 역점사업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법 규정을 통해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마련·추진을 의무화할 경우 지역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무원 개인의 통일교육 의무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성화된 통일교육 장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일교육을 장려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특성화된 통일교육 실시 항목을 추가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일교육 효과는 활성화 될 것이고, 의미 있는 통일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조의 특징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일교육을 함께 관심을 가질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이 점은 2018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²⁰⁾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20) 2018. 11. 17.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광역(8개), 기초 자치단체(20개)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30개 자치단체가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특별시(특별자치도) ·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경기도, 전라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순천시,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양산시, 남양주시, 계룡시, 전주시, 평택시, 나주시, 문경군, 예산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남구, 황성군, 증평군,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천군

둘째, 공공부문 종사자들 개인에게도 필요에 따라 특성화된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 개인이 특성화된 통일교육 수강 의지가 있더라도 해당 조직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통일교육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통일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차원이나 해당 기관에서 해당기관별 특성화된 통일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통일부)는 2016년 12년 29일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²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는 2018년 9월 14일부터 통일교육을 의무화 하는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였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통일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법 개정이라 생각한다.

법 개정 당시 참고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교육 유사입법현황〉

구분	근거법령	의무부담 주체(기관)
성희룡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장(사업주) *연 1회 이상, 미실시시에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21) 2016. 11. 14. 20대 국회에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안 제6조의4 신설)도 유사한 취지이다.

구분	근거법령	의무부담 주체(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소방안전교육	소방기본법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공공기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사업장(사업주)
교통안전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원장,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원장,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 중·유괴의 예방·방지교육(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구분	근거법령	의무부담 주체(기관)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의 장 *학기당 1회 이상(연 4시간)
장애이해 및 장애 학생 폭력예방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장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 * 1년 1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문제는 직장교육의 유사한 입법례를 그대로 통일교육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입법 당시 참고한 유사한 사례는 개인 간의 문제 내지는 개인과 조직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을 국가적 시책인 통일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의무 통일교육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한 기관(18부 5초, 17청, 4위원회)과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2원, 4실, 2위원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시·도(17개), 시·군·구(226개),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34개), 읍면동(3,500개), 출장소(78개)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17개) 및 각 지역 교육청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라, 2018년 기준 338개의 공공기관이 교육의무 대상기관이다. 교육방법은 매년 1회(1.1-12.31)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하되, 그 내용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시 || 통일교육의 내용

과목	내용 요소
통일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 남북관계의 전개 ·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 통일노력(통일방안 비교) · 통일의 비전과 과제 ·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등
북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보는 시각 · 북한 분야별 실상(정치 · 외교 · 군사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주민생활 등) · 북한 변화 전망 등

교육방식은 집합교육(대면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강의, 기관 특성에 맞는 기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통일의 이해와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더 실효적 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의 조정 및 각각의 공공기관별 특성화된 전문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²²⁾

셋째,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대한 근거 마련이다.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는 실태조사와 각종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독자적인 홍보영상 제작을 독려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 지원할 법

22) 일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이 다르겠지만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의 경우, 대진대학교(경기북부 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인 “평화통일 대비 전문 행정인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참고가 될 것이다.

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7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및 제4항에 공익광고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나 전광판방송 사업자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익광고 관련 규정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관련조항을 「통일교육지원법」에 규정할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도 위와 유사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는 규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을 신설한 것은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에 참고할 만하다(2015. 12. 1).²³⁾

〈유사 입법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 의신중한결정및 국제결혼 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제2조 제3호의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의3(홍보영상의제작·배포 등) ① 여성가족 부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 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배포하여야 한다.	제24조(홍보영상의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제2조제23호의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3) 소성규, 앞의 논문, 104-105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넷째,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위원 역할론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운영의 목적은 통일교육 인프라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통일교육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통일교육이 가능한 단체 등으로 하여금 통일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지역통일교육센터 설치의 기본취지는 타당하다고 본다. 지역통일교육센터 설치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3에 의한 센터 지정·운영기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거점기관을 지정하는데, 센터 운영기간이 2년이다. 물론 2

년마다 계속해서 지정받아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센터도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취소하여야 하고(강제조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임의조치)을 생각해 본다면, 지역 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기간을 좀 더 늘리는 운영의 묘를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간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수행에 문제가 있는 통일교육위원의 해촉 근거를 만들었다. 문제는 통일교육위원 해촉의 근거 마련과 함께 통일교육위원들이 통일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통일교육위원은 17개 지역협의별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임기 2년의 제20기 통일교육위원 800명을 위촉하였다.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제20기 지역협의별 통일교육위원²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총계
91명	44명	37명	31명	39명	35명	40명	38명	48명	32명	36명	40명	45명	42명	42명	39명	31명	90명	800명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교육위원의 해촉 근거는 있지만, 통일교육위원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통일교육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상당수는 통일교육위원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실제 통일교육위원들이 일선에서 통일교육 관련 강의를 하거나 통일교육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통일부의 통일 관련 행사에 참여하거나 통일교육에 관한 의견을 건의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통일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24) 임기 : 2016. 4. 1. - 2018. 3. 31(2년).

2. 제도 개선방안

가. 통일교육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통일교육 추진체계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의 양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교육부, 교육청, 통일부(통일교육원), 국방부, 행자부 등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과 통일교육협의회와 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통일교육,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 영역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일 관련 교육에 관한 중앙부처 간의 협업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²⁵⁾ 정부부처 간의 유사한 교육진행으로 이를테면 통일부에서의 통일교육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국방부의 민방위교육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교육 수강자 입장에서는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간의 협업 또는 통일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²⁶⁾

나. 공공기관별 통일대비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정부(통일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 하에 전문과정,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글로벌통일교육과정 등 5개 과정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²⁷⁾

〈2016년 통일교육과정 운영현황〉

(단위:명)

과정 구분	전문과정	평화통일 기반구축 과정	학교통일 교육과정	사회통일 교육과정	글로벌 통일교육 과정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	합계
인원	332	1,440	1,703	2,104	384	44,093	50,056

특히 공무원 대상교육인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25) 소성규, 앞의 논문, 109쪽.

26) 홍진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대진대 석사학위 논문, 2017. 2, 52면.

27) 통일부, 「2017 통일백서」, 2017. 3, 200면.

적극 동참하는데 중점을 두고, 2016년에 총 1,440명을 교육했다. 특히 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다른 정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일교육의 대체적인 현실은 개론 수준의 통일 전반에 대한 일종의 교양교육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 기초과정만 6-7주였다. 우리나라 역시 전문성을 가진 북한에 대한 행정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²⁸⁾ 일반적인 통일교육의 정도가 아니라 통일 전과 통일과정 및 통일 후 구체적으로 통합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법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²⁹⁾

이를 위해 별도로 통일대비 인력교육원을 설립하거나, 통일교육원 내에 통일대비 정부인력 양성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별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전공을 배출하는 통일대비 전문인력 조성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통일을 대비한 행정인력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교육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각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즉, 평화통일을 대비한 평화통일 한국 전문가를 해당 공공기관별로 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민간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간과 공공영역이 함께 해야 할 작업이다.

다. 학교통일교육, 특히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확대

통일부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과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6년 실태조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초·중·615개교의 학생 10만6,347명과 교사 4,14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8) 조성규, 앞의 논문, 110면.

29) 양현모·강동완의 선행연구에서는 통일대비 정부인력 이란 “정부가 통일 전과 통일시기, 그리고 통일 후 발생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이나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해 계획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 하다(양현모·강동완, “통일대비 정부인력 양성방안: 교육훈련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37집 1호, 2012).

조사결과 통일부·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 확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조사 첫해(2014년) 53.5%에서 2016년 63.4%로 증가하였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또한 2014년 76.7%에서 2016년 80.4%로 증가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응답도 2014년 57.9%에서 2016년 63.9%로 증가하였다.³⁰⁾

초·중·고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일교육이 부족했던 대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는 2016년에 처음으로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강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통일 미래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 제고와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과 통일 홍보영상 공모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은 권역별로 6개 선도대학(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육대)을 지정하여 대학통일교육 우수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통일교육을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강좌와 현장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여 대학사회에 합리적인 통일논의가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6개 권역별 분류 기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물론 예산상의 한계가 있겠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부 국비지원 사업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예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산 확충 및 지정대학 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은 대학에서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과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이 중복사업이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두 사업은 사업성격과 대상이 달라 중복사업으로는 볼 수 없다. 두 사업은 통일교육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윈윈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

30) 통일부, 「2017 통일백서」, 213면.

다. 대학 통일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외국 대학과의 통일 관련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라.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사회 통일교육 실시 주체로 공공기관으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원연수원, 공무원교육원, 법무부, 국방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외동포 교육기관, 그리고 헌법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지도·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로는 통일교육위원 지역별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및 사회·공공교육기관이 있다. 민간단체로는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통일교육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학교 통일교육이 아무리 훌륭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내지 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해 왔다.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방향이 학교통일교육 중심에서 사회통일교육 중심으로 통일교육 방향이 이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예산 부족으로 사회통일교육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사회통일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내지 다문화가족이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마.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노력

독일은 통일 14년 전인 1976년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교육지침을 만들었다. 강압적인 교육과 교조(敎條)화 금지, 균형성 또는 대립적 논점의 확보,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 등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라고 부르고 있는 이 합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일거에 제거하려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이다.

우리나라 통일교육 일선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교육과 일부 교육청(교육감)의

통일교육에 대한 이견으로, 유기적 통일교육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통일교육지침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으로도 알 수 있다. 동일한 통일문제에 대해 집권하는 정권마다 바라보는 시각차는 뚜렷하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관 비교〉

박근혜 정부의 통일교육 지침서 ³¹⁾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³²⁾	
통일 교육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래지향적 통일관 ② 건전한 안보관 ③ 균형 있는 북한관 	평화·통일 교육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②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③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④ 평화의식 함양 ⑤ 민주시민의의식 함양
통일 교육의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외지 확립 ②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 준비 역량 강화 ③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산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④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⑤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⑥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평화·통일 교육의 중점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②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가 아닌 국제문제이다. ③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④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⑤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⑥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대상이다. ⑦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⑧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⑨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⑩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⑪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⑫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평등·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⑬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⑭ 통일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⑮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p>통일 교육의 지도방법</p>	<p>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통일문제의 이해 ② 문화적·감성적 접근 확대 ③ 열린 대화와 토의의 중시 ④ 생활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⑤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⑥ 현안쟁점과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 ⑦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p>	<p>평화·통일 교육의 방법</p>	<p>① 학습자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②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통일교육, ③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④ 흥미와 관심을 증진하는 다양한 방법의 활용</p>
<p>통일 교육의 내용체계</p>	<p>① 통일문제 이해 ② 북한이해 ③ 통일환경의 이해 ④ 통일정책 ⑤ 통일을 위한 과제</p>	<p>평화·통일 교육의 내용</p>	<p>① 분단의 배경과 필요성 ② 북한이해 ③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p>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즉,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정치인, 정치학자 및 교육학자를 포함한 학계 및 정부, 통일 관련 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바.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방안 모색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통일교육 등을 내포하는 통합교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 조차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반영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입법발의가 된 적은 있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교육지원법에 규정된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더 강화될 때 통일을 위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통일교육의 원래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3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 지침서」, 2016, 5.
 32)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방향과 관점」, 2018, 8.

이 충실히 시행된 바탕 위에서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과 특히 남북한 민족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하여 고착화된 이질적인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지원법에 규정된 통일교육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통일교육지원법에서 밝히고 있는 통일교육의 형태는 크게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통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통일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이러한 통일교육의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지원법이 과연 통일교육 지원과 활성화라는 두 가지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입법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즉, 통일교육지원법 제1조는 통일교육지원법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순히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마치 통일교육에 관한 모범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시행령 수준의 입법 목적으로 보일 정도이다. 헌법정신에 충실한 입법 목적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이 통일교육지원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에 위반한 자는 다른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통일교육지원법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검토가 필요하다. 즉,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정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 고경민, “통일교육 의무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23집 3호, 2015. 8.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4. 1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7. 2.
- 김미경, “독일 통일 이후 통일교육”,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Vol. 2011 No. 1.
- 김용재, “통일교육의 발전방향 : 통일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 5, 2000.
- 김종세, “인터넷을 통한 남북통일교육에 대한 소고 -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하여 -”, 조선대 「법학논총」 제16집 제1호, 2009.
- 김창환, “통일교육지원법 개선방안 연구”, 「통일교육연구」, Vol. 3, 2003.
- 김창환, “독일 통일 이전 통일교육”,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Vol. 2011. No. 1.
- 박광기,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2. 12.
- 소성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7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 6.
- 소성규,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활동상황 및 법정책 제안”, 대통령직속 통일준 비위원회(사회문화분과) · 통일교육원 주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 2016. 6. 17.
- 양현모 · 강동완, “통일대비 정부인력 양성방안: 교육훈련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37집 1호, 2012.
- 정호경, “재통일 전후의 독일의 정치교육 경험과 그 시사점”, 「공법연구」 제45집 제2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16. 12.
-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 · 통일교육-방향과 관점」, 2018. 8.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 지침서」, 2016. 5.
- 통일부, 「2017 통일백서」, 2017. 3.
- 홍진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대진대 석사학위 논문, 2017. 2.

2019

경기북부법조
통권 제8호

판례연구 및 소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연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기뵘

-
1.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정리
 2. 배임죄의 일반론
 3. 변경 전 대법원 판례(2000도4293)
 4.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의견 정리
 - 가. 다수의견
 - 나. 반대의견
 - 다. 보충의견
 5. 동산이중양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2008도10479)
 - 가. 사안
 - 나. 다수의견
 - 다. 반대의견
 - 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I
 - 마.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II
 - 바.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6. 검토
 7. 참고 - 기존 판결례 정리
-

1.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정리

가. 사안의 검토

-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8. 10. 2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피고인의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 2) 피고인은 2013. 2. 1.경 자신 앞으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 3)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토지를 누나에게 1억 8,200만 원에, 위 건물을 매형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검찰의 기소 및 하급심 판결

- 1) 검찰은 피고인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이상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 2) 제1심 법원(대구 2013고단4623)은 배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 3)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차용금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이고,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대물변제하기로 한 물건은 토지일 분 건물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대구 2013노3665)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항소기각 되었다.
- 4)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2. 배임죄의 일반론

가. 배임죄의 정의 등

- 1)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형법 제355조 제2항)

2) 배임죄의 본질

- ① 권한남용설 : 대외관계에서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대내적 의무를 위배한 경우, 즉 타인의 재산을 처분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

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 ② 배신설 : 신의성실 의무에 위반하는 것 내지 신임관계의 침해, 즉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권한의 남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대내의 신임관계에서 발생한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
- ③ 사무처리설 : 타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위반에 의한 재산침해, 즉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배려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으로 대내적 의무위반을 배임죄로 본다는 점에서 배신설과 같으나, 그 의무를 법률상의 재산보호의무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다름.
- ④ 검토 :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배신설에 의하면 배임죄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사실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신임관계의 범위를 결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어 단순한 채무불이행까지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되는 등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의 구분 및 경계가 모호해져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임관계의 범위를 결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는 구성요건요소를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변경 전 대법원 판례(2000도4293)

가. 사안

- ① 피고인은 오피스텔 건축주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과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증여조로 오피스텔의 각 일부 세대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금을 5억 원으로 정한 후 오피스텔 2, 3층 해수사우나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음에도 1998. 1. 26. 제3자에게 오피스텔 2, 3층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대법원 : 배임죄 인정

- ①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를 제3자의 명의로 변경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제3자의 명의로 경료하였으니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들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가 된다.
- ②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액의 산정을 잘못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의견 정리

구분 ¹⁾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대물변제예약 -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부수적 내용 - 자기의 사무	금전소비대차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 - 타인의 사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 - 자기의 사무
부동산 이중매매	등기협력의무 - 타인의 사무	등기협력의무 - 타인의 사무	등기협력의무 - 자기의 사무

가. 다수의견²⁾ - 배임죄 부정

-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

1) 대법원 2014도3363 사건에서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이 각각 대물변제예약 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도 언급하여 두 가지를 모두 정리한 것임

2)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약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4)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반대의견(4인)³⁾ – 배임죄 인정

- 1)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등기협력의무 등 거래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임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확립된 법원

3)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용덕

칙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러한 법리는 전형적인 배신행위에 대하여는 형벌법규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것이다.

- 2) 담보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담보계약 자체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대물변제예약에서 신임관계의 본질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채권자에게 취득하게 하는데 있으며, 이는 결국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양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물변제예약을 하는 경우에 그 대물변제예약은 금전 차용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 및 그에 따른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 이행 내지 그에 대한 신뢰관계는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 3)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대물변제예약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전형적 신임관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근저당권설정, 이중전세권설정에 관하여 배임죄를 인정하여 온 판례의 확립된 태도와 논리적으로 부합한다.
-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 보충의견(2인)⁴⁾ -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저당 등도 배임죄 성립 부정

- 1)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등기절차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 사무의 처리일 뿐이다.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4)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

내용을 실현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타인인 매수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타인인 매수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동산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 3)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등기절차이행의무라는 용어 대신 ‘등기협력의무’를 고안하여 놓고 그 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라고 하여 그 위반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4) 채무의 이행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가 된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반대의견은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위반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신임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는 없다. ‘타인의 사무’는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임관계 위배를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 5) 그동안 등기협력의무를 매개로 하여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저당 등의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 온 판례의 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5. 동산이중양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2008도10479)

가. 사안

피고인이 갑에게 인쇄기를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을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해 준 사례.

구분 ⁵⁾	다수의견	반대의견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I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II
동산인도채무	자기의 사무- 매도인에게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 보호, 관리에 협력할 의무 없음	타인의 사무 - 중도금 수수 이후 채무의 이행은 자기 사무의 처리임과 동시에 타인 사무의 처리(실질적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 측면에 주목)	자기의 사무	자기의 사무 - 동산과 부동산의 거래 구조 상 차이에 중점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의 동기협력 의무	타인의 사무	타인의 사무	동기협력의무와 같은 작위적 개념 이용하여 자기의 사무를 타인의 사무로 변질시켜 배임죄 적용범위 부당히 확대시켰다는 등의 비판적 견해 주목 - 기존 판례가 판례법으로 굳어져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워 그 당부에 관한 논의 유보	타인의 사무

나. 다수의견⁶⁾

1)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

5) 대법원 2008도10479 사건에서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I, II를 의미함

6)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반대의견(5인)⁷⁾

1)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재산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상대방의 재산 취득 혹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2) 동산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그와 달리 유독 동산을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며, 재산권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의 전반에 걸쳐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상 신뢰관계의 보호에 기여하여 온 대법원판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이다.

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I (3인)⁸⁾

1)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약

7)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8)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의 목적이 된 권리를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요구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무 처리가 타인인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미의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면 그 사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그 일방 당사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를 그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채무의 이행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을 겸비하고 있으면 그 채무자의 배신적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여 현행 형사법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엄격히 경계되어야 한다.

- 2) 반대의견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 채권, 면허·허가권 등의 다른 유형의 재산에 대한 이중매매 혹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처분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하나,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이중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귀속된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재산권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상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반면,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아직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전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이전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타인의 사무로 취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인정에 관하여 그 본질적인 구조를 달리하며, 판례가 애초 부동산 이중매매를 우리 형법상 배임죄로 의율하게 된 배경이나 이에 대한 비판적 고려의 여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3) 결국 매매거래 일반에 있어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행위가 널리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인정한 기존 판례가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외면하고 형법

상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법리적 오류를 동산의 경우에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 되므로 반대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마.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II (1인)⁹⁾

부동산과 동산의 거래 구조상 본질적 차이를 도외시한 채 부동산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를 동산의 거래에도 그대로 원용하려는 반대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등기절차의 고유한 특성을 매개로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위한 협력의무의 존재를 긍정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와 같은 내용의 협력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동산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본 법리에 보다 충실한 법해석이다.

바.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3인)¹⁰⁾

- 1) 다수의견에 대한 각 보충의견은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상의 입법주의 전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법구성적인 측면의 차이에 불필요하게 구애되어 행위의 실질적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의 측면에 충분히 주목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 판례의 진정한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2) 판례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다양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배임죄로 의율한 바 없으며,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등으로 그 계약관계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비로소, 그것도 매도인의 배신적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매수인의 온전한 권리 취득이 아예 좌절되거나 그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한정하여 배임죄를 긍정하여 왔을 뿐이다.
- 3) 판례는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이중매매 등의 사안에서도 매도인의 배임죄를 긍정하여 왔고, 이 역시 수긍할 만한 이유에 기한다. 요컨대 채권자(양도담보의 경우) 또는 채권양수인(채권양도의 경우)이 양도의 목적물을 취득한다는 것만으로 담보권설정자 또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자(담보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거래관계상 보호되는 신임관계'에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를 배임

9) 대법관 전수안

10)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도 긍정될 수 있지만, 단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동산 이중매매의 사안’에서는 이를 긍정할 여지가 없다고는 단연코 말할 수 없다. 판례가 위의 사안들에서 배임죄를 긍정하는 것은 양수인이 이미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유형에 고유한 현저하고 중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4)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의 구조는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전혀 다를 바 없고,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의무의 위반행위 중 일정한 양태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라고 한다면, 이에 관하여 부동산과 동산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동산매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의 의무는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와 그 구조를 완전히 같이하며, 다만 여기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한편으로 소유권 이전, 다른 한편으로 사용·수익 보장이라는 보다 근원적 의무의 구체적 모습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일 뿐이다. 즉, 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는 한편으로 소유권이전의무를,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경우에 용역보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전자의 측면은 부동산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후자의 측면은 그의 용역보장의무의 한 내용으로서의 인도 의무에 대응한다. 따라서 동산매도인도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부동산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아야 한다.

6. 검토

종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왔고 최근 판례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¹¹⁾ 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한 등기이전협력의무에 근거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의 사무를

11)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매수인 보호 등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도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앞으로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될지 지켜볼 일이다.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주요한 논거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때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은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있으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반론과 더불어,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사건의 영역에 형법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¹²⁾

대상판결 및 동산이중매매 사건에서 반대의견은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에 형벌법규의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의 태도가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 치중한 나머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에 충실한 법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³⁾

원래 배임죄는 1933년 독일의 나치정부 하에서 당시의 어려운 국가 경제상황에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망라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구성요건이며, 배신설도 나치정권 하에서 융성했던 학설이다.¹⁴⁾

결국 부동산이나 동산 이중매매를 비롯하여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국가형벌권을 제약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중시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빠짐없이 처벌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이 제약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배신설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그 구성요건요소를 제한적으로

12) 김중구, 이동명, “동산이중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법학연구 제51집, 2013, 9.

13) 신종열,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법 16호, 사법연구지원재단, 2011, 참조.

14) 문형섭, “재산범죄이론의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16면;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 법학연구 제51권 제2호, 부산대법학연구소, 2010, 333면 참조.

15) 문형섭, “재산범죄이론의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16면 참조.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상판결 및 동산이중매매 사건의 반대의견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임무위 배행위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석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을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종래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으로 구분되는 범죄체계이론과 달리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을 구성요건 단계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 범죄체계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¹⁶⁾

결국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동산이중매매에 관하여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사건의 영역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민사적 분쟁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사건의 영역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의 구분 내지 경계 설정에 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⁷⁾

7. 참고

가. 부동산 이중매매 등

1)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 배임죄 부정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이상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16) 송희식, “배임죄의 불법과 치역”,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333면 참조.

17) 이동호, “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13. 1. 참조.

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315 판결).

2) 중도금 내지 잔금을 수령한 경우 - 배임죄 인정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49 판결).

3) 소유권 이전받은 매수인의 타 용도의 근저당권 설정 - 배임죄 부정

부동산매매에서 미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피고인이 갑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매잔금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 이에 관하여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 위 매수인은 배임죄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중 양도 - 배임죄 인정

피고인들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호텔을 피해자 측에 매도하면서 소유권 확보방안으로 이에 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도, 가등기를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에 이전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갑 회사, 을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가등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해 피

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다. 전세권설정계약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양도담보설정계약 후 지상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 각 배임죄 인정

- 1)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로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9. 28. 선고 93도2206 판결).
- 2)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로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도1218 판결).
- 3)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라.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1) 점유개정 방법으로 계속 점유를 한 경우 - 배임죄 부정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

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선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2) 제2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현실의 인도를 한 경우 - 배임죄 인정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 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마. 채권

1) 임차권 이중양도 - 배임죄 부정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4 판결).

유사판례 - 점포임차권 이중양도(86도811), 양품점의 임차권 이중양도(90도1216)

2) 채권양도

가) 통지 전 - 횡령죄 인정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참조).

나) 통지 후 - 배임죄 부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공소의 갑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 2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다면 그 후 피고인과 공소의 갑이 위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698 판결).

3) 공법상 면허·허가권 등

가) 주류제조면허 이증양도 - 배임죄 인정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은 양도인이 면허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은 양수인의 면허획득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사무의 일부를 이룩하고 있는 양수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불이행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대법원 1984.5.9. 선고 83도3084 판결 참조).

나) 토석채취권 이증양도 - 배임죄 인정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그 매수인에게 그들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토석채취권을 양도하고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득케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961 판결).

다) 카바레 영업허가권 이증양도 - 배임죄 인정

피고인이 카바레 영업을 할 목적으로 카바레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카바레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받았다면 임대인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서는 위 영업허가권의 단순한 임차인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이를 반환하는 범위 안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니 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려 하였다면 배임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966 판결).

라) 다방 영업허가권 이종양도 - 배임죄 인정

다방영업 허가에 따르는 재산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인 갑이 피고인에게 다방시설을 포함한 운영권 일체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기간 동안은 다방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그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다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위 약정대로 그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이행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갑의 사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명의환원 약정을 부인하고 자신이 명실상부한 영업허가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고 다방의 상호를 변경하고 갑의 명의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소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176).

바. 무허가 건물 - 배임죄 인정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되는 것으로서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무허가건물의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그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 처분의 포괄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므로, 이와 같이 양수인에게 무허가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그 무허가건물을 이종으로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제3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무허가건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13 판결).

사. 명인방법에 의하여 거래되는 입목 - 배임죄 인정

동백나무는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069 판결).

❖ 참고 문헌 ❖

- 김종구, 이동명, “동산이중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법학연구 제51집, 2013. 9.
- 신종열,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법 16호, 사법연구지원재단, 2011.
- 문형섭, “재산범죄이론의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 법학연구 제51권 제2호, 부산대법학연구소, 2010.
- 송희식, “배임죄의 불법과 치역”,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 이동호, “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 연구, 2013. 1.
- 허일태,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형사법연구 15호, 2001. 6.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변호사 이 임 성

I. 들어가며

지난 2018. 10. 8. 경기 고양시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가 한 외국인 근로자가 던진 풍등에 점화되어 큰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화재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 및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이 사고 이후 단순히 풍등점화자인 외국인 체류자 개인에게 방화 또는 실화죄의 죄책을 묻고 종결해서는 아니됨에도 실제 법적 책임소재가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설치자, 소방관서, 저유소 소화장비업자 등 여러 기업에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¹⁾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르노닛산자동차 Carlos Ghosn회장의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여 곤회장이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회계부정사건의 발생 원인은 르노닛산 기업내부의 불안전한 의사결정구조 자체에 있다고 판단됨에도 형사 처벌대상은 단지 카를로스 곤 회장 개인에게 모아지는 분위기이다.²⁾ 이는 우리나라 처벌기업이 저지른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수많은 주주들이 정신적 ·

1) 한겨레 인터넷기사(2018. 10. 15.), 여·야 국감서 “저유소 화재 예방 부실” 소방청 질타, 참조.

2) 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회장의 주요부정행위는 ① 실제 보수보다 적은 금액을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한 것, ② 사적인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지출한 것, ③ 사적인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한 것 등 3가지라고 밝혀지고 있다.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일정한 의결과 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일이고,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그렇지만 형사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7억엔 이하의 벌금이라는 미미한 수준의 법인처벌만 가능하다(국제뉴스 [2018. 11. 22.], “日産 재건 신화” 곤회장 몰락의 충격적 전말).

재산적 피해를 입었지만, 그 형사처벌은 기업주 또는 실무책임자가 지는 외에 재벌기업 자체 또는 기업총수의 법적 책임은 불분명하게 종결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기도 하다. 현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과거와는 달리 거대 기업이 관여된 중대 범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 법제는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듯이 범죄의 직접적 행위자인 개인만 처벌할 뿐 그 원인 제공자이자 중요한 배후역할을 한 법인 자체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³⁾ 이에 따라서 나날이 늘어가고 대규모로 벌어지는 기업범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또한 법인 범죄 처벌의 근거인 양벌규정의 한계와 법인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분위기이다.⁴⁾

형법상 법인처벌은 오직 양벌규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가능하다. 양벌규정이란 범죄행위자와 행위자 이외의 자를 함께 처벌하는 법규정을 의미한다. 주로 행정규제법의 벌칙규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직접적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도 위반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해당벌칙을 근거로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뜻한다.

양벌규정을 통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종업원 외에 영업주를 처벌하는 목적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하는데 있고, 아울러 형법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영업주로 하여금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장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⁵⁾ 하지만 양벌규정은 직접적으로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기업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⁶⁾

아래에서는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처벌의 문제점 및 한계에 관하여 살피고, 진정한 범죄자인 법인 기업의 범죄능력을 긍정하여야 할 당위성과 직접적인 법인처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오스트리아는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형사책임을 특별법인 '단체책임법(VbVG, 2006. 1. 1.)'을 통하여 인정하였고, EU는 오래 전부터 기업형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4) 김재윤, "진정한 범죄자인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라!",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문사, 2018, 129면 이하.

5) 이주희, 기업에 대한 제재가능성과 제재수단, 한양법학(제19권 제3집), 2008. 9., 433면 이하.

6) 이주희, 양벌규정의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제20권 제4집), 2009. 11., 101면.

II. 양벌규정의 법적성격과 그 한계

양벌규정으로 직접적 범죄행위자 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처벌할지라도, 그 법적효과는 형벌의 부과이기 때문에 형벌부과를 위한 요건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당연히 ‘법인’에게도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2007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⁷⁾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업원의 업무 관련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한데서 잘 나타나 있다.⁸⁾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바있다.⁹⁾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양벌규정 내에 개인 또는 법인영업주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근거를 규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법무부의 주도로 행정형벌 규정에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대대적인 법률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서조항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 등인 경우 과실책임설 또는 부작위책임설에 입각하여 처벌하며,¹⁰⁾ 그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또는 임

7)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8) 이주희, 양벌규정의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제20권 제4집), 2009. 11., 101면.

9)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결정.

1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과실추정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 과실책임설을 명문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보아 법인에 대해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 법인은 종업원에 의해 야기된 위험발생의 원인을 방지해야 할 보충인적 지위에 있으므로, 과실책임뿐만 아니라 형법상 객관적 행위책임원칙에 따른 고의책임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부작위책임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원)인 경우에는 동일시이론에 따라 대표자(또는 임원)의 위반행위가 고의인 경우 법인도 고의범으로, 과실인 경우에는 법인도 과실범으로 처벌한다.¹¹⁾

그런데 이같이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을 과실책임이나 부작위책임 또는 동일시이론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기업이 저지르는 ‘조직화된 무책임’에 기인한 범죄를 다룰 때 어떠한 처벌도 과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조직화된 무책임’이란 오늘날 기업의 업무영역이 고도로 분업화·전문화되어 있는 결과 결재체계나 업무체계를 고도로 분화시키는 경우 또는 외부적으로 기업관련적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있는 자연인 행위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부작위책임설이나 동일시이론에 의하더라도 자연인의 위반행위가 범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자를 현실적으로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범죄자인 법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지는 것이다.¹²⁾

이에 따라서 ‘조직화된 무책임’의 처벌공백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된다. 대표적으로는 자연인의 위법행위와 무관하게 법인 자체의 시스템의 결함이나 조직상의 흠결 또는 경영관리상의 잘못만을 기초로 삼아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입법론¹³⁾이 제기되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조직책임설이다. 스위스 형법은 2013년 법인처벌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스위스형법 제7장 제102조 제1항은 “기업이 사업목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죄나 경죄가 발생하고, 그것이 기업의 부적절한 구조에 의한 것으로서 특정한 자연인의 행위기여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귀속시킬 수 없으면 기업에게 500만 스위스프랑(원화 약 56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범죄조직죄, 테러재정지원죄, 자금세탁죄, 뇌물죄, 이익공여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이 문제될 경우 기업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요구되고 기대되는 모든 조직상의 조

1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1 결정: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12) 김성돈, 형법총론(제5판), 성균관대 출판부, 2017, 162면 각주 54.

13) 이에 관하여 김혜경, 양벌규정상 처벌되는 행위와 행위자간의 불일치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형사정책연구(제29권 제1호), 2018. 3., 235면.;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비교형사법연구(제9권 제1호), 2007. 7., 334면 참조.

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죄행위자와는 별개로 기업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처벌 문제

1. 종업원에 대한 양벌규정의 확장적용

양벌규정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등의 범죄가 관련구성요건에 의하여 성립함을 전제로 그 책임을 법인에게 확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의무조항의 의무자가 일정한 신분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도 일정한 신분자로 한정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연인 위반행위자는 당해 벌칙조항에 의해서 처벌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양벌규정은 예외없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 자체만으로는 비신분자이자 위반행위자인 자연인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행정법적 의무가 신분자인 영업주에게만 부과되어 있고, 종업원은 의무 없는 비신분자인 경우에는 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부 견해는¹⁴⁾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면서 실제로 그 법인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론상 모순이고, 양벌규정상의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언은 그 수범자 범위 확대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 문언에 의하여 비로소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비신분자는 각 본조의 벌칙조항과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7.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14) 정금천,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志松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I), 2002, 146면.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과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일부 달리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행위자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실제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0. 10. 12. 90도1219 판결, 1992. 7. 28. 92도1163 판결 및 1993. 2. 9. 92도3027 판결의 각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구별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3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된다.

[3] 폐기물관리법 제6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위 제66조 등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임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된다.

즉 대법원은 양벌규정의 수범자 범위 확대기능을 긍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는 단독으로 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고, 양벌규정상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표현이 신분범을 비신분범으로 만들 수도 없다.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법인이나 그 대표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양벌규정에 수범자 범위확대 기능을 인정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유추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¹⁵⁾

생각건대, 양벌규정은 형법이론상 범죄주체성이 부정되는 법인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행정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규정이다. 따라서 양벌규정에서 일정한 신분자만 범죄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근거로 비신분자인 종업원 등에게까지 행위주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독일 형법 제14조 소정의 ‘타인을 위한 행위’(Handeln fuer einen anderen)와 같은 규정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해석이다. 독일형법 제14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권 있는 기관으로서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인적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원으로서, 타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때에는 특별한 일신적 자격·관계 또는 사정(특별한 일신적 요소)이 가벌성의 기초가 되는 법규는 이 요소가 대리인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본인에게 존재하는 경우에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반행위자의 특정 및 업무관련성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적인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그 위반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준이 ‘업무관련성’이다.

즉 영업주의 처벌은 자연인 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다.¹⁶⁾

그런데 영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업무관련행위가 있으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업무

15) 이상돈, 형법강론(제2판), 박영사, 2017, 83면.; 김성돈, 전계서, 169면.

16) 이주희 전계논문, 111면.

를 위하여 행한다는 행위자의 의사까지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법인영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위반행위자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을 위하여 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⁷⁾ 또한 “외형상으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때 그 위법행위의 동기는 반드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⁸⁾

그러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반행위자가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의 행위가 영업주를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행위의 동기가 반드시 영업주의 이익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다.

3. 법인처벌의 한계

과거 양벌규정에서는 직접적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형벌을 그 영업주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위반행위자(종업원)에 대한 처벌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영업주에 대한 처벌수단이 결정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형벌의 종류가 만일 징역형인 경우에는 그 영업주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원칙적으로 영업주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였지만, 실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영업주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부과 불가능하고 벌금형만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개인 영업주에게 과연 징역형까지 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년에 “위(양벌규정)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만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

17)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1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로.....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영업주에 대한 처벌수단을 법인 또는 개인을 불문하고 벌금형으로 일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의 형량과 관련하여, 법인과 종업원은 자산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인에 대해 행위자인 종업원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면 법인에게는 별 타격이 없고, 제재의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다.²⁰⁾ 법인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인 행위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벌금액 정도는 사업 활동을 위한 비용정도로 인식하고 이를 얼마든지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양벌규정에서 개인영업주와 법인영업주를 분리하여 구율하고 법인영업주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입법례로는 상표법 제235조의 양벌규정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233조 또는 제2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0조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33조 또는 제234조를 위반한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벌금형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법인이 관여된 범죄의 진정한 범죄주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 그 자체이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고, 그 법인을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일 것이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법인의 복잡한 조직구조와 명령체계로 인해 법인의 활동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진 범죄행위를 법인의 구성원 개인에게만 귀속시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더 이상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²¹⁾

19)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20)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2007년 상반기, 220면.; 김성돈,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형사법연구(제29권 제2호), 2017. 6., 7면 이하.

21) 김재윤, 전제서, 136면

IV. 마치며

이상에서 법인범죄의 처벌을 위하여 이용되는 양벌규정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본대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7년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처벌의 면책사유 등 추가적인 처벌조건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형법상 책임주의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영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면책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업무에 관한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한정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위반행위는 영업주의 책임범위에서 제외하였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럼에도 아직도 양벌규정은 그 적용 한계로서 ‘조직화된 무책임’의 대응 문제, 종업원에 대한 확장적용의 문제, 영업주인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수단인 벌금형의 실효성 문제 등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양벌규정이 개인인 영업주와 법인인 영업주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만, 자연인과 법인은 그 실체와 존재방식이 다른 것이므로 영업주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되 법인처벌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벌규정의 유추적 확장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형법 제14조와 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영업주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현행 벌금형의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임금 등]



변호사 신미화

-
- I. 사실관계
 - II. 사안의 쟁점과 관련 법 규정
 - III.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 IV. 판례의 검토
-

I. 사실관계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거나 그 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이하 통틀어 ‘원고 측’이라고 한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원고 측은 2005. 10.부터 퇴직할 때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측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4. 원심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II. 사안의 쟁점과 관련 법 규정

1. 사안의 쟁점

- 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이 포함하는지 여부
나. 휴일근로도 1주간 근로시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추가로 지급돼야 하는지 여부
다. 근로시간 단축, 휴일, 연장 근로수당 중복가산에 관련된 산업현장의 운영실태와 이 재판의 결론이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법 규정

「舊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

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7.1]] [[시행일: 부칙참조(제15513호)]]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7.1]]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부 칙[2018.3.21 제15513호]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 제110조제1호 및 제2호, 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분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III. 판결 요지 및 판결 이유

1. 판결 요지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 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

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결국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 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 판결 이유

가. 다수의견

-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2)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고 한

다)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실무상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가 반드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는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 ②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 ③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④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오랜 시간 노사 양측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그 적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

결국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나.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이견

- 1)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법률을 해석할 때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된다. 한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휴일근로시간도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합한 1주간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 포함된다.

- ① ‘1주간’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한다.
- ②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그 ‘1주간’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한 날이 휴일이라고 하여 그 근로시간을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 ③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역시 1주간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면서 1주간의 어떤 날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의 ‘1주간’과 ‘근로시간’을 앞에서 말한 의미와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

- ④ 구 근로기준법은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등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⑤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여 연장근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110조 제1호). 1주간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하게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일 아닌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지만 휴일근로시간을 합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 부분 또는 휴일 아닌 근로일에 이미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데도 추가로 이루어진 휴일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 2)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 형식과 구조상 이러한 해석은 당연하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 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비교할 때 성격을 달리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의 보상과 규제의 취지 역시 전혀 다르다.
- ②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과 관련 규정인 제50조, 제53조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 제56조에서 말하는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법체계적 해석이나 개념 정의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함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IV. 판례의 검토

위의 대상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법률 문언보다는 법정정책 관점, 실무상 관행을 중시한 것이고, 반대의견은 문언 해석 원칙에 충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해당 쟁점에 관하여는 수년간 이미 많은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여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파급력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2차례의 공개변론까지 열고 선고하였는바,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문제에 관한 첫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강원산업 사건(90다6545)에서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관하여 중복가산을 인정한 적은 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중복 가산해야 한다고 판결하면 대다수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복가산 문제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던 피고(성남시)의 주장과 같이 2018. 3. 20.경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법이 통과된 이후 나온 판결로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게 줄었다고 보인다.

한편,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서 ‘1주’의 의미를 ‘소정근로일’로 해석하여 ‘휴일근로’는 주 단위 연장근로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대상 판결이 위 잘못된 행정해석을 사후적으로 승인한 셈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적 의견도 있다.

아무튼 원고들의 소 제기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쟁점이었는데, 원고들의 2008년

소 제기 이후 10여 년 만에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사전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 연장근로로 인한 건강과 휴일근로로 인한 여가생활 희생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제도의 입법목적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도록 해 간접적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무)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할 수 없다거나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경청할 부분이라 보인다.

결국 입법적으로 본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에 휴일도 포함시키면서, 중복할증으로 인한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절충적) 타협점을 찾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인다.

2019

경기북부법조
통권 제8호

법조단상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성폭력 피해 보상과 아동성폭력 소멸시효의 법적 쟁점¹⁾



변호사 김재희²⁾

1. 들어가는 말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폭력이라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당연히, 위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을 다수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유독 ‘성폭력이라는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법률규정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다른 잣대를 적용하여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에서

1) 2018세계여성성폭력추방주간 기념토론회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다”에서 발표한 원고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2)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유죄가 확정되어 불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민사소송을 포기하거나, 진정한 합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형사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하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내심의 의사에 반한 감형 사유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성폭력 사건에 있어, 국민 정서와 달리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경한 처분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 달리, 민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피해 배상을 포기하거나, 내심의 의사에 반한 합의를 선택하는 것인가?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유독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만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정황이 존재하는 순간, ‘꽃뱀 프레임’이 작동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이외에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완전무결한 성폭력 피해자상’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 사건에서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기 이전까지는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는 형사고소를 당하고 수년에 걸쳐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치밀하게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은닉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꽃뱀 프레임’에서 안전하게 벗어나, 민사소송을 결심하는 순간에는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가해자 명의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가해자가 성폭력 행위를 자백하여 불법행위가 입증되었고,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여 민사소송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서 논의 할 내용과 같이 ①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②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보복 위험, ③낮은 손해배상액, ④집행단계까지의 소송의 장기화와 고액의 소송비용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은 과정에서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 빈번히 존재한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선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라도 보전하기 위하여 내심의 의사에 반한 합의를 하거나, 합의와 민사소송조차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해를 배상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기고는 성폭력 피해보상과 관련한 아동 성폭력 민사소송의 사례와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법적 쟁점을 고찰해 봄으로써, 현행 성폭력 관련 민사소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책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II 성폭력 피해 관련 민사소송의 걸림돌

1. 꽃뱀프레임 작동으로 인한 소제기의 어려움 부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꽃뱀 프레임이 작동하여 민사소송 제기 자체가 형사고소에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고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가해자가 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추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용이 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형사고소를 했다’는 꽃뱀 프레임 작동에 대한 우려로, 적절한 시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한다.

특히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장기화, 가해자 도주 등으로 인한 기소중지 등으로 형사소송이 3년 이상 장기화 될 경우, 소멸시효 도과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물리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 형사상 피해자 보호 제도와 민사상 배상제도의 불균형

2012.12.28. 성폭력 관련 법률의 획기적인 개정을 필두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보완은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를 준용하여, 가명으로 고소 및 피해자 진술 조서와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나 제3자에게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면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 재판 절차에서 성폭력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지정받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폭력 관련법에는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수사 재판 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배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적용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민사소송절차에 대부분 도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최근 성폭력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문제(“성범죄 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로 국민청원이 일거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소멸시효 도과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는 등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절차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 제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주요 보호 규정〉

제도	관련 조항
<p>피해자의 신원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p>	<p>[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②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가명)으로, 간인(간인) 및 날인(날인)은 무인(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 ⑧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p>

<p>피해자의 신원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p>	<p>제31조(심리의 비공개)</p> <p>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수사 재판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p>	<p>[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p> <p>제2조(보호와 배려)</p> <p>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p>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p> <p>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p> <p>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p>

<p>수사 재판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p>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p> <p>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p>
<p>공소시효 특례</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p> <p>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p> <p>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p> <p>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상)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p>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p>

공소시효
특례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3. 민사소송의 실익

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불법행위가 입증되고, 소

멸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낮은 손해배상액, 가해자의 무자력, 보복의 우려, 신상노출,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고통,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민사소송을 주저하게 된다. 통상 법원에서 인용되는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500만원~4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적다.

III 아동기 성폭력 사례를 통해 본, 민사소송의 법적 쟁점

1. 아동성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법적 쟁점

가. 아동성폭력 민사소송과 소멸시효의 쟁점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민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도과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

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으나, 이에 따르더라도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 성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성년이 된 직후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결심하여 진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개인적인 법률상담 경험으로 보았을 때,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수사기관이나 법률조력 기관 등을 찾는 시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 자립을 시작한 시기인 25세 이후가 가장 많았다. 해외에 비하여 정서적 경제적 자립이 늦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성년이 된 직후인 3년 이내에 아동 시기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매우 희박함에도 아동성폭력에 대한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동성폭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법률규정이다.

이러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일명 도가니 사건 등의 여파로, 형사소송에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소송에 있어, 소멸시효 제도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형사소송에서 중형이 확정되어도, 소멸시효 도과로 민사상 피해배상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우리 민법과 판례는 손해를 안 때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로 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늦추거나, 소멸시효의 원용을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로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판례는, 사고로 인하여 만 2세경 좌측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받은 결과 비로소 좌측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애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사례에서, 좌측부의 성장판을 다친 만 세2경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후유장애의 잔존 및 그 정도를 가늠하게 된 시기(1998년 1월 경)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1998년 1월 경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산정하였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참조)

또한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참조)

나아가 판례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3. 5. 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시내용에 따라,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경우 손해를 인식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었고, 그들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참전

군인들의 경우 그들 개개인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후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가압류 신청이나 소 제기 등 권리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등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 할 때 그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이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바가 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일본 삿포로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기 삼촌으로부터 성적학대를 당한 후 일본 민법상 장기시효인 20여년이 지난 원고가 2013년 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PTSD의 발병은 8세 때이지만, 우울증은 2005년에 발병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20년의 기산점은 가해행위 종료시가 아니라 2005년이며, 20년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원고의 청구 4000만엔(약 3억 6000만원) 중 3000만엔(약 2억 7000만엔)을 인정하는 일부 청구인용 판결을 내렸다. 위 판례는 아동기 성적 학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0년 기간이 쟁점이 되는 첫 사건이기도 하다.

위 사건에 대한 원심법원인 쿠시로 지방법원의 경우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따라, “불법행위의 때”라 함은 가해 행위의 순간이고, 가해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때가 기산점이라해도, 가해 행위가 종료한 원고의 8세 때 이미 PTSD 증상이 발병했다는 정신과 의사 의견서가 표시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그 때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후 제소이기 때문에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쿠시로 지방법원 2013년 4월16일 판례시보 2197호 110pp.)

그러나 쿠시로 사건의 항소심은 불법행위의 때의 기산점을 상정할 때 권리행사가 능성을 고려하여, 잠재적 사실상 손해의 발생시기를 기산점으로 해석하여, 20년이 도과한 아동기 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를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을 남겼다. (삿포로 고등 법원 2014년 9월25일 판례시보 2245호, 31면)

우리 법원도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삿포로 고등법원 판례의 법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 아동성폭력의 소멸시효와 법적 쟁점

가. 기존 판례로 본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전 생애에 걸쳐 후유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특히 다른 불법 행위와 달리 아동 성폭력의 경우 불법행위 발생 당시 그루밍과 성 경험 부족으로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장을 함에 따라 범죄 피해의 고통을 더욱 크게 절감하게 되므로, 불법행위 시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지는 특징이 있으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후유증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즉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인지하게 된다.

[아동 성폭력 사건들의 주요 특징]

- ◆ 그루밍으로 인한 성폭력 인지의 어려움과 성폭력 피해의 지속
- ◆ 가해자의 위력의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야 문제 제기 가능
- ◆ 일상생활로 복귀하더라도 트리거 발동으로 후유증이 지대함
- ◆ 전 생애에 걸친 외상후스트레스(PTSD) 지속
- ◆ 공소시효가 남아있더라도, 증거 수집 어려움
- ◆ 성범죄가 입증되어도, 소멸시효 도과로 민사배상의 어려움
- ◆ 사회적 독립이 늦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25세 이후 법적 조치를 결심하는 사례가 많아 소멸시효문제 발생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아동성폭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일명 도가니 사건에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을 겪은 뒤 2011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최초로 진단받고, 대한민국(교육부)와 광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은 2011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도과

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샷포로 고등법원의 전향적인 판례처럼, 아동성폭력 사건 소멸시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기산점을 조정해 보는 방안을 제언한다.

나. 불법행위의 손해를 안날의 기산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및 2012.3.29. 선고 2011다83189판결 각 참조) 피해자 등이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대법원 2001.9.14.99다42797판결 및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아동 성폭력 피해의 경우, 유년기 시절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향후 수십년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극심한 피해가 지속 될 것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기 이전까지 그 손해 발생 자체도 불확실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인식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진단 시기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계속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아동기 성폭력으로 인하여 수 십여 년에 걸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가해행위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 신의칙 위반의 권리남용인 소멸시효 항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3. 5. 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아동 시기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 역시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형사소송을 제기할 때 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 가해행위 시점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라는 원인이 유년기 가해자의 성 학대 행위에서 기인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10여년 후 인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아동기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장

에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내에 소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성범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결 어

필자는 젠더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가해행위 발생 후 10년이 도과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성폭력 민사소송에 대한 실무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고를 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성폭력 사건을 지원해본 실무경험에 따르면, 현행 아동 성폭력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멸시효제도가 아동성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체감하고 있다.

13세 미만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성은 통상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그루밍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아동이 성관계의 의미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성폭력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성폭력을 인지하는 단계인 사춘기 시절에는 이를 주변 어른에게 알리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내면의 힘이 없어, 시간이 경과 할 수록 고통의 수위는 심해지거나, 고소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 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반면, 유년시절의 고통의 기억은 점점 선명해 지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이 오면, 어떤 트리거가 작동되어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진다. 아동시절 성폭력피해를 고소하기 위해 오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본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우연히 가해자를 마주치거나, 가해자와 닮은 사람을 보거나, 출산을 하거나, 아동시절 강간을 당했던 유사한 장소를 가거나, 매스컴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이 회자되거나 등등 다양한 트리거에 의하여 수십 년 전 사건이 재

현되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해자를 찾아가 책임을 묻거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대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트리거가 작동하여 피해자가 유년시절 피해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찾아오는 시기는 26세에서 30세가 가장 많다. 대학을 졸업해 직장생활이 안정화되고 내면의 힘이 생긴 시점과 첫 출산을 한 시기의 여성들은 비로소 아동기나를 강간했던 괴물과 맞서 싸울 힘이 생겼다고 하며 법적 구제 방안을 문의해 온다. 그러나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은 너무 짧아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들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이 매우 어렵게 20년 전 사건을 입증하여 가해자가 10년 형에 달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제상 초등학교 시절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적어도 성인이 된 후 3년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라는 제도로 인해 불법행위가 모두 입증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아무리 지대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패소비용도 고스란히 원고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성폭력혐의가 인정되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조정으로 회부하여 처리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관행으로 인해 10년이 도과한 아동성폭력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에서 내심에 반한 합의라도 하여, 피해를 전보받거나, 지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 사법부와 입법부는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정서, 성폭력 범죄의 억제 효과,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법과의 균형, 아동 성폭력 피해 전보의 필요성,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적쟁점들을 다시 한번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질문을 던지며, 본 기고를 마친다.

❖ 참고 문헌 ❖

- 서종희(201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권영준(2009),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
지원림, “민법총칙”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5주년 기념 한일 세미나, 성폭력 피해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의 전망(2016) 자료집
권영준(2017), “보험청구권과 소멸시효”
전해정(2018), “소멸시효 기산점을 둘러싼 논의(2018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자료집)

경기북부법조
2019년 통권 제8호

나도 한마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NORTHERN GYEONGGI BAR ASSOCIATION



“나도 한마디”

“ 구성진 회원 / 사시 37회 ”



오늘 첫눈이 펄펄 내리네요. 하늘에서 온누리를 가림없이 내리듯이 밝아오는 새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원들에게도 재물과 행복이 골고루 내려앉기를 기원해봅니다.

“ 김덕현 회원 / 사시 22회 ”

이번 태국변호사회 방문 행사에 참가해서 좋았습니다. 왕궁과 사원, 산호섬 parasailing, 태국 판사의 현실적 질문이 자외선 강한 푸른 하늘과 함께 모두에게 인상적이었어요. 경기북부변호사회 forever!

“ 김리라 회원 / 변시 3회 ”



2019년, 좋은 어른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김명중 회원 / 변시 5회 ”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대도 낮추고 경유료 값도 낮춰야하지 않을까?

“ 김병철 회원 / 사시 47회 ”

이제 11년을 넘어가면서 청년변호사를 벗어나는 중년의 연수원 37기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 올 한해 우리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 김옥선 회원 / 사시 50회 ”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돌아보는 곳 그 어디든 저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과 온기가 되는 경기북부변호사회!

“ 김은영 회원 / 변시 2회 ”



감사하고 즐거운 한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김호정 회원 / 사시 55회 ”

올해 5월 개최되었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가족캠프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저녁 만찬 이벤트와 불꽃놀이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획에 감사 드립니다.



“ 김희정 회원 / 사시 44회 ”

한해 동안 열심히 뛰어오신 모든 경기북부 소속 변호사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다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박은경 회원 / 사시 46회 ”

올 한해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행사가 많고 어느때보다 회원을 참여가 활발해 회원들간 친목이 더욱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서로 웃으며 더욱 화기애애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 박혜란 회원 / 변시 2회 ”

‘진실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려면 논쟁의 당사자보다는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2019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 손수정 회원 / 사시 54회 ”

“2018년 한해는 저에게 국선전담변호사라는 직책이, 가정주부로서의 직책이 주어진 해였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하며 한해를 지내다 보니 의정부에 계신 변호사님들과의 교류가 많이 부족했던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2019년 돌아오는 친목행사로 온정이 오가는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 신문석 회원 / 사시 48회 ”



스산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우리입니다.
스산함이 덜합니다. 회원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요~~!

“ 신미화 회원 / 변시 5회 ”

경기북부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일 모두 잘 흘러 보내시고,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매 순간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세요.^^



“ 신재민 회원 / 사시 49회 ”

올해 상반기에 개최한 가족캠프 행사를 통하여 최고의 힐링을 만끽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 쪽 가즈아~!

“ 안미영 회원 / 사시 52회 ”

변호사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2019년 승소 많이 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안정은 회원 / 사시 53회 ”

올 한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엔 더욱더 번창하세요.^^

“ 안희정 회원 / 변시 7회 ”

2018년 새내기 변호사로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첫 출발하여
2019년 달릴 준비중입니다. 환영해주세요~^^

“ 양원석 회원 / 변시 4회 ”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끝나고, 2019년도가 곧 시작되네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님들 모두 2018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오서빈 회원 / 사시 49회 ”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당신만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생겨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언제나 따뜻함으로 날 맞아주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으로 다가가도
기다렸다는 듯 당신의 따뜻함으로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김은미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서)

“ 오수진 회원 / 사시 53회 ”

내가 남에게 베푸는 공은 마음에 새겨서는 안되지만,
내가 남에게 한 잘못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채근담-



“ 이규채 회원 / 사시 51회 ”

2018년 개업 2년차를 맞아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탈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직원들의 노고로 변호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고, 변호사로서 활동 지경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 모두들 건승하십시오.

“ 이주연 회원 / 변시 4회 ”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새싹이 돌아
나타니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곧 봄이 찾아오고
새싹을 맞이할 날이 올 겁니다.
2019년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 이진성 회원 / 사시 55회 ”



무더운 더위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독감으로 고생하다보니 건강이 최고라는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임현일 회원 / 사시 48회 ”



변호사 업계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변호사들이 뭉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북부회에 부족한 것은 회원들의 참여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이 경기북부회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잘 참여하고, 경기북부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북
돋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집행부 회기 중에는 인천회처럼 우리
회도 원외재판부 유치를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장동규 회원 / 사시 51회 ”

정선 가족캠프, 회장배 골프대회 등 올해에는 기존에 없던 뜻깊은 행사들이 많았던 것 같
습니다. 앞으로도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장인영 회원 / 변시 1회 ”

요즘들어 재판 진행에 있어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지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
다. 신념과 소신을 지키는 법조인이 됩시다.

“ 정영미 회원 / 사시 50회 ”

벌써 2018년이 끝나갑니다. 힘들고 고된 한 해였으나 많은 좋으신 분들과 함께여서 조연도
많이 받고 위로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해 힘차게 함께 시작하고 더욱 발전하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되기를 기원합
니다.^^

“ 정충일 회원 / 사시 49회 ”

안녕하세요.

그저 열심히, 성실히 임하려는 마음 뿐이었으나 그 과정에 혹시 모를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주었다면 그 모든 것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행복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 조은진 회원 / 사시 49회 ”

올해 가족캠프 정말 좋았습니다.

일로만 뵈던 변호사님들을 편하게 만나는 것도 좋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경기북부변호사회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최미현 회원 / 사시 51회 ”



LA에인절스 소속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만다라트 계획표 중 “운”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선행을 통해 자신의 “운”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운”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실천해야 하는 선행들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과 달리 하늘의 뜻도 노력에 따라 좌우할 수 있다는 그의 긍정적인 사고와 노력은 본받을 만 해 보입니다.

“ 최성문 회원 / 사시 52회 ”

변방(녹양역)을 지키는 외로운 장수(변호사) 최성문입니다. 호빵이 생각나는 추운 겨울입니다. 사건들 모두 승소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 최유진 회원 / 사시 51회 ”

안녕하세요. 저는 국선전담변호사 최유진입니다.

2018년에는 제가 둘째 아이 임신과 출산으로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에 여러 선후배님과 동료들을 자주 뵈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고 친해질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규 회원 / 변시 5회 ”



개업 후 혼자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던 즈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선배 변호사님들의 관심과 진심 어린 조언을 받으며, 제가 가진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기획해주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감사드립니다.

“ 홍영재 회원 / 사시 47회 ”

지난 2년동안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유준용 회장님과 집행부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종만 사무국장 ”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그 사람이 딱 맞춰서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짜놓은 각본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에게, 회사 동료와 직원에게 들이대면 결국은 나만 힘이 듭니다. 또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비극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나 혼자 만든 각본은 버리고 2019년도는 같이 만들어가는 현재진행형 각본을 써 나가길 희망합니다.

“ 고정림 과장 ”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연습을 하고 와서는 “어린이집에서 배웠다.”며 춤추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지금의 모습이 영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딸아이의 애교 섞인 재롱을 보며 힘찬 발걸음으로 출근길에 올라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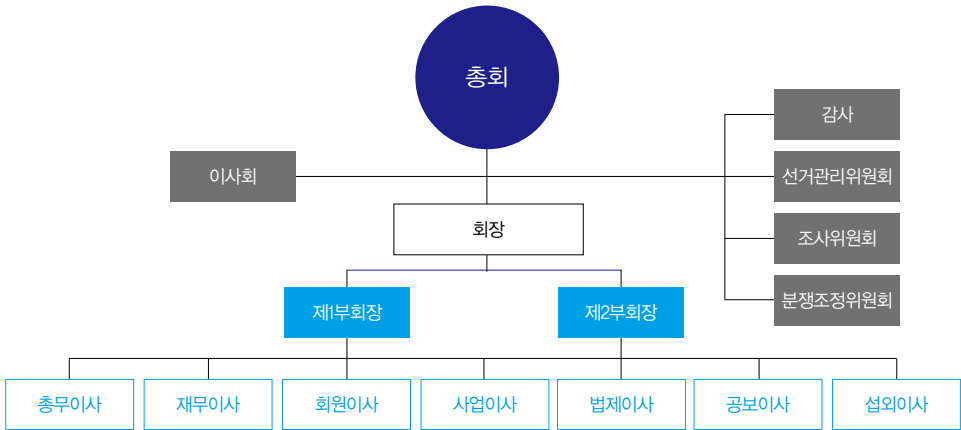


“ 최수진 사원 ”



지난해보다 더욱 더 즐겁고 행복 가득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모든 변호사님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기구조직



보좌기구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기획위원회	법관평가 특별위원회
법제위원회	
인권위원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심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권익·복지위원회	
섭외위원회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홍보위원회	
법정위원회	
광고심사위원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사무국

사업기구
사업기구
법률실무연구회
법률원조사협회
공제신용사업회
재산관리사업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현황

◆ 역대 임원명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제1대</div> 2004. 02. 01 ~ 2005. 12. 31	회	장	강	성	수
	부 회 장	윤 중 현	총 무 이 사	이 광 복	
	재 무 이 사	추 현 영	회 원 이 사	정 환 영	
	사 업 이 사	안 수 화	법 제 이 사	구 성 진	
	감 사	김 희 동	감 사	박 세 응	
	이 사	양재환, 우종대, 황도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제2대</div> 2006. 01. 01 ~ 2007. 12. 31	회	장	김	섭	
	부 회 장	정 병 권	총 무 이 사	이 재 준	
	재 무 이 사	안 수 화	회 원 이 사	정 환 영	
	사 업 이 사	엄 태 영	법 제 이 사	이 정 세	
	감 사	박 광 우	감 사	우 종 대	
	이 사	박문우, 정창래, 황도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제3대</div> 2008. 01. 01 ~ 2010. 01. 25	회	장	박	종	성
	부 회 장	우 종 대	총 무 이 사	이 재 준	
	재 무 이 사	이 광 복	회 원 이 사	안 수 화	
	사 업 이 사	추 현 영	법 제 이 사	유 준 용	
	감 사	정 환 영	감 사	황 도 연	
	이 사	김민규, 정찬삼, 최예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제4대</div> 2010. 01. 26 ~ 2012. 01. 25	회 장		정 환 영	
	제1부회장	이 재 준	제2부회장	황 도 연
	총무이사	유 준 용	재무이사	엄 태 영
	회원이사	전 우 진	사업이사	추 헌 영
	공보이사	김 민 규	법제이사	조 행 란
	감 사	김 덕 현	감 사	박 노 주
	이 사	고진상, 김효식, 최애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제5대</div> 2012. 01. 26 ~ 2014. 01. 27	회 장		이 재 준	
	제1부회장	안 수 화	제2부회장	박 세 응
	총무이사	유 준 용	재무이사	김 민 규
	회원이사	박 상 현	사업이사	추 헌 영
	공보이사	정 희 영	법제이사	조 행 란
	감 사	엄 태 영	감 사	백 철 우
	이 사	고진상, 김효식, 오재길, 정재봉, 최애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제6대</div> 2014. 01. 28 ~ 2016. 01. 24	회 장		안 수 화	
	제1부회장	유 준 용	제2부회장	장 운 기
	총무이사	이 광 복	재무이사	추 헌 영
	회원이사	이 임 성	사업이사	오 재 길
	공보이사	윤 석 진	법제이사	이 정 화
	섭외이사	장 철 희		
	감 사	이 정 세	감 사	고 진 상
	이 사	김강노, 김민규, 조행란, 정병권, 정종희, 최애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제7대</div> 2016. 01. 25 ~ 2017. 01. 23	회 장		이 광 부	
	제1부회장	엄 태 영	제2부회장	사 형 환
	총무이사	윤 석 진	재무이사	장 철 희
	회원이사	박 상 현	사업이사	황 보 충 호
	공보이사	류 승 언	법제이사	백 철 우
	섭외이사	박 현 근		
	감 사	이 정 세	감 사	이 임 성
	이 사	김규봉, 김형중, 김효식, 김희정, 노재민, 정찬삼, 조은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제8대</div> 2017. 01. 24 ~ 2019. 01. 28	회 장		유 준 용	
	제1부회장	윤 석 진	제2부회장	정 찬 삼
	총무이사	김 민 규	재무이사	송 기 영
	회원이사	이 기 형	사업이사	장 윤 선
	공보이사	최 미 라	법제이사	백 철 우
	섭외이사	박 현 근		
	감 사	이 임 성	감 사	정 재 봉
	이 사	김규봉, 김원일, 김형중, 김효식, 김희정, 노재민, 신태호, 유동현, 조은진, 홍영재		

◆ 회원현황(2018. 12. 31. 기준)

● 총 회원 : 433명

－ 개업회원 : 372명

(의정부 : 165명, 양주 : 1명, 포천 : 5명, 고양 : 155명,
파주 : 7명, 남양주 : 23명, 구리 : 14명, 가평 : 2명)

－ 휴업회원 : 50명

－ 준 회원 : 11명

● 법무법인 : 주사무소 : 24개소, 분사무소 : 33개소

－ 주사무소 : 의정부_6개소,

고양_13개소, 파주_1개소,

구리_2개소, 남양주_2개소

－ 분사무소 : 의정부_13개소, 양주_1개소, 포천_1개소,

고양_9개소, 파주_1개소,

구리_1개소, 남양주_7개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사무국 안내

◆ 사무국 안내

연락처	031-872-5306	팩스	070-4275-5492
이메일	ngbar@ngbar.or.kr	홈페이지	http://www.ngbar.or.kr
주소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4층 402호(가능동, 현도빌딩)		

◆ 사무국 담당자 및 업무 등 안내

성 명 (직 급)	담당업무	직통번호	이메일
김 종 만 (사무국장)	사무국 업무총괄 및 각 위원회 담당, 진정 및 징계신청 등 업무, 관·검사 평가업무, 마을번호 사업무, 변호사 겸직허가, 변호사업무광고 및 홍보에 관한 업무, 복지_후생목적자산의 관리 및 운영 업무, 회칙 제_개정 및 폐지 관련 업무, 총회_이사회_상임이사회_신년 및 간담회 관련 업무, 회원복지서비스 업무, 회지의 편집 및 간행, 도서_간행물_도서실 관리, 홈페이지 관리업무, 현안에 대한 정보수집_연구 및 기획 업무 등	070-5129-4779	wisdom@ngbar.or.kr
고정림 (과장)	경유증표 판매 및 사용관련 업무, 수입사건 관련업무, 입회비 및 월회비 수납, 공계금 지급, 연간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각종 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 수입_지출_기타 회계에 관한 업무, 연수 및 교육 등, 동호회 조직 및 활동, 공익활동에 관한 업무, 월회비납부증명원, 공공기관 위원 등 추천, 회원 경조사, 법조윤리협의회,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 및 중소기업고문 변호사단,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 국선변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선보조인 등 기타 업무	031-875-2707	ko7947@ngbar.or.kr
최수진 (사원)	변호사 등록 및 개업_휴업_사무소이전_명부변동신고_법무법인 설립 및 해산 등_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및 해산 등, 회원명부, 변호사사무직원 등록_이전_갱신_해임 등, 사무직원 경력증명원 발급, 등기소 출입증 발급관련 업무, 차량스티커 발급, 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업무, 등 기타 업무	031-872-5306	tnwls995@ngbar.or.kr



홍보위원장
변호사 **최미라**

편 · 집 · 후 · 기

이번 회지 발간을 위한 마지막 홍보위원회를 앞두고 고등학교 단짝 친구로 부터 온 어머니의 부고 문자를 받고 천안에 다녀왔는데, 슬프게도 그 친구와 나눈 직전 문자가 1년 3개월 전 제가 보낸 부고였습니다. 이 회지를 받아보시는 회원 여러분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라는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대부분 언제든지 동료로 소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들에게 목적이나 이해관계 없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 회지의 발간으로 제8대 집행부의 업무는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어려워지는 변호사 시장에서 '경기북부'라는 한 울타리에 있는 우리 회원들 간 화합의 기회가 많아져 회원들이 답답한 법정에서 서로 미소라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 회지에 실린 회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작지만 서로를 알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만을 바라며 아쉬운 마음을 접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이 회지에 소중한 글을 기고하여 주신 여러 회원님들, 나도 한 마디로 다른 회원들과 인사 나누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회의 홍보위원으로 바쁘신 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추현영, 홍영재, 김보금, 임현일 홍보위원님의 노고와 유준용 회장님의 배려와 관심, 김종만 사무국장님의 헌신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2019년 통권 제8호

경기북부법조

인 쇄 2019. 01.

발 행 2019. 01.

발행인 유준용

편집인 최미라

발행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현도빌딩 4층)

TEL. 031-872-5306 FAX. 070-4275-5492

인쇄처 대명피엔피컴 02-722-0586